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13호)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8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6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20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5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8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4
1. 종전 대안(의안번호 2205978)의 개요 및 처리 경과	14
2. 법률의 목적 추가	18
3. 밀·콩의 공공비축양곡 대상 근거 법률 상향규정	24
4.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의무 등	32
5.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41
6. TRQ 미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49
7.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	56
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	56
나. 개정사항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76
다. 양곡 시장격리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관련 법적 근거 정비 ...	80
8.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95
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95
나. 양곡수급계획 심의 의무화 등	116

다.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가격 등 심의 의무화	129
라. 공공비축양곡 물량의 심의 의무화 및 확대 등	136
9.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의 구체화 등	146
가. 인용 법률 현행화	146
나.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의 구체화	157
10.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164
11.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근거 마련	184
12.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190
가.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190
나. 기준가격 정의 신설	214
13.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17
14.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마련	224
15.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근거 마련	234
16. 자료제출 등 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241
17. 부칙: 시행일	248
18.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251

I .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안(2209413)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3. 27.

다. 회 부 일 : 2025. 3. 28.

2. 문대림의원안(2209458)

가.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8.

다. 회 부 일 : 2025. 3. 31.

3. 어기구의원안(2209616)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4. 송옥주의원안(2209620)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7.

다. 회 부 일 : 2025. 4. 8.

5. 이원택의원안(2210165)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8.

다. 회 부 일 : 2025. 4. 29.

6. 박수현의원안(2210478)

가.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12.

다. 회 부 일 : 2025.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2209413)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곡에 대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그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쌀값 등의 폭락 또는 폭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으로써 양곡가격안정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 바.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포함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자. 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면적 조정 비율에 따른 지원은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적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에 대하여 연도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논타작물 재배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카. 선제적 수급조절의 연도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의6 신설).

과.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7 신설).

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2. 문대림의원안(220945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쌀 공

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 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 다.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라.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마.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3. 어기구의원안(2209616)

제안이유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양곡수급안정대책 및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4. 송옥주의원안(2209620)

제안이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사.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아.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6 신설).

5. 이원택의원안(2210165)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 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 자.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 차.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 파.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6. 박수현의원안(2210478)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마.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종전 대안(의안번호 2205978)의 개요 및 처리 경과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17) 등 총 13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음.

동 대안은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¹⁾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음에 따라 소위원회 의결 당일 안전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마찬가지로 같은 날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음.²⁾

이를 통해 마련된 대안(의안번호 2205978)이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4년 12월 19일에 「대한민국헌법」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됨.³⁾

1) 「국회법」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전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2) 2024년 11월 21일(목) 회의 진행 경과

- ①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측(차관)은 참석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10시 11분 개의, 19시 13분 산회)
- ②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조정위원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대안이 안전조정위원회로 회부됨(20시 16분 개의, 20시 46분 정회)
- ③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대안을 안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21시 45분 개의, 23시 36분 산회)
- ④ 2024년 11월 21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측(장관)은 참석하였으나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안전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인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23시 40분 속개, 23시 58분 산회).

【 종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대안 심사이력 】

구분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자	제안일	위원회 회부일	심사결과		
						위원회	본회의	재의결
일 부 개 정 법 률 안	1	2200017	윤준병의원	24. 5. 30.	24. 6. 11.	대안반영폐기 24. 11. 21.	대안반영폐기 24. 11. 28.	-
	2	2200089	이원택의원	24. 6. 3.	24. 6. 11.			
	3	2200299	황명선의의원	24. 6. 11.	24. 6. 12.			
	4	2200572	어기구의의원	24. 6. 18.	24. 6. 19.			
	5	2201524	신정훈의원	24. 7. 9.	24. 7. 10.			
	6	2201531	서삼석의원	24. 7. 9.	24. 7. 10.			
	7	2201867	박수현의원	24. 7. 17.	24. 7. 18.			
	8	2201996	임미애의원	24. 7. 19.	24. 7. 22.			
	9	2202158	정희용의원	24. 7. 23.	24. 7. 24.			
	10	2202348	송옥주의의원	24. 7. 29.	24. 7. 30.			
	11	2202923	전종덕의원	24. 8. 19.	24. 8. 20.			
	12	2203485	박희승의원	24. 9. 2.	24. 9. 3.			
	13	2204877	윤준병의원	24. 10. 24.	24. 10. 25.			
대안		2205978	농해수위 위원장	24. 11. 27.	-	(대안가결) (24. 11. 21.)	원안가결 24. 11. 28.	부결 25. 1. 8.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7.

3)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중전 대안과 6건의 개정안이 각각 포함하는 사항을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데, ①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의 구체화, ② 기준가격 정의 신설 및 ③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의 사항을 제외하면, 개정안들은 대체로 중전 대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 중전 대안과 개정안의 포함 사항 비교 】

연 번	목 차 명	중전 대안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1	법률의 목적 추가	●	●				●	●
2	밀·콩의 공공비축양곡 대상 법률 상향규정	●	●		●	●	●	
3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의무 등	●	●				●	
4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			●	●	
5	TRQ 미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					●	
6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	●	●	●	●	●	●	●
	①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	○	○	○	○	○	○	○
	② 개정사항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	○		○		○	
	③ 양곡 시장격리의 국고채무 부담행위 관련 법적 근거 정비	○		○			○	○
7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	●	●	●	●	●	●
	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	○	○	○	○	○	○
	② 양곡수급계획 심의 의무화 등	○	○		○		○	○
	③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가격 등 심의 의무화	○	○		○		○	
	④ 공공비축양곡 물량의 심의 의무화 및 확대 등	○	○		○		○	

연 번	목 차 명	중전 대안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8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의 구체화 등	●	●				●	
	① 인용 법률 현행화	○	○				○	
	②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의 구체화		○					
9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	●	●	●	●	●	
10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근거 마련	●	●	●		●	●	
11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	●		●	●	●	●
	①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	○		○	○	○	○
	② 기준가격 정의 신설				○			
12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			●	
13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마련	●	●				●	
14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근거 마련	●	●				●	
15	자료제출 등 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	●				●	
16	부칙: 시행일	●	●	●	●	●	●	●
17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7.

2. 법률의 목적 추가

개정안은 「양곡관리법」의 목적으로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박수현의원안 제1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 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 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 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 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	- 윤준병·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 박수현의원안 : 양곡 적정 가격 유지 및 식량자급률 삭제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 고
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 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 으로써 식량안 보와 식량자급 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 능과 국민경제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 을 보호하며 양 곡의 적정한 가 격을 유지함으 로써 식량안보 와 식량자급률 을 제고하고 농 업의 지속가능 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 을 보호하며 양 곡의 적정한 가 격을 유지함으 로써 식량안보 와 식량자급률 을 제고하고 농 업의 지속가능 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 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와 국 민경제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구체적인 문언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나. 검토의견

1)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단과 식품의 선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⁴⁾

UNFA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23억 3,000만명이 충분한 식량을 정기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서 8억 6,400만명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⁵⁾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국제 정치 상황의 영향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등의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한편, 농업이 기후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⁶⁾

식량안보와 연관되는 통계로는 ‘국내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국내생산량의 비율’인 식량자급률⁷⁾이 있음. 식량자급률이 높다면 국내생산량만으로도 국민들의 식량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어, 국제정세 등 외부 변수의 영향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됨.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사람이 소비하는 것이 아닌 사료용을 제외한 수치가 2023년 기준 49.0%로, 최근 10년 동안에는 40% 후반에서 50% 초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쌀과 서류(薯類)⁸⁾는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밀·콩·옥수수 등 그 외 작물은 전체 식량자급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4) UNFAO, “Rome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 1996.

5) UNFA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4”, 2024.

6) 최우정,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기후변화“라고 쓰고 ”식량위기“로 읽는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2024.

7)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8) 감자나 고구마 등의 작물로서 덩이줄기나 덩이뿌리를 이용하는 작물(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 최근 10년간 식량자급률 현황 】

(단위: %)

연번	연도	전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	2014년	53.2	95.4	26.0	1.1	4.2	35.9	105.5	13.0
2	2015년	53.5	101.0	23.0	1.2	4.1	32.1	103.3	13.6
3	2016년	54.1	104.7	24.6	1.8	3.7	24.6	103.6	13.4
4	2017년	51.9	103.4	26.0	1.7	3.3	22.0	104.1	10.5
5	2018년	50.3	97.3	32.1	1.2	3.3	25.3	104.1	9.6
6	2019년	49.3	92.1	47.7	0.7	3.5	26.7	104.3	10.8
7	2020년	49.3	92.9	38.2	0.8	3.6	30.4	104.5	14.2
8	2021년	44.1	84.6	33.3	1.1	4.1	23.7	104.0	11.8
9	2022년	49.4	104.8	29.8	1.3	4.3	28.6	103.1	10.5
10	2023년	49.0	99.1	25.4	2.0	4.5	35.7	102.5	12.7

주: 서류 생체중(수확 시 무게) 기준이며, 사료용을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쌀을 제외한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국내 생산 감소 영향 등으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보았음.

또한, 낮은 식량자급률이 식량안보의 취약 요인이므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식량자급률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기도 했음.⁹⁾

9)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pp. 7~11.

2) 검토의견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의 영향으로,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에 있어 지속가능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그러나 농가의 고령화 문제, 생산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생산 측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안정한 산지 쌀 가격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또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산지 쌀 가격 동향 】

[단위: 원/80kg(가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 평균	195,624	220,602	190,308	186,036	188,954
수확기 평균 (10~12월)	216,484	214,138	187,268	202,797	184,700

주: 서류 생체중 기준이며, 사료용을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109.

개정안은 「양곡관리법」의 목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윤준병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의 제고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추가함.

박수현의원안의 경우, 다른 두 개정안과 달리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추가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법률 목적 변화 】

구분	현행	⇒	윤준병·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수단	① 양곡의 효율적 수급 관리 ② 양곡증권장타기금 설치	=	① 양곡의 효율적 수급 관리 ② 양곡증권장타기금 설치	① 양곡의 효율적 수급 관리 ② 양곡증권장타기금 설치
목적	① 식량의 안정적 확보	⇒	① 식량의 안정적 확보 ② 생산자 이익 보호 ③ 양곡 적정가격 유지	① 식량의 안정적 확보 ② 생산자 이익 보호
	② 국민경제에 이바지	⇒	④ 식량안보·식량자급 률 제고 ⑤ 농업의 지속가능 ⑥ 국민경제에 이바지	③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13.

개정안은 이와 같이 법률의 목적을 추가한 이후, 실체규정에서 양곡 가격안정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추가한 목적의 실현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의 목적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실체규정의 다른 개정 사항들과 연계하여 어떠한 추가사항을 포함할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박수현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법률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추가하지 않음.

다만, 박수현의원안은 실체규정에서 다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①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양곡가격안정제도 등을 신설하고, ② 양곡의 자급목표를 양곡수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3. 밀·콩의 공공비축양곡 대상 근거 법률 상향규정

개정안은 현행법령 상 공공비축양곡 대상 중 대통령령에 따른 대상 양곡인 밀·콩을 법률에 따른 대상으로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여기구의원안·송옥주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2조제3호).

현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가루·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u>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u> 과 <u>· 밀·콩</u>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u> , <u>밀 및 콩</u>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u> 과 <u>· 밀·콩</u>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u> 과 <u>· 밀·콩</u>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 관계 조문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곡류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u>밀과 콩</u> 을 말한다.				

현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 관계 조문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3의2. (생략)	※ 여기구의원안 제3호의2는 “기준가격” 정의 신설로, 목차 12번 (양곡가격안정제도)에서 검토함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윤준병·송옥주·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1. · 2. (생략)	=	1. · 2. (생략)	1. · 2. (생략)	1. · 2. (생략)	1. · 2. (생략)	- 여기구의원안 : 일부 자구 수정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대비하기 위하여 정 부가 민간 으로부터 시장가격 에 매입하 여 비축하 는 <u>미곡· 밀·콩</u>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곡을 말한다.		대비하기 위하여 정 부가 민간 으로부터 시장가격 에 매입하 여 비축하 는 <u>미곡· 밀·콩</u>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곡을 말한다.	대비하기 위하여 정 부가 민간 으로부터 시장가격 에 매입하 여 비축하 는 <u>미곡, 밀 및 콩</u> 과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양곡 을 말한다.	대비하기 위하여 정 부가 민간 으로부터 시장가격 에 매입하 여 비축하 는 <u>미곡· 밀·콩</u>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곡을 말한다.	대비하기 위하여 정 부가 민간 으로부터 시장가격 에 매입하 여 비축하 는 <u>미곡· 밀·콩</u> 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양곡을 말한다.	
<신 설>	⇒		3의2 (생 략)			
4. ~ 7. (생 략)	=	4. ~ 7. (생 략)	4. ~ 7. (생 략)	4. ~ 7. (생 략)	4. ~ 7. (생 략)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밀·콩의 공공비축양곡 포함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나. 검토의견

1) 공공비축 제도 현황

현행법 제10조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
축 대상은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밀·콩)이 해당됨.

「양곡관리법」상 공공비축제는 2005년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미곡’의 공공비축제로서 비축의 대상을 미곡으로 한정하였음.

이후 2013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양곡’의 공공비축제로 확대하면서,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밀·콩)을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하였고, 해당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양곡관리법」상 공공비축제 제도 변화 】

2005년 3월 31일 개정 (2005. 7. 1. 시행)	2013년 3월 22일 개정 (2013. 9. 23. 시행)	현행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 <u>공공비축미곡</u> ”이라 함은 미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 <u>공공비축양곡</u> ”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 <u>공공비축양곡</u> ”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u>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u> 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곡류 등)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u> ”이란 <u>밀과 콩</u> 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곡류 등)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u> ”이란 <u>밀과 콩</u> 을 말한다.
제10조(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u>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u>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공공비축미곡을 비축·운용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을 충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u>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u>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u>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u>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

2005년 3월 31일 개정 (2005. 7. 1. 시행)	2013년 3월 22일 개정 (2013. 9. 23. 시행)	현행 「양곡관리법」
족하여야 한다. ③ 공공비축미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에서의 그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30.

현재 공공비축양곡 중 ① 미곡의 매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라 한다)의 “정부양곡매입비(2131-360)” 사업으로 이루어짐.

한편, ② 밀·콩의 매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의 “비축지원(3031-323)” 사업으로 이루어짐.

최근 5년간 공공비축 대상 양곡인 쌀·밀·콩의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쌀은 매년 대략 30만톤~40만톤의 물량이 공공비축을 위하여 매입되고 있음.

밀·콩의 경우 쌀에 비하여 매입량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쌀에 비하여 국내 생산량이 적고, 국내 수요량 중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내에 매입할 양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공공비축 대상 양곡 생산 및 매입 현황 】

(단위: 톤, %)

연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쌀	생산량(A)	3,507천	3,882천	3,764천	3,702천	3,585천
		매입량(B)	322천 (332천)	341천 (799천)	440천 (774천)	392천 (602천)	440천 (536천)
		B/A	9.2 (9.5)	8.8 (20.6)	11.7 (20.6)	10.6 (16.3)	12.3 (15.0)
2	밀	생산량(A)	16,985	26,324	34,562	51,809	37,376
		매입량(B)	853	8,401	16,561	18,892	17,882
		B/A	5.0	34.9	47.9	36.5	47.8
3	콩	생산량(A)	80,926	110,781	129,925	141,477	154,954
		매입량(B)	557	2,249	18,697	32,524	49,770
		B/A	0.7	2.0	14.4	23.0	32.1

주1: 쌀의 경우 생산량 및 매입량 수준이 톤에 따라 천톤 단위로 집계되고 있음

주2: 괄호 안은 시장격리곡, APTERR 매입곡을 포함한 전체 국내산 쌀 정부매입량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15.

2024년도 공공비축의 경우, 시행계획 상으로는 ① 쌀 44만톤('23년산 5만톤, '24년산 39만톤), ② 콩 6만톤 및 ③ 밀 2만 5천톤의 공공비축 양곡 매입이 계획되었음.

실제 공공비축은 ① 쌀은 '24년산을 계획보다 5만톤 더 매입하여 49만톤('23년산 5만톤, '24년산 44만톤), ② 밀은 계획보다 7천톤 적은 1만 8천톤, ③ 콩은 계획보다 1만톤 적은 5만톤을 매입하였음.

【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

연번	구분		계획	실제
1	쌀	매입대상	'23년산 및 '24년산 쌀	'23년산 및 '24년산 쌀
		매입시기	'24. 8. 30. ~ '24. 12. 31.	'24. 8. 30. ~ '25. 2. 14.
		매입물량	44만톤 ('23년산 5만톤, '24년산 39만톤)	49만톤 ('23년산 5만톤, '24년산 44만톤)
		매입대금	1조 913억원(양특회계)	1조 1,266억원(양특회계)
2	밀	매입대상	'24년산 국산 밀	'24년산 국산 밀
		매입시기	'24. 6. 17. ~ '24. 8. 23.	'24. 6. 27. ~ '24. 9. 13.
		매입물량	2만5천톤	1만8천톤
		매입대금	308억원(농안기금)	188.4억원(농안기금)
3	콩	매입대상	'24년산 국산 콩 (콩나물콩 포함)	'24년산 국산 콩 (콩나물콩 포함)
		매입시기	'24. 12. ~ '25. 2.	'24. 12. ~ '25. 3.
		매입물량	6만톤	5만톤
		매입대금	3,080억원(농안기금)	2,582억원(농안기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8호,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 관리양곡 수급계획(안)”, 2024. 10. 23.

2) 검토의견

현재 밀·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서 공공비축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매년 유사한 수준의 물량을 매입하는 쌀과는 달리 연도별로 매입물량의 차이가 나타남.

또한, 밀은 2013년 법령개정을 통하여 공공비축양곡의 범주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 공공비축양곡으로 매입된 것은 2019년부터로서 오래되지 않았음.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비축양곡인 밀·콩을 법률상의 공공비축양곡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밀·콩의 비축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밀·콩은 현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비축양곡으로서 매입되고 있으나 그 매입물량 수준이 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특히 밀의 경우 2013년 법령개정을 통하여 공공비축양곡에 포함되었음에도 실제로는 2019년부터 매입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밀·콩에 대한 공공비축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개정안과 같이 밀·콩을 법률상의 비축 대상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이 공공비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의무 등

두 건의 개정안은 ①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보관 실태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②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을 신축 또는 개수·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9조의3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수·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윤준병의원안 : 자구 수정 - 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윤준병·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윤준병·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수·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윤준병의원안 : 자구 수정 - 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도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다만, 안 제9조의3제4항의 신축 및 개수·보수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은 현행법 제26조¹⁰⁾와 중복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낮아 보임.

10) 「양곡관리법」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2) 행정안전부

양곡의 수급관리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로서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¹¹⁾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9조의3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주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검토의견

1)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현황

정부관리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으로, ① 공공비축양곡, ② 시장격리곡, ③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쌀 등이 있음.

정부관리양곡은 매입 등이 이루어진 이후 보관시설(창고)을 거쳐 국가기관용·가공용 등¹²⁾의 용도로 판매되고 있음.

11)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12)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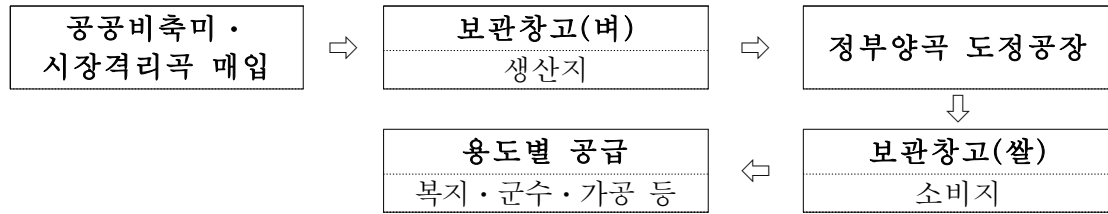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시행령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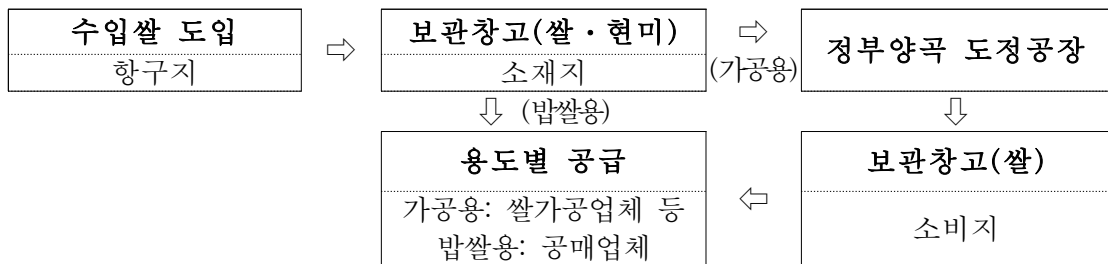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품 개발용 8. 해외원조용

【 정부관리양곡(쌀) 매입 · 판매 과정 】

1. 공공비축미 · 시장격리곡



2. TRQ 수입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소유자별 현황(2024. 4월말 기준) 】

연번	구분	계	정부	농협	민간	마을공동창고
1	창고수(동)	3,436 (100.0)	12 (0.3)	1,675 (48.7)	1,724 (50.2)	25 (0.7)
2	면적(천 m^2)	1,633 (100.0)	3 (0.2)	607 (37.2)	1,016 (62.2)	7 (0.4)
3	보관능력(천톤)	3,213 (100.0)	6 (0.2)	1,071 (33.3)	2,123 (66.1)	13 (0.4)

주: 괄호 안은 전체 대비 해당 분류의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은 2024년 4월말 기준 3,436동이 있는데, 총 면적은 약 163만 3천 m^2 이고, 보관능력은 약 321만 3천톤임.

이들 보관시설은 크게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급 이상을 우수창고로 보아 정기계약 대상으로 하고, 2급 이하를 임시창고로 보아 불가피한 경우 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2024년 기준, 전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3,436동 중 95.9%(3,295동)가 우수창고로, 나머지 4.1%가 임시창고로 분류되고 있음.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등급기준 】

연번	구분	등급		기준
1	저온 창고	우수	저온	- “정부관리양곡 처리도급계약 체결요령” 중 저온창고 기준에 적합한 창고
2	일반 창고		특급	- 일반창고 등급 평가기준 점수 95점 이상
3			1급	- 일반창고 등급 평가기준 점수 85~94점
4		임시	2급	- 일반창고 등급 평가기준 점수 70~84점
5			기타	- 70점 미만이나, “도서·접경지역 등”에 대체 가능 한 보관창고가 없는 경우, 임시계약 가능

주: 저온창고는 일반창고와 달리, 온도조절 장치 등이 있어 하절기에도 일정 수준의 온도 유지가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15. (일부 재가공)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등급별 현황(2024. 4월말 기준) 】

연번	구분	계	저온	특급	1급	2급	기타
1	창고수(동)	3,436	1,163	98	2,034	139	2
2	면적(천 m^2)	1,633	719	115	742	57	-
3	보관능력(천톤)	3,213	1,539	249	1,320	10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사업의 내내 역사업으로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시설자금 또는 개·보수자금을 융자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20개소의 보관창고에 대하여 79억 6,700만원 수준의 지원이 결정됨.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용자 지원 현황 】

- ☐ 사업명 :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정부관리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시설·개보수 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 및 정부관리양곡 품질향상에 기여
- ☐ 지원대상 : 정부관리양곡 가공·보관계약 체결업체
* (참고) 정부양곡도정공장 119개소, 정부양곡보관창고 3,436개소('24. 3. 기준)
- ☐ 사업비 및 용도 : 100억원(용자), 시설자금 또는 개보수자금
 - 도정공장 : (한도) 시설자금 15억원, 개·보수 5억원
 - 보관창고 : (한도) 시설자금 5억원, 개·보수 2억원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이내(자부담 20%)
 - 금리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년 거치/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년/3년
- ☐ 연도별 사업대상자 선발 현황('25.5월 기준, 선발 시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도정공장	2	14	3	12	8	31	10	73	6	88	5	24	2	4
보관창고	33	70	43	77	45	68	22	48	5	27	21	76	20	80
합계	35	84	46	89	53	99	32	121	11	115	26	100	22	8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15.

또한, 현재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재고조사와 월 1회 이상의 안전보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점검 제도 】

- ☐ 정기재고조사
 - 근거: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 주기: 연 2회 실시(3월말, 10월말 기준)
- ☐ 안전보관 지도점검
 - 근거: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
 - 주기: ① 시·군 - 월 1회 이상
② 시·도 - 반기 1회 이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15. (일부 재가공)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하여 ①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② 시설 신축 및 개수·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 취지는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통하여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용 지원을 통하여 시설 개수·보수 등을 촉진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은 2024년 4월말 기준 3,436동이 있는데, 정부가 소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보관시설 12동을 제외한 3,424동(99.7%)이 농협·민간 등 정부 외의 자 소유의 보관시설에 해당함.

정부가 정부 외의 자가 소유한 보관시설에 대하여 관리하기 위하여는, 개정안과 같이 실태점검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들 시설의 개수·보수 또는 신축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임.

다만,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이미 현행법 제26조의 융자·보조 규정¹³⁾이 있는데, 융자·보조 대상에 정부관리양곡의 보관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각각 포함함.

13) 「양곡관리법」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개수·보수자금을 융자하여 지원하는 상황임.

따라서 이와 같은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명시적인 보조 규정을 별도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윤준병의원안은 종전 대안 및 이원택의원안과 비교하여, 두 부분에서 일부 자구를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① 조 제목에서 ‘실태 점검’ 대신 ‘실태점검’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입법례에서는 ‘실태’와 ‘점검’ 사이를 띄우지 않고 붙여 쓰므로, 윤준병의원안의 ‘실태점검’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② 제4항에서 ‘개보수’ 대신 ‘개수·보수’를 사용하는데, 개보수가 일상생활에서 ‘개수와 보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사용되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¹⁴⁾임을 고려하면,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개수·보수’로 분리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음.

참고로, 「농어촌정비법」, 「말산업 육성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개수·보수로 분리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¹⁵⁾¹⁶⁾

14) 2025. 5. 6. 기준

1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16) 「말산업 육성법」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세 건의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관리 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9조의4·송옥주의원안 제9조의3·이원택의원안 제9조의4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현 행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조문 이원택의원안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	⇒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	- 윤준병의원안 : 자구 수정 - 송옥주의원안 : 일부 자구 수정 및 약칭 추가

중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이원택의원안 : 중전 대안과 동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 윤준병의원안 : 중전 대안과 동일 - 송옥주의원안 : 약칭 반영 및 요청 대상 확대

중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윤준병·이원택의원안 : 중전 대안과 동일 - 송옥주의원안 : 약칭 반영 및 대통령령 위임으로 변경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1)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전반을 자동화·전산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 시스템 개요

- 운영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주요내용: 창고별 재고 입·출고 관리, 가공·수송지시, 매출 등록, 보관·가공·수송 등 관리 비용 자동 산출·정산 등
 - 지역·창고별 재고 파악, 업체별 가공 및 수송(산지→소비지) 물량 파악, 용도별 판매내역 등 양곡관리 업무를 전산 구현
-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도정공장, 운송업체, 수요자 등
- 시스템 운용체계도



□ 사업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백만원)	4,397	1,171	462	574	575	597

* 중합 포털시스템 구축('20), 모바일화 및 통계·분석시스템 구축('21), 유지관리('22~)

* '25년 사업비 세부(597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512, 콜센터 인건비 77, 운영비 8

자료: 국립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15. (일부 재가공)

해당 시스템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정부양곡관리비(2131-366)”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시스템 유지보수비, 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5억 9,700만원임.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재 운영중인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이 개정안의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개정안을 통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중 송옥주의원안의 경우 다른 개정안과 달리 규정하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송옥주의원안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데, 동 시스템은 정부관리양곡의 관리에 대하여 전산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유의 업무에 해당함.

타 부처와의 협의·조정이 요구되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둘째, 송옥주의원안은 자료제출 등의 의무자를 다른 개정안과 달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는 대신, 이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음.

【 개정안별 자료제출 등 의무 비교 】

구분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의무자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없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8.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요구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과 같이 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보다 유리할 수 있어 보임.

한편, 자구 측면에서 세 건의 개정안은 ① 시스템에 대하여 약칭을 사용하고, ② 시스템의 ‘운영’ 또는 ‘운용’을 사용하며, ③ 제1항에서 ‘위하여’ 또는 ‘위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① 약칭 사용의 경우, 동 시스템의 정식 명칭이 13자에 달하므로, 모든 항에서 정식 명칭을 반복하기보다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보임.

② 운영과 운용의 경우, 운영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 운용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쏘م”이라는 점¹⁷⁾에서 두 단어 모두 시스템과 붙여 쓸 수 있는 단어로 보임.

1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만,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시스템에 대하여는 ‘운영’을 함께 붙여 사용하므로, 개정안 역시 ‘운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위하여와 위한의 경우, 윤준병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에서는 이미 앞서 ‘위하여’가 한 차례 등장하므로, ‘위한’으로 문장을 이어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임.

6. TRQ 미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이원택의원안은 시장접근물량(TRQ)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된 미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이원택의원안 제13조).

현 행	이원택의원안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신 설> ※ 관계 조문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허세율로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대안	⇒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종전 대안 과 동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2조제1항에 따라 양허세율 로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 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2조제1항에 따라 양허세율 로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 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전 대안 과 동일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수입쌀의 용도를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수출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고, 국제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함.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허세율로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을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조문을 수정할 수 있어 보임.

나. 검토의견

1) TRQ 쌀 현황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TRQ)은 특정한 수입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 수입품목의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물량(쿼터)에 대하여는 저율의 양허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 상의 TRQ, 즉 WTO TRQ에 대한 것으로, 현재 미국(쌀)을 포함하여 총 63개 농산물 품목이 TRQ로 운영됨.

【 주요 양곡의 WTO TRQ 현황 】

연번	품목명	물량	In-quota (저율)	Out-quota (고율)	적용기간
1	미국(쌀)	408,700톤	5%	513.0%	매년 1. 1. ~ 12. 31.
2	보리	23,582톤	20%	(겉보리) 324% 또는 326원/kg (쌀보리) 299.7% 또는 361원/kg (분쇄물·조분) 260.0%	
3	대두	1,032,152톤	5%	487.0% 또는 956원/kg	
4	녹두·팥	14,694톤	30%	(녹두) 607.5%, (팥) 420.8%	
5	감자 (종자용 이외)	18,810톤	30%	30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2024. 12. (일부 재가공)

쌀의 경우 현재 40만 8,700톤이 TRQ로 설정되어 있는데,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은 양허세율인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하여는 513%의 고율관세가 부과됨.

쌀에 대한 WTO TRQ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20년간 관세화가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농산물 분야는 식량안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정책이 운영되었는데,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은 모든 비관세정책을 관세정책¹⁸⁾으로 전환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WTO로부터 쌀에 대하여만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매년 증량하여 수입하게 됨.

당시 MMA는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량을 가공용으로 수입하였으나, 2004년 재협상 시 추가적으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일부 물량을 밥쌀용으로 수입하게 됨.¹⁹⁾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2015년부터는 쌀에 대하여 수입제한 없이 513%의 관세만을 부과하되, 2014년의 최종 MMA였던 40만 8,700톤을 TRQ로 하여 이에 대하여는 5%라는 저율관세를 부과함.

현재 TRQ에 해당하는 40만 8,700톤의 쌀은 용도별로 ① 밥쌀용 4만 4,000톤과 ② 가공용 36만 4,700톤으로 수입되는데, 2024년의 경우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의 5개국으로부터 TRQ 쌀이 다음과 같이 수입됨.

18) 관세정책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느냐와 무관하게 일단 관세만을 부담한다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수입제한 등의 비관세정책과 차이가 있음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양정사(1978~2013년)”, 2013, pp. 58~64.

【 2024년 TRQ 쌀 수입 현황 】

(단위: \$/톤, 톤)

연번	수입국가	미곡종류	용도	수입단가	수입물량
1	미국	중립종	가공용·밥쌀용	947	132,304
2	중국	단립종	가공용	976	157,195
3	베트남	장립종	가공용·밥쌀용	514	75,112
4	태국	장립종	가공용·밥쌀용	656	28,494
5	호주	중립종	가공용	894	15,595
합계					408,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수입된 쌀은 정부관리양곡으로 보관된 후, 밥쌀용·가공용 등 용도로 판매되며, 장기보관된 일부 물량은 사료용으로도 판매됨.

2024년에는 ① 2023년 TRQ 쌀 2,735톤, ② 2024년 TRQ 쌀 33만 7,819톤의 총 34만 554톤의 쌀이 밥쌀용·가공용·주정용 및 사료용 등 다양한 용도로 판매됨.

【 2024년 TRQ 쌀 판매 현황 】

(단위: 원/kg, 톤)

연번	수입연도	미곡종류	용도	판매가격		판매물량
				가격종류	가격	
1	2023	장립종	밥쌀용	공매가격	2,174	2,735
2	2024	장립종	밥쌀용	공매가격	2,330	798
3		장립종	가공용	특별공급가격	521	14,377
4		중립종	가공용	특별공급가격	600	36,357
5		단립종	가공용	특별공급가격	582	212,882
6		장·중·단립종	주정용	특별공급가격	404	54,700
7		장·중·단립종	사료용	특별공급가격	349	18,705
합계						340,5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2)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쌀에 대하여 관세화가 이루어진 2015년 이후, 매년 40만 8,700톤의 TRQ 쌀을 5%의 저율관세 하에서 수입함.²⁰⁾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국내 쌀 수요의 일부가 수입산 TRQ 쌀로 충당됨에 따라 쌀 생산 농가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제기함.²¹⁾

【 2015년~2023년 1인당 쌀 연간소비량 】

(단위: kg)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비량	62.9	61.9	61.8	61.0	59.2	57.7	56.9	56.7	56.4
전년대비	△2.2	△1.0	△0.1	△0.8	△1.8	△1.5	△0.8	△0.2	△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일부 재가공)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TRQ 쌀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그 용도를 사람이 소비하지 않는 사료용으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TRQ 쌀과 국산 쌀 사이의 시장 경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실태조사를 통하여 TRQ 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면 이를 쌀 수급조절 등의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료용 공급을

20) 다만, 2022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뭄에 따른 미국 측 계약포기로 40만 8,700톤의 TRQ 중 9만 6,114톤이 도입되지 않았음

21) 농민신문, “국산 쌀 소비 허덕이는데…외국산 ‘반값’에 푸는 정부”, 2025. 4. 14., 2025. 5. 28.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411500759>

농민신문, “냉동밥 시장 수입쌀이 점령…농업계 분통”, 2025. 4. 2., 2025. 5. 28.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331500912>

통하여 TRQ 쌀과 국산 쌀의 경쟁을 최소화한다면 쌀 생산 농가들의 국내 시장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사료용 공급의 명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대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하는데, 현행법 제21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제13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²²⁾ 자구 정리가 필요함.

즉, ① 현행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② 제32조제2호에서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③ 제34조제1호에서 “제13조제3호”를 “제13조제1항제3호”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음.

22) 「양곡관리법」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 등

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강화

개정안은 ①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또는 목표 가격 등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②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시장격리)하게 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측면을 강화하려는 것임(윤준병 의원안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문대림의원안·송옥주의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어기구의의원안 제16조제4항, 박수현의원안 제1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어기구의의원안	송옥주의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16조(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양곡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6조(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신 설>	3.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목표 설정 및 추진 계획 4. 양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	3. 선제적 수급 조절 계획		3. 양곡의 목표 가격. 이 경우 목표 가격은 양곡의 생산비, 물가 상승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3. 선제적 수급 조절 계획	3. 선제적 수급 조절 계획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u>면적 관</u> <u>리 목표</u> <u>설정 및</u> <u>추진계획</u>			<u>하는 사</u> <u>항을 고</u> <u>려 하 여</u> <u>정한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 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 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미곡의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못한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1. 마곡의 가격이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마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매입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1. 마곡의 가격이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마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마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마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마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	1. 마곡의 가격이 제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한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마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1. 마곡의 가격이 제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마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1. 마곡의 가격이 제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마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1. 마곡의 가격이 제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마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신 설>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2 에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급 격 하 게 상 승 하 거 나 상 승 이 우 려 되 는 경 우 : 정 부 관 리 양 곡 의 판 매	축미곡의 매입가격 으로 한다.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급 격 하 게 상 승 하 거 나 상 승 이 우 려 되 는 경 우: 정 부 관 리 양 곡 의 판 매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 의 결 을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폭 등 하 거 나 폭 등 이 우 려 되 는 경 우: 정 부 관 리 양 곡 의 판 매	한다.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4 에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급 격 하 게 상 승 하 거 나 상 승 이 우 려 되 는 위 기 상 황 이 발 생 한 경 우: 정 부 관 리 양 곡 의 판 매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 나 상승 이 우려 되는 경 우: 정부 관리양곡 의 판매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 나 상승 이 우려 되는 경 우: 정부 관리양곡 의 판매
⑤ ~ ⑥ (생 략)	⑤ ~ ⑥ (생 략)	⑤ ~ ⑥ (생 략)	⑤ ~ ⑥ (생 략)	⑤ ~ ⑥ (생 략)	⑤ ~ ⑥ (생 략)	⑤ ~ ⑥ (생 략)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제16조(가격 안정을 위 한 양곡의 수급 관	⇒	제16조(양곡 수급안정 대책의 수 립 및 시	제16조(가격 안정을 위 한 양곡의 수급 관	제16조(가격 안정을 위 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 안정을 위 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 안정을 위 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 안정을 위 한 양곡의 수급 관리)	- 윤준병 의원안 : 종전 대 안 대비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리) ①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은 양곡의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 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양 곡수급안 정대책을 수립·시 행할 수 있다.		행 등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양곡 의 가격안 정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 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리) ① 농 림축산식 품부장관 은 양곡의 가격안정 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 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 양 곡수급안 정대책을 수립·시 행할 수 있다.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양 곡의 가격 안정을 위 하여 필요 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양곡 수급안정 대책을 수 립·시행 할 수 있 다.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양 곡의 가격 안정을 위 하여 필요 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양곡 수급안정 대책을 수 립·시행 할 수 있 다.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양 곡의 가격 안정을 위 하여 필요 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양곡 수급안정 대책을 수 립·시행 할 수 있 다.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양 곡의 가격 안정을 위 하여 필요 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양곡 수급안정 대책을 수 립·시행 할 수 있 다.	① 조 목 변 경 ② 제3호 구체화 ③ 제4호 신설 - 문대림 의원안 : 중전 대 안과 동 일 - 어기구 의원안 : 중전 대 안과 달 리 제1항 개정 없 음
1. . 2. (생 략)		1. . 2. (생 략)	1. . 2. (생 략)	1. . 2. (생 략)	1. . 2. (생 략)	1. . 2. (생 략)	1. . 2. (생 략)	
3. 선제적 수급조 절 계획		3. 양곡의 가격 안 정을 위 한 선제 적 수급 조절 목 표 설정 및 추진 계획 4. 양곡의 가격 안 정을 위 한 재배 면적 관 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3. 양곡의 목표가격. 이 경우 목표가격 은 양곡 의 생산 비 물가 상승률 및 그 밖 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송옥주 의원안 : 중전 대 안과 달 리 양곡 의 목표 가 격 을 포 함 하 도록 함 - 이원택· 박수현 의원안 : 중전 대 안과 동 일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경우	⇒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경우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경우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경우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경우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경우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경우	- 윤준병 의원안 : 수급안정 대책 이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기획재정 부장관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 체대표등” 이라 한다) 과 협의하 여 매년 1 0월 15일 까지 제1 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 다. 다만, 기상 여건 의 급격한 변화 등으 로 해당 연도 생산 량 예측이 어려운 경 우에는 그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 부장관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 체대표등” 이라 한다) 과 협의하 여 매년 1 0월 15일 까지 제1 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 하고, 이 를 이행하 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 격한 변화 등으로 해 당 연도 생 산량 예측 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 부장관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 체대표등” 이라 한다) 과 협의하 여 매년 1 0월 15일 까지 제1 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 다. 다만, 기상 여건 의 급격한 변화 등으 로 해당 연도 생산 량 예측이 어려운 경 우에는 그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 부장관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 체대표등” 이라 한다) 과 협의하 여 매년 1 0월 15일 까지 제1 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 다. 다만, 기상 여건 의 급격한 변화 등으 로 해당 연도 생산 량 예측이 어려운 경 우에는 그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 부장관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 체대표등” 이라 한다) 과 협의하 여 매년 1 0월 15일 까지 제1 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 다. 다만, 기상 여건 의 급격한 변화 등으 로 해당 연도 생산 량 예측이 어려운 경 우에는 그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 부장관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 체대표등” 이라 한다) 과 협의하 여 매년 1 0월 15일 까지 제1 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 다. 다만, 기상 여건 의 급격한 변화 등으 로 해당 연도 생산 량 예측이 어려운 경 우에는 그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 부장관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 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 체대표등” 이라 한다) 과 협의하 여 매년 1 0월 15일 까지 제1 항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 하여야 한 다. 다만, 기상 여건 의 급격한 변화 등으 로 해당 연도 생산 량 예측이 어려운 경 우에는 그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행 의 무 부여 - 문대림· 어기구· 송옥주· 이원택· 박수현 의원안 : 중전 대 동 안 과 일
③(생 략)	=	③(생 략)	③(생 략)	③(생 략)	③(생 략)	③(생 략)	③(생 략)	- 개정 없음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농림 축산식품	⇒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2항에 따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농림 축산식품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양 곡가격안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농림 축산식품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농림 축산식품	④ 제3항 에도 불구하고 농림 축산식품	- 윤준병 의원안 : 중전 대 안 대비 ① 대책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부장관은 미곡의 가 격이 급격 하게 하락 하거나 상 승하는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 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른 미곡의 수급안정 대책을 수 립·시행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 이 발생하 는 경우 제16조 의2에 따 른 양곡수 급관리위 원회의 심 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대책 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서 정한 목 표를 달성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호에 해 당하는 대 책을 즉각 수립·시행 하여야 한 다.	부 장 관 은 미곡의 가 격이 급격 하게 하락 하거나 상 승하는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 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 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 립·시행 하여야 한 다.	부 장 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 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4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부 장 관 은 미곡의 가 격이 급격 하게 하락 하거나 상 승하는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 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부 장 관 은 미곡의 가 격이 급격 하게 하락 하거나 상 승하는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 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대책 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발동 조건 수급안정 대책과 연계 ② 원칙적 임의 조항 으로 규정 하되 (본 문), 예외 조항을 규정 (단 서) - 문대림 의원안 : 대책 발 동 조건에 미곡적재 배면적목 표달성 여부 연계 - 어기구 의원안 : 의결 추 가 - 송옥주 의원안 : 인용 조 변번호 경 및 자 구 수정 - 이원택· 박수현 의원안 : 종전 대 동안과 일
1.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1.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2 에	1.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4 제1	1.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의 3에 따른	1.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4에 따	1.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1.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급 격 하 게 하 락 하 거 나 하 락 이 우 려 되 는 경우: 농 업 협 동 조 합 등 을 통 해 해 당 연 도 에 생 산 되 는 미 곡 에 대 한 수 요 량 을 초 과 하 는 생 산 량 또 는 예 상 생 산 량 의 매 입 이 경 우 매 입 가 격 은 공 공 비 축 미 곡 의 매 입 가 격 으 로 한 다.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급 격 하 게 하 락 하 거 나 하 락 이 우 려 되 는 경 우: 농 업 협 동 조 합 등 을 통 하 여 해 당 연 도 에 생 산 되 는 미 곡 에 대 한 수 요 량 을 초 과 하 는 생 산 량 또 는 예 상 생 산 량 의 매 입 이 경 우 매 입 가 격 은 공 공 비 축 미 곡 의 매 입 가 격 으 로 한 다.	향에 따 라 미곡 재 배 면 적 감 축 목 표 가 달 성 되 었 음 에 도 불 구 하 고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미 곡 가 격 이 하 락 하 거 나 하 락 이 우 려 되 는 경 우: 농 업 협 동 조 합 등 을 통 해 해 당 연 도 에 생 산 되 는 미 곡 에 대 한 수 요 량 을 초 과 하 는 예 상 생 산 량 의 매 입 이 경 우 매 입 가 격 은 공 공 비 축 미 곡 의 매 입 가 격 으 로 한 다.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의결 을 거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폭락하거 나 폭락 이 우려 되는 경 우: 농업 협동조합 등을 통 한 해당 연 도 에 생 산 되 는 미 곡 에 대 한 수 요 량 을 초 과 하 는 생 산 량 또는 예 상 생 산 량 의 매 입 이 경 우 매 입 가 격 은 공 공 비 축 미 곡 의 매 입 가 격 으 로 한 다.	른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의 심 의 를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급 격 하 게 하 락 하 거 나 하 락 이 우 려 되 는 위 기 상황 이 발생 한 경우: 농업협동 조합 등 을 통하 여 해당 연 도 에 생 산 되 는 미 곡 에 대 한 수 요 량 을 초 과 하 는 생 산 량 또는 예 상 생 산 량 의 매 입 이 경 우 매 입 가 격 은 공 공 비 축 미 곡 의 매 입 가 격 으 로 한 다.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급 격 하 게 하 락 하 거 나 하 락 이 우 려 되 는 경우: 농 업 협 동 조 합 등 을 통 해 해 당 연 도 에 생 산 되 는 미 곡 에 대 한 수 요 량 을 초 과 하 는 생 산 량 또는 예 상 생 산 량 의 매 입 이 경 우 매 입 가 격 은 공 공 비 축 미 곡 의 매 입 가 격 으 로 한 다.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정 하 는 기 준 이 상 으 로 급 격 하 게 하 락 하 거 나 하 락 이 우 려 되 는 경우: 농 업 협 동 조 합 등 을 통 해 해 당 연 도 에 생 산 되 는 미 곡 에 대 한 수 요 량 을 초 과 하 는 생 산 량 또는 예 상 생 산 량 의 매 입 이 경 우 매 입 가 격 은 공 공 비 축 미 곡 의 매 입 가 격 으 로 한 다.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2에 따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4에 따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2. 미곡의 가 격 이 제16조 의 3 에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따른 양 곡수급관 리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정 하는 기준 이 상 으로 급 격 하 게 상승 하거나 상승 이 우려 되 는 경우: 정부관리 양 곡 의 판매		른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의 심 의 를 거쳐 정 하는 기 준 이상 으로 급 격 하 게 상승 하 거나 상 승 이 우 려 되 는 경우 : 정부관리 양 곡 의 판매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쳐 정 하는 기 준 이상 으로 급 격 하 게 상승 하 거나 상 승 이 우 려 되 는 경우: 정 부 관 리 양 곡 의 판매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 의 결 을 거쳐 정 하는 기 준 이상 으로 폭 등 하 거 나 폭등 이 우려 되는 경 우: 정부 관리양곡 의 판매	른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의 심 의 를 거쳐 정 하는 기 준 이상 으로 급 격 하 게 상승 하 거나 상 승 이 우 려 되 는 위기 상 황 이 발 생한 경 우: 정부 관리양곡 의 판매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쳐 정 하는 기 준 이상 으로 급 격 하 게 상승 하 거나 상 승 이 우 려 되 는 경우: 정 부 관 리 양 곡 의 판매	따른 양 곡 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쳐 정 하는 기 준 이상 으로 급 격 하 게 상승 하 거나 상 승 이 우 려 되 는 경우: 정 부 관 리 양 곡 의 판매	
⑤ ~ ⑦ (생 략)	⇒	⑤ ~ ⑦ (생 략)	⑤ ~ ⑦ (생 략)	⑤ ~ ⑦ (생 략)	⑤ ~ ⑦ (생 략)	⑤ ~ ⑦ (생 략)	⑤ ~ ⑦ (생 략)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개정안 중 안 제1항에서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안 제2항에서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이행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을 수용함.

다만, 안 제4항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쌀 의무매입을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쌀 품목의 과잉생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2) 검토의견

(1) 양곡 시장격리 제도 개요

현행법 제16조는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즉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으로, 크게 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시행과 ② 시장격리곡 매입·판매의 두 가지 사항으로 구성됨.

첫째, 현행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되, ② 미곡에 대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이하 “미곡수급안정대책”이라 한다)은 매년 수확기에 해당하는 10월 15일까지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이와 같은 수급안정대책 제도는 2020년 도입되었는데, 당시 공익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함께 체계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매년 미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둘째, 현행법 제16조제3항 이하에서는 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②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양곡을 매입·판매하는 시장격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장격리에 대한 예시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2024년 10월 15일에 공표한 “2024년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참고할 수 있음.

해당 대책은 현행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수확기마다 수립·공표 의무가 부여되는 미곡수급안정대책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기한(10월 15일) 내에 발표되었음.

미곡수급안정대책에는 현행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공급량·수요량 추정과 양곡의 매입·판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미곡의 매입·판매에 대하여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함.

【 미곡수급안정대책의 미곡 시장격리 조건 및 수량 】

1. 미곡의 매입

연번	구분	내용
1	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2.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2	수량	(원칙)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매입 가능 (예외)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 매입 가능

2. 미곡의 판매

연번	구분	내용
1	조건	(재량)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의무) 3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 순기(旬期): 한달(30일)을 10일 단위로 나눈 것 *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수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함 (생산량, 수요량,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료: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재가공

“2024년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에서는 예상 생산량과 수요량을 각각 365만 7천톤과 352만 9천톤으로 추정하였는데, 예상 초과생산량(12만 8천톤)이 생산량의 3%(11만톤)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하여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톤의 매입이 결정되었음.

【 2024년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주요내용 】

I. 2024년산 쌀 수급 전망

- ☐ (생산) ^{예상}생산량은 전년대비 45천톤 감소한 3,657천톤(△1.2%)
- ☐ (수요) 전년대비 78천톤 감소한 3,529천톤 전망(△2.1%)
- ☐ ('24년산 수급전망) 128천톤 초과생산 예상(생산량의 3.5%)
 - 예상 생산량 3,657천톤 - 수요량 3,529천톤

II. 2024년 수확기 수급 안정대책

- ☐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톤 시장격리 추진
- ☐ 벼멸구·수발아 피해벼 농가 희망물량 전량 매입 추진
- ☐ 벼매입자금 전년대비 1천억원 증가한 3.5조원 지원(정부 1.3, 농협 2.2)
- ☐ 양곡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9.30~11.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산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2024. 10. (일부 재가공)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하여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20만톤의 2024년산 쌀을 매입하였으며, 총 매입액은 4,227억원 가량으로 추정됨.

해당 매입자금은 농협경제지주가 우선 부담한 후, “정부양곡매입비(2131-360)” 사업을 통하여 농협경제지주에게 지급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부담함.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크게 ① 양곡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②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미곡 매입 의무, ③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미곡 판매 의무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첫째,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에 관한 목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로,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공표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므로,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어떠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미곡”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됨.

【 개정안별 제도 변화 ①: 양곡수급안정대책 】

연번	개정안	대책 내 추가 포함사항	그 외 사항
1	윤준병의원안	-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계획 - 재배면적 관리 목표·계획	- 미곡수급안정대책 이행의무 신설
2	문대림의원안	-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없음
3	어기구의원안	- 없음	- 없음
4	송옥주의원안	- 양곡의 목표가격	- 없음
5	이원택의원안	-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없음
6	박수현의원안	-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없음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9.

개정안 중 윤준병의원안은 ①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계획에 더하여 재배면적 관리 목표·계획을 양곡수급안정대책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이행 의무를 추가로 규정함.

재배면적 관리는 생산요소에 해당하는 재배지의 면적을 조절하여 공급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수급조절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윤준병의원안은 이를 선제적 수급조절과는 별도로 명시함.

이와 같은 별도 명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제적 수급조절에 관한 정책 중 “벼 재배면적 관리”에 관한 목표·계획을 매년 미곡수급안정대책에 포함하여 수립·공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윤준병의원안이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이행 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 제16조제4항에서 미곡수급안정대책과 연계한 조건부 의무를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개정안 중 송옥주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양곡의 목표가격을 양곡수급안정대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쌀 목표가격 설정 의무화와 연관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은 2019년 전부개정 이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 당시 쌀의 목표가격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

종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쌀의 목표가격을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 80킬로그램당 18만 8천원으로 규정하되, 5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도록 하였음.²³⁾

최종적으로는 법률이 전부개정되는 과정에서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이 80킬로그램당 21만 4천원으로 결정되었고,²⁴⁾ 이후 전부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목표가격 설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목표가격제가 폐지되었음.

그런데 최근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 종전과 같이 목표가격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쌀 목표가격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바 있음.

이에 송옥주의원안은 목표가격을 양곡수급안정대책에 포함하도록 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 목표가격을 수립·공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러한 법률개정 연혁과 목표가격 설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 법률 제14648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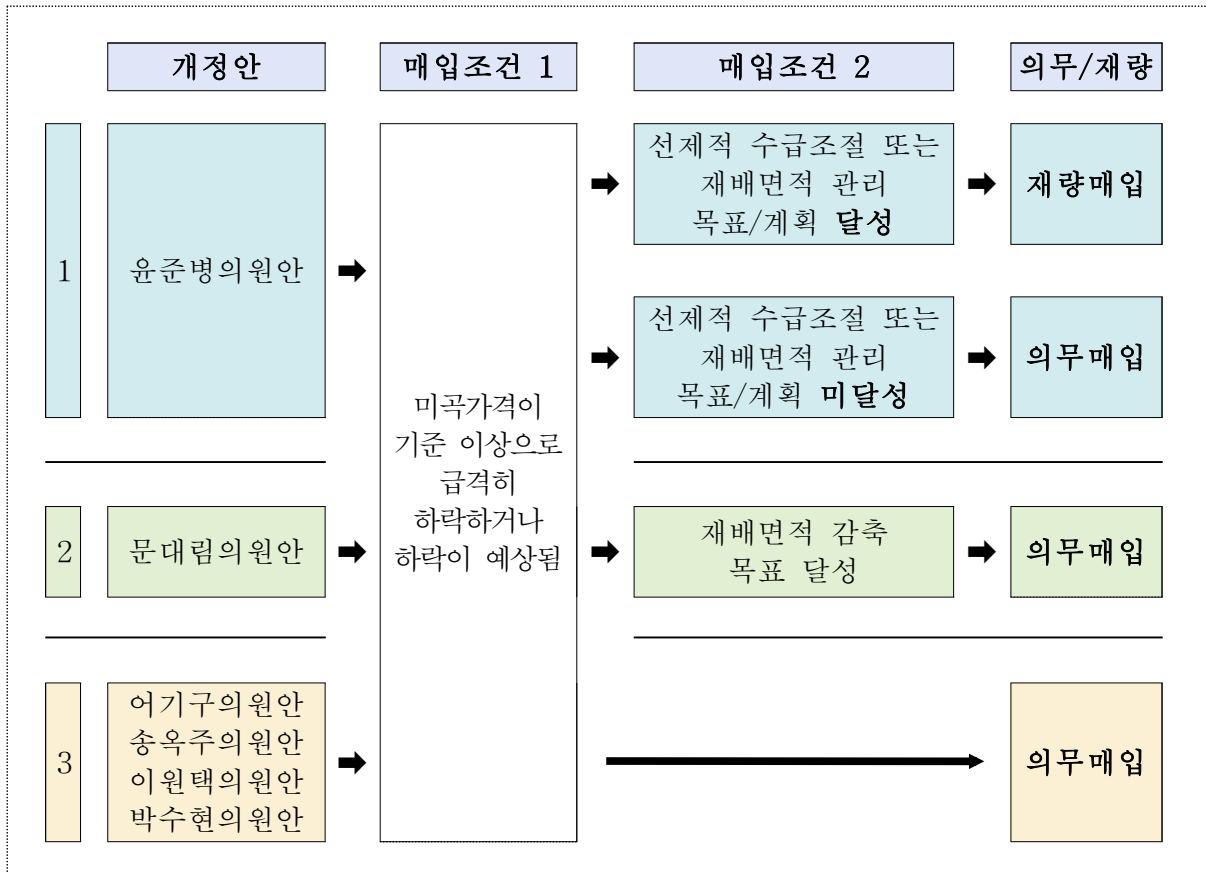
24) 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둘째, 안 제16조제4항 본문 및 제1호는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을 시장격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별 제도 변화 ②: 가격의 급락에 따른 미곡 매입 의무 】



주: 가격 급락의 기준은 ① 문대림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② 그 외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거쳐 정함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9.

여섯 건의 개정안은 제도의 의무 규정 여부에 따라 ① 윤준병의원안, ② 문대림의원안, ③ 그 외로 구분됨.

① 개정안 중 윤준병의원안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 시 시장격리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

다만, 미곡수급안정대책에서 설정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계획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계획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즉시 시장격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조건부 의무 규정’에 해당함.

② 개정안 중 문대림의원안은 안 제16조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데, 해당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에만 시장격리 의무를 부여하여, 윤준병의원안과는 다른 ‘조건부 의무 규정’에 해당함.

③ 그 외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무적으로 미곡의 시장격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순수한 의무 규정’에 해당함.

한편, 개정안은 모두 미곡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 시장격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으로 하며, 그 매입량은 해당연도의 초과생산량으로 함.

최근 5년간 수확기에 발표된 미곡수급안정대책을 살펴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초과생산을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4개 연산(年産)에 대하여 시장격리를 진행한 바 있음.

【 최근 5년간 미곡 초과생산량 및 최종 시장격리 물량 】

(단위: 천톤)

연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생산량(A)	3,507	3,882	3,764	3,702	3,585
2	수요량(B)	3,671	3,614	3,609	3,607	3,529
3	초과생산량(A-B)	△164	268	155	95	56
4	해당 연산 최종 시장격리물량	-	448	324	150	200

자료: ①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첩부 사유서, 2025. 5. 20.

②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3. 31.

초과생산량에 대한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은 수요 부족분을 정부가 충당함으로써 가격 안정화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년간 각 연산의 초과생산량 이상을 시장격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어떠한 매입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와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가격 하락 발생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법률상 매입 의무를 부여한다면, 현재와 비교하여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한다는 결과 자체는 변화하지 않을 수 있음.

그렇지만 정부가 시장에 제시하는 미곡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화되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매입 의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의무지출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임.

따라서, 개정안별 매입 의무 부여조건의 차이점, 미곡 가격 안정의 필요성, 시장격리곡 매입에 따른 향후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16조제4항 본문 및 제2호는 미곡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미곡 가격의 급격한 상승 시 정부관리양곡 판매를 통하여 시장 내 공급량을 증가시킨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미곡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도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수 있고, 3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일부 자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데, ① 일부 개정안이 “통해”라는 약어를 사용하여 이를 “통하여”로 풀어 쓸 필요가 있고, ② “예상생산량”은 예상과 생산량이라는 두개 단어로 구성되므로 “예상 생산량”으로 띄어쓸 필요가 있음.

나. 개정사항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개정안은 ① 시장격리곡 매입·판매물량의 산정과 매입·판매 시기, ② 미곡수급계획 수립 시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기구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현행법 제16조제5항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여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16조제5항).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양곡수급 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절차 ,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의 절차 ,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의 절차 ,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 ⑦ (생략)			

※ 다섯 건의 개정안 중 문대림의원안과 송옥주의원안은 제16조제5항을 개정하지 않음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④ (생략)	⇒	제16조(양곡수급안정 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 ④ (생략)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④ (생략)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④ (생략)	- 윤준병의원안 : 종전 대안에서 삭제한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을 미삭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의 절차,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의 절차,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 방식, 매입·판매의 절차,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여기구·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 문대립·송옥주의원안 : 종전 대안과 제5항을 미개정
⑥ ~ ⑦ (생략)	⇒	⑥ ~ ⑦ (생략)	⑥ ~ ⑦ (생략)	⑥ ~ ⑦ (생략)	

첫째, 현재 시장격리곡 매입·판매물량의 산정과 매입·판매 시기는 현행법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규정함.

고시에서는 미곡의 매입물량은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고, 판매물량은 생산량·수요량·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또한 미곡의 매입시기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기에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판매는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실시하도록 함.

한편, 미국 외 양곡의 경우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개정안은 안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장격리곡 매입·판매물량과 매입·판매 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해당 사항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기존의 위임규정을 유지한다면 조문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윤준병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현행법의 위임사항 중 매입·판매물량의 산정을 삭제하지 않는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대한 안 제16조의2에서는 다른 개정안과 동일하게 매입·판매물량을 심의사항으로 하므로, 다른 개정안과 같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문대림의원안과 송옥주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제5항에서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현행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위임규정을 통하여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사실상 두 개정안이 안 제16조의2를 통해 신설하려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해당함.

따라서, 안 제16조의2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제5항에서 윤준병의원
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과 같이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
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다. 양곡 시장격리의 국고채무부담행위 관련 법적 근거 정비

개정안은 현재 양곡 시장격리 시 이루어지는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생산 방식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양곡 시장격리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이원택의원안·박수현의원안 제16조제6항, 이원택의원안·문대림의원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 행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⑤ (생략)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매입자금을 융지할 수 있다.</u>	⑥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u>
⑦ (생략)			
<u><신설></u> ※ 윤준병의원안은 제8항을 별도 개정안(2208296)에서 문대림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과 동일하게 신설함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u>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u>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현 행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신 설> ※ 윤준병의원안은 제9항을 별도 개정안(2208296)에서 이원택의원안과 동일하게 신설함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 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방법과 기간	

종전 대안	⇒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 고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⑤(생 략)	⇒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⑤(생 략)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⑤(생 략)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⑤(생 략)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 문대림의원안 : 개정 없음 - 이원택·박수현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종전 대안	⇒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고
예산의 범위 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 용을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에서 매입자 금을 용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 용을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 용을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생략)	=	⑦ (생략)	⑦ (생략)	⑦ (생략)	
⑧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 3항에 따라 농 업협동조합등 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 가격과 매입규 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 3항에 따라 농 업협동조합등 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 가격과 매입규 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 3항에 따라 농 업협동조합등 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 가격과 매입규 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문대림·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의원안 : 개정 없음
⑨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양곡을 매입하게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 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 다.	⇒		⑨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양곡을 매입하게 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 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 다.		- 문대림· 박수현 의원안 : 개정 없음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종전 대안	⇨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고
<u>1.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u> <u>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방법과 기간</u>			<u>1.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u> <u>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방법과 기간</u>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다양한 방식의 시장격리 추진을 위하여 보조방식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려는 안 제16조제6항을 수용함.

다만, ① 안 제16조제8항은 시장격리 추진 결정시 즉시 대국민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어 입법의 실익이 적고, 매입가격은 매입이 완료된 이후 확정되어 사전 보고가 어려움.

② 안 제16조제9항은 현재 방식을 국고채무부담행위인 것으로 전제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수용이 곤란함.

2)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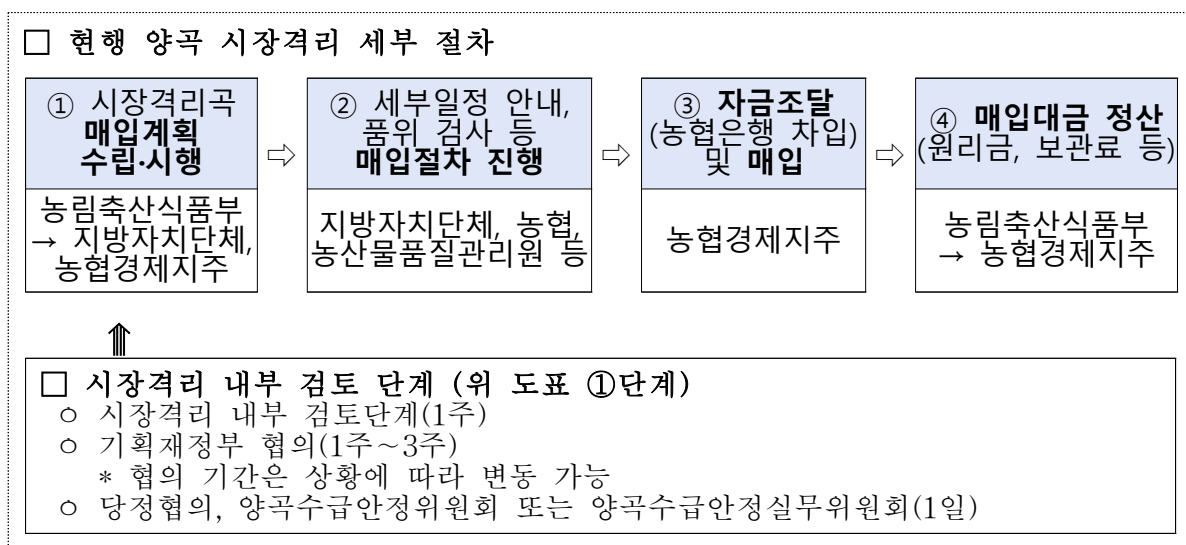
(1) 현행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정산 방식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하여 시장격리곡 매입을 진행하는데, 농협경제지주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짐.

예를 들어 2024년에는 2023년산과 2024년산의 2개 연산의 쌀에 대하여 시장격리가 진행되었는데, ① 2023년산 쌀은 농협경제지주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15만톤을 매입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분할하여 정산하게 됨.

② 2024년산 쌀의 경우 농협경제지주가 자금을 조달하여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0만톤을 우선 매입하였고,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산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음.

【 양곡 시장격리 절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3. 31. (일부 재가공)

현재까지 시장격리곡 매입은 총 12개 연산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2024년말을 기준으로 ① 2005년산, ② 2008년산, ③ 2009년산 및 ④ 2010년산의 4개 연산의 시장격리곡에 대하여만 자금 정산이 완료됨.

【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정산 현황(2024년말 기준) 】

(단위: 천톤, 백만원)

연번	구분	격리 물량	상환액			기 지급 이자	격리시점	상환(정산) 기간 및 방식
			원금 합계 (A+B)	누적상환액 (A)	잔액 (B)			
1	2005년산	144	243,339	243,339	-	55,141	'05.12.23. ~'06.2.8.	'06년~'16년
2	2008년산	100	171,410	171,410	-	37,388	'09.8.21. '09.8.28.	'14년~'23년
3	2009년산	566	929,884	929,884	-	193,232	(1차) '09.10.~'10.1. (2차) '10.5.7. '10.5.14. (3차) '10.9.30.	'15년~'24년
4	2010년산	86	141,108	141,108	-	2,683	'10.10.~'10.12	'11년 (공매 후 정산)
5	2014년산	240	471,525	285,862	185,663	99,599	(1차) '14.10.~'14.12 (2차) '15.5.22.	'19년~'27년
6	2015년산	357	627,235	313,620	313,615	127,344	(1차) '15.10.~'15.12 (2차) '16.3.30. (3차) '16.10.12.	'20년~'27년
7	2016년산	299	458,701	183,648	275,053	92,987	'16.10.~'16.12	'21년~'27년
8	2017년산	370	668,448	200,535	467,913	133,354	'17.10.~'17.12	'22년~'28년

연번	구분	격리 물량	상환액			기 지급 이자	격리시점	상환(정산) 기간 및 방식
			원금 합계 (A+B)	누적상환액 (A)	잔액 (B)			
9	2021년 산	448	932,196	56,830	875,366	85,666	'22.2.~'22.12.	'22년~'31년
10	2022년 산	324	732,181	-	732,181	60,616	'22.10.~'23.3.	'27년~'31년
11	2023년 산	150	329,114	96,840	232,274	3,155	'24.1.~'24.9.	'24년~'29년
12	2024년 산	200	422,700 (추정)	-	422,700 (추정)	-	'24.9.~'24.12.	미정
합계		3,284	6,127,841	2,623,076	3,504,765	891,165		-

주: 음영 표시는 정산이 완료된 시장격리곡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3. 31.

(2) 양곡 정산사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요구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양곡 시장격리 매입자금 정산방식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동 질의를 바탕으로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됨에도 관련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던 시장격리곡 매입 방식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2025년 3월 7일 전체회의에서 채택되었음.

【 양곡 정산사업 등에 대한 2024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 요약 】

□ 국정감사 주요 질의 사항

- (윤준병의원) 시장격리곡 매입 관련,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농협경제지주에게 채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방식의 법적 근거가 없음
→ ① 채권 발행 근거 마련 또는 ② 채권부담액의 예산 명시 필요

□ 국정감사 후속 조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구 분	내 용
조치 사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2025년 3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의결
채택 사항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됨에도 관련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던 시장격리곡 매입 방식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작성, 2025. 3. 24.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24년 12월 13일 전체회의(제419회 제1차)에서 「국회법」 제127조의²⁵⁾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림축산식품

25)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는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따른 감사원의 보고 기한은 「국회법」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25일까지였으나, 감사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간 보고 후 기간 연장(2개월)을 요청하여 2025년 5월 25일까지로 연장된 후, 2025년 5월 23일 보고가 이루어짐.

【 양곡 정산사업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 결과 】

구 분		내 용								
조치사항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table><tr><td>① 농해수위 의결</td><td>② 본회의 의결</td><td>③ 감사원 중간 보고 후 기간(2개월) 연장 요청</td><td>④ 감사원 결과 보고</td></tr><tr><td>2024. 12. 13.</td><td>2024. 12. 26. *보고기한 2025. 3. 25.</td><td>2025. 3. 19. *보고기한 2개월 연장 2025. 3. 25. → 2025. 5. 25.</td><td>2025. 5. 23.</td></tr></table>	① 농해수위 의결	② 본회의 의결	③ 감사원 중간 보고 후 기간(2개월) 연장 요청	④ 감사원 결과 보고	2024. 12. 13.	2024. 12. 26. *보고기한 2025. 3. 25.	2025. 3. 19. *보고기한 2개월 연장 2025. 3. 25. → 2025. 5. 25.	2025. 5. 23.
① 농해수위 의결	② 본회의 의결	③ 감사원 중간 보고 후 기간(2개월) 연장 요청	④ 감사원 결과 보고							
2024. 12. 13.	2024. 12. 26. *보고기한 2025. 3. 25.	2025. 3. 19. *보고기한 2개월 연장 2025. 3. 25. → 2025. 5. 25.	2025. 5. 23.							
요구사항		국고채무부담행위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한 감사								
감사원 보고 결과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사전 의결 의무 대상인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종결처리								
	2	양곡매입 전에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예산통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법령상 개선요구 등을 하지 않음								

자료: 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6.

②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2025. 5.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사전 통제하고자 하는 사항(행위연도, 상환 연도 및 채무부담금액)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그런데, 양곡 시장격리의 경우 ① 수확기가 되어서야 매입 여부가 결정되어 예산 편성 시점에서 행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음.

또한, ② 구체적인 매입대금이 매입 종료 이후에 확정되어 예산 편성 시점에서 상환연도와 구체적인 채무부담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한편, 감사원은 양곡 매입 전에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예산통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

다만, 감사원은 현재 양곡 매입가격과 규모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²⁶⁾이 국회 심사 중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도의 법령상 개선요구 등을 하지는 않았음.

26)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6)”, 2025. 2.

(3)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양곡 시장격리 매입자금 정산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이나, ②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의결을 받는 절차가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있음에 따라 해당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현재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6)”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원택의원안 제16조제6항·제8항 및 제9항과 동일한 내용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산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하는 행위임.²⁷⁾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장격리곡 매입 업무를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데, 주로 농협경제지주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사후 정산 방식을 취함.

가령, 2009년산 양곡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시장격리곡 매입 당시 농협경제지주가 자금을 부담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초 5년(’10~’14)간 이자만을 부담한 후 10년(’15~’24) 동안 매입자금을 분할 상환하여 정산한 바 있음.

27) 기획재정부,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 2009.

그런데, 이와 같은 정산 방식은 ① 지출원인행위(시장격리곡 매입) 시점과 예산(상환금)의 지출 시점이 서로 다르고, ② 자금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시점에서 해당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정산방식은 정부가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채무를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부담하는 형태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양곡 시장격리에 있어 외상거래 방식의 자금운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는 농협경제지주에 대하여 장기간의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실상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²⁸⁾

다만, 최근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요구에 대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사전 통제하려는 행위연도, 상환연도 및 채무부담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음.

따라서, 현재의 정산방식에 대하여는 ①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 ②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국회예산정책처 등), ③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감사원 등)이 공존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8)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pp. 40~46.

한편,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정산방식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검토할 수 있음.

첫째,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보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25조²⁹⁾가 적용되어 ‘법률에 따른 것’이거나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이 아니라면,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시장격리곡 매입에 따른 정산금은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이 아니므로,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결정됨.

그런데, 양곡 시장격리의 근거 규정인 「양곡관리법」 제16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매입자금의 정산 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또한, 양곡 시장격리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외사항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음.³⁰⁾

따라서, 현재의 정산방식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전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절차적 미비

29)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30)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pp. 40~46.

가 있을 것인데,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둘째,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개정안은 현재의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정산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사후 제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국회의 재정 및 국정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로,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곡 매입 전에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예산통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별도의 법령상 개선요구 등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이미 양곡 매입가격과 규모 등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의 정산 방식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시장격리곡 매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안을 통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시장격리곡 매입은 안 제16조제3항은 물론 제4항에 따라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16조제8항과 제9항 모두에서 “제3항에 따라”를 “제3항·제4항에 따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시장격리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뒤따르는 “매입하게 하는 경우”와의 문장 조화 측면에서 안 제16조제9항에서 “농업협동조합등이”를 “농업협동조합등에게”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³¹⁾

31) 즉, 안 제16조제9항은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생략)”에서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생략)”으로 되어야 할 것임

8.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개정안은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사항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2 신설, 문대림의원안·어기구의원안 제16조의3 신설, 송옥주의원안 제16조의4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신 설> ※ 관계 규정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7조(위원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6조의2(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4(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관계 규정 양곡수급안	② 위원회는 다음	② 위원회는 다음	② 위원회는 다음	② 위원회는 다음	② 위원회는 다음	② 위원회는 다음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양곡가격 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 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미곡의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제16조 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시행 이후 동향	3. 제16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 여부, 매입·판매 물량, 매입·판매 시기 및	3. 제1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 여부, 매입·판매 물량, 매입·판매	4.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 여부, 매입·판매 물량, 매입·판매 시기 및	3.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 여부, 매입·판매 물량, 매입·판매 시기 및	3. 제1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 여부, 매입·판매 물량, 매입·판매	3. 제16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 여부, 매입·판매 물량, 매입·판매
5.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량 조정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	<u>매입·판매가격</u>	<u>시기 및 매입·판매가격</u>	<u>매입·판매가격</u>	<u>매입·판매가격</u>	<u>시기 및 매입·판매가격</u>	<u>시기 및 매입·판매가격</u>
	4. 제16조의3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5.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6. 그 밖에 양곡수급 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6.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양곡의 수급안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 관계 규정 양곡수급안 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 품 부 고 시) 제9조(위원 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 하여 15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과 위 촉직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 품부차관으 로 한다.	③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며, 위원은 당 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며, 위원은 당 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며, 위원은 당 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며, 위원은 당 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며, 위원은 당 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이 되며, 위원은 당 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관계 규정 양곡수급안 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 품부고시) 제9조(위원 회 구성) ② 제항에 따 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 및 식 량정책관 2. 기획재정 부 민생경 제정책관 3. 농협경제 지주회사 의 대표이 사 4. 한국농촌 경제연구 원 농업관 측본부장	④ 제3항에 따른 당연 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 로 한다. 1.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 및 식 량정책관 2. 기획재정 부 민생경 제정책관 3. 농협경제 지주회사 의 대표이 사 4. 한국농촌 경제연구 원 농업관 측본부장	④ 제3항에 따른 당연 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 로 한다. 1.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 및 식 량정책관 2. 기획재정 부 민생경 제정책관 3. 농협경제 지주 대표 이사 4. 한국농촌 경제연구 원 농업관 측본부장	④ 제3항에 따른 당연 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 로 한다. 1.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 및 식 량정책관 2. 기획재정 부 민생경 제정책관 3. 농협경제 지주 대표 이사 4. 한국농촌 경제연구 원 농업관 측본부장	④ 제3항에 따른 당연 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 로 한다. 1.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 및 식 량정책관 2. 기획재정 부 민생경 제정책관 3. 농협경제 지주 대표 이사 4. 한국농촌 경제연구 원 농업관 측본부장	④ 제3항에 따른 당연 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 로 한다. 1.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 및 식 량정책관 2. 기획재정 부 민생경 제정책관 3. 농협경제 지주 대표 이사 4. 한국농촌 경제연구 원 농업관 측본부장	④ 제3항에 따른 당연 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으 로 한다. 1. 농림축산 식품부차 관 및 식 량정책관 2. 기획재정 부 민생경 제정책관 3. 농협경제 지주 대표 이사 4. 한국농촌 경제연구 원 농업관 측본부장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 관계 규정 양곡수급 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 축산식품 부고시) 제9조(위 원회 구성) ③ 제1항 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위 촉하는 사 람으로 한 다. 일부는 생산자단 체의 추천 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생산자단 체 대표 또는 대표 가 추천하 는 사람 2.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유통 인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등 에서	⑤ 제3항 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위 촉하는 사 람으로 한 다. 이 경 우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1.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생산자단 체 대표 또는 대표 가 추천하 는 사람 2.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유통 인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대 표가 추 천 하는 사람 3. 학계, 연 구계 등	⑤ 제3항 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위 촉하는 사 람으로 한 다. 이 경 우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1.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생산자단 체 대표 2.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유통 인 단체 및 소비 자 단체 대표 3. 학계, 연 구계 등	⑤ 제3항 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위 촉하는 사 람으로 한 다. 이 경 우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1.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생산자단 체 대표 2.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유통 인 단체 및 소비 자 단체 대표 3. 학계, 연 구계 등	⑤ 제3항 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위 촉하는 사 람으로 한 다. 1.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생산자단 체 대표 2.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유통 인 단체 및 소비 자 단체 대표 3. 학계 등 에서 양	⑤ 제3항 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위 촉하는 사 람으로 한 다. 이 경 우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1.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생산자단 체 대표 2.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유통 인 단체 및 소비 자 단체 대표 3. 학계, 연 구계 등	⑤ 제3항 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위 촉하는 사 람으로 한 다. 이 경 우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1.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생산자단 체 대표 2. 양곡 수 급과 관련 이 있는 유통 인 단체 및 소비 자 단체 대표 3. 학계, 연 구계 등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 고
제16조의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	⇒	제16조의2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	제16조의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	제16조의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	제16조의4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	제16조의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	제16조의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	- 윤준병의원안 : 조 번호 수정 - 문대림·이원택·박수현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 여기구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항을 심 의 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 부에 양 곡수급 관리위 원회(이 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 부에 양 곡수급 관리위 원회(이 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 부에 양 곡수급 관리위 원회(이 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을 심 의 의결 하 기 위하 여 농림 축산 식 품부에 양곡수 급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 부에 양 곡수급 관리위 원회(이 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 부에 양 곡수급 관리위 원회(이 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 부에 양 곡수급 관리위 원회(이 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원안 : 의결 기능 추가 - 송옥주 의원안 : 조 번호 수정
② 위원 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 한다.	⇒	② 위원 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한다.	② 위원 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한다.	② 위원 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의결 한다	② 위원 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한다.	② 위원 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한다.	② 위원 회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 의한다.	- 윤준병 의원안 : 자구 정리 - 문대림 의원안 : 제5호를 신설
<신설>				1 양곡가 격안정 제도의 대상품 목 기 준가격, 차액의 지급비 율				- 어기구 의원안 : 제1호를 신설 - 송옥주 의원안 : 자구 정리 - 이원택· 박수현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 곡수급 안정대 책의 수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 곡수급 안정대 책의 수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 곡수급 안정대 책의 수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 곡수급 안정대 책의 수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 곡수급 안정대 책의 수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 곡수급 안정대 책의 수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양 곡수급 안정대 책의 수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립 및 시행		립 및 시행	립 및 시행	립 및 시행	립 및 시행	립 및 시행	립 및 시행	
2. 제16 조 제2 항 에 따 른 미곡수 급안정 대책의 수 립 및 시 행		2. 제16 조 제2 항 에 따 른 미곡의 수급안 정대책 의 수 립 및 시 행	2. 제16 조 제2 항 에 따 른 미곡수 급안정 대책의 수 립 및 시 행	3. 제16 조 제2 항 에 따 른 미곡수 급안정 대책의 수 립 및 시 행	2. 제16 조 제2 항 에 따 른 미곡수 급안정 대책의 수 립 및 공 표	2. 제16 조 제2 항 에 따 른 미곡수 급안정 대책의 수 립 및 시 행	2. 제16 조 제2 항 에 따 른 미곡수 급안정 대책의 수 립 및 시 행	
3. 제16 조 제3 항 및 같은 조 제4 항 에 따 른 양곡의 매입· 판매여 부, 매 입·판 매물량, 매입· 판매시 기 및 매입· 판매가 격		3. 제16 조 제3 항·제 4항에 따 른 양곡의 매입· 판매여 부, 매 입·판 매물량, 매입· 판매시 기 및 매입· 판매가 격	3. 제16 조 제3 항 및 같은 조 제5 항 에 따 른 양곡의 매입· 판매여 부, 매 입·판 매물량, 매입· 판매시 기 및 매입· 판매가 격	4. 제16 조 제3 항 및 제4항 에 따 른 양 곡 의 매입· 판매여 부, 매 입·판 매 물 량, 매 입·판 매시기 및 매 입·판 매가격	3. 제16 조 제3 항 및 제4항 에 따 른 양 곡 의 매입· 판 매 여 부, 매입· 판 매 물 량, 매입· 판 매 시 기 및 매 입·판 매 가 격	3. 제16 조 제3 항 및 같은 조 제4 항 에 따 른 양곡의 매입· 판매여 부, 매 입·판 매물량, 매입· 판매시 기 및 매입· 판매가 격	3. 제16 조 제3 항 및 같은 조 제4 항 에 따 른 양곡의 매입· 판매여 부, 매 입·판 매물량, 매입· 판매시 기 및 매입· 판매가 격	
4. 제16 조의2 에 따른 미곡 재		4. 제16 조의3 에 따른 미곡 재	4. 제16 조의2 에 따른 미곡 재	5. 제16 조의2 에 따른 미곡 재	4. 제16 조의2 에 따른 미곡 재	4. 제16 조의2 에 따른 미곡 재	4. 제16 조의2 에 따른 미곡 재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배면적 의 조정		배면적 의 조정	배면적 의 조정	배면적 의 조정	배면적 의 조정	배면적 의 조정	배면적 의 조정	
<신 설>			5 제6조 의4제1 항에 따 른 미곡 재배면 적 감축 목표 및 계획					
5 그 밖 에 이 법에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규 정한 사 항과 양 곡의 수 급안정 에 관하 여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이 필 요하다 고 인정 하여 부 의하는 사항		5 그 밖 에 이 법에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규 정한 사 항과 양 곡의 수 급안정 에 관하 여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이 필 요하다 고 인정 하여 부 의하는 사항	6 그 밖 에 이 법에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규 정한 사 항과 양 곡의 수 급안정 에 관하 여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이 필 요하다 고 인정 하여 부 의하는 사항	6 그 밖 에 이 법에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규 정한 사 항과 양곡 의 수급 안정에 관하여 농림축 산식품 부장관 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 하는 사 항	5 그 밖 에 양곡 의 수급 안정과 관련하 여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이 필 요하다 고 인정 하는 사 항	5 그 밖 에 이 법에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규 정한 사 항과 양 곡의 수 급안정 에 관하 여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이 필 요하다 고 인정 하여 부 의하는 사항	5 그 밖 에 이 법에서 위원회 의 심의 를 거치 도록 규 정한 사 항과 양 곡의 수 급안정 에 관하 여 농림 축산식 품부장 관이 필 요하다 고 인정 하여 부 의하는 사항	
③(생 략	=	③(생 략	③(생 략	③(생 략	③(생 략	③(생 략	③(생 략	- 종전 대안 과 동일
④ 제3 항에 따	⇒	④ 제3 항에 따	④ 제3 항에 따	④ 제3 항에 따	④ 제3 항에 따	④ 제3 항에 따	④ 제3 항에 따	- 윤준병 의원안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른 당연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으 로 한다. 1. 농림 축산식 품부차 관 및 식량정 책관 2. 기획 재정부 민생경 제정책 관 3. 농협 경제지 주 대 표이사 4.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농업관 측본부 장		른 당연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으 로 한다. 1. 농림 축산식 품부차 관 및 식량정 책관 2. 기획 재정부 민생경 제정책 관 3. 농협 경제지 주 회사 의 대 표이사 4.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농업관 측센터 장	른 당연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으 로 한다. 1. 농림 축산식 품부차 관 및 식량정 책관 2. 기획 재정부 민생경 제정책 관 3. 농협 경제지 주 대 표이사 4.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농업관 측본부 장	른 당연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으 로 한다. 1. 농림 축산식 품부차 관 및 식량정 책관 2. 기획 재정부 민생경 제정책 관 3. 농협 경제지 주 대 표이사 4.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농업관 측본부 장	른 당연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으 로 한다. 1. 농림 축산식 품부차 관 및 식량정 책관 2. 기획 재정부 민생경 제정책 관 3. 농협 경제지 주 대 표이사 4.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농업관 측본부 장	른 당연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으 로 한다. 1. 농림 축산식 품부차 관 및 식량정 책관 2. 기획 재정부 민생경 제정책 관 3. 농협 경제지 주 대 표이사 4.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농업관 측본부 장	른 당연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 람 으 로 한다. 1. 농림 축산식 품부차 관 및 식량정 책관 2. 기획 재정부 민생경 제정책 관 3. 농협 경제지 주 대 표이사 4.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농업관 측본부 장	: 자구 수정 - 문대림· 어기구· 송옥주· 이원택· 박수현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⑤ 제3 항에 따 른 위촉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	⑤ 제3 항에 따 른 위촉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⑤ 제3 항에 따 른 위촉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⑤ 제3 항에 따 른 위촉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 항에 해 당 하는	⑤ 제3 항에 따 른 위촉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⑤ 제3 항에 따 른 위촉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⑤ 제3 항에 따 른 위촉 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는	- 윤준병 의원안 :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 는 사람 을 포함 - 문대림· 어기구· 이원택· 박수현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사람 중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위촉 하는 사 람 으 로 한 다 . 이 경우 제1호에 해 당 하 는 사람 이 5명 이상 포 함 되 어 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 는 생산자 단 체 대표		사람 중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위촉 하는 사 람 으 로 한다. 이 경우 제 1 호 에 해 당 하 는 사람 이 5명 이상 포 함 되 어 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 는 생산자 단 체 대 표 또 는 대표가 추천하 는 사 람	사람 중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위촉 하는 사 람 으 로 한다. 이 경우 제 1 호 에 해 당 하 는 사람 이 5명 이상 포 함 되 어 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 는 생산자 단 체 대표	사람 중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위촉 하는 사 람 으 로 한다. 이 경우 제 1 호 에 해 당 하 는 사람 이 5명 이상 포 함 되 어 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 는 생산자 단 체 대표	사람 중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위촉 하는 사 람 으 로 한다. 이 경우 제 1 호 에 해 당 하 는 사람 이 5명 이상 포 함 되 어 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 는 생산자 단 체 대표	사람 중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위촉 하는 사 람 으 로 한다. 이 경우 제 1 호 에 해 당 하 는 사람 이 5명 이상 포 함 되 어 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 는 생산자 단 체 대표	사람 중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위촉 하는 사 람 으 로 한다. 이 경우 제 1 호 에 해 당 하 는 사람 이 5명 이상 포 함 되 어 야 한다.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 는 생산자 단 체 대표	의원안 : 중전 대 안과 동 일 - 송옥주 의원안 : 생산자 단 체 대 표 명 포 는 규정 상 하 합 단 서 삭 정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 체 및 소비자 단 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 체 및 소비자 단 체 대 표 또 는 대표가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 체 및 소비자 단 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 체 및 소비자 단 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 체 및 소비자 단 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 체 및 소비자 단 체 대표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 체 및 소비자 단 체 대표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 곡 수급에 대 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		추천하 는 사 람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 곡 수급에 대 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 곡 수급에 대 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 곡 수급에 대 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	3. 학계 등에서 양 곡 수급에 대 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 곡 수급에 대 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 곡 수급에 대 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사람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사람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사람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사람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사람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사람	4. 그 밖 에 농 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 정하는 사람	
⑥(생 략	=	⑥(생 략	⑥(생 략	⑥(생 략	⑥(생 략	⑥(생 략	⑥(생 략	- 종전 대안 과 동일

1)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은 수용하나, 구체적인 위원 구성 및 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심의사항 중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안 제16조제4항에 따른 쌀 의무매입에 대한 사항은 해당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하므로 수용이 곤란함.

(2) 행정안전부

개정안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보이는데, 이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설치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함.

따라서 이미 설치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5년 이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³²⁾

3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토의견

(1)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현황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미곡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³³⁾ 같은 조 제5항은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³⁴⁾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협의기구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로 정하고, 이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고시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① 생산자단체 대표, ②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③ 학계, 연구계 인원, ④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2명의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4년에는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법

33)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하 “생산자단체대표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4)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바 있음.

【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현황 】

연번	구분		내용				
1	위원회 구성일		- '20. 9. 4				
2	위원장		-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3	당연직 (5명)		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위원장)			
			②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③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④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장			
	위원 (17명)	위촉직 (12명)	- 생산자단체 대표(5명)	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②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③	쌀생산자협회 회장		
				④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⑤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회장		
			-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5명)	①	한국RPC협회 회장		
		②		전국알피씨연합회 회장			
		③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회장			
		④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학계, 연구계(2명)	①	서울대학교 교수			
			②	충남대학교 교수			
4	'24년 회의 개최 실적	- 본회의: 2회					
		연번	일시	방식	안건		
		1	'24.10.15	출석	“24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2	'24.11.15	출석	“24년산 수급 전망 및 쌀값 안정방안”		
		- 실무협의회: 1회					
		연번	일시	방식	안건		
		1	'24.11.4	출석	“24년 수확기 쌀 수급상황 점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3. 31.

(2) 검토의견

현재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대한 생산자단체와의 협의기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음.

개정안은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와 유사하되, 위원 구성이나 심의사항 등에서 일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양곡수급안정위원회와 개정안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비교 】

연번	구분		양곡수급안정위원회(현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개정안)
1	근거규정		「양곡관리법」 제16조제5항,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안 제16조의2/3/4
2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3	위원	당연직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2.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3.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4.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2.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3.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4.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센터)장
		위촉직	1. 생산자단체 대표 2.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3. 학계, 연구계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생산자단체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및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연구계 4.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고	일부는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가능	생산자단체 대표를 5명 이상 포함

연번	구분	양곡수급안정위원회(현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개정안)
4	논의(심의) 사항	1.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2.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미곡수급안정대책 시행 이후 수급 동향 4. 미곡 재배면적 조정 5. 미곡 매입·판매물량 조정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통> 1.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2. 미곡수급안정대책 수립 및 시행 3. 미곡 재배면적 조정 4. 양곡 매입·판매 물량·시기·가격 5. 그 밖에 이 법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대림의원안> - <u>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u>
			<여기구의원안> - <u>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비율</u>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6.

즉, 개정안은 이미 법률의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설치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근거하는 심의위원회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위원회 명칭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과 심의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현행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설치, 위원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산자단체와의 협의기구에 대하여 위임함에 따라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통하여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강화될 수 있어 보임.

다만,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됨에 따라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점검 대상³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어기구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는 물론 ‘의결’을 포함하여 규정함.

동 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동 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정책과정 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위원회의 의결이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의결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구속력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동 위원회의 의결이 법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둘째, 어기구의원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의 지급 비율” 등을 명시함.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어기구의원안 외의 다른 개정안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 규정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이는 동 위원회의 근거규정에서 심의사항으로 명시한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연계되어,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 규정에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섭되는 구조임.

즉,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품목 등을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단순히 이를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에서 심의사항으로 명시할지,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포섭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제도 파악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 보임.

셋째, 송옥주의원안을 제외한 개정안은 위원 구성에 있어 생산자단체의 대표를 5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한함.

이는 생산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³⁶⁾ 개정안이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하므로 위원 중 최소 1/3 이상이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될 것임.

36)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295.

그러므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거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윤준병의원안은 위촉직 위원의 자격으로 생산자단체의 대표와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외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함.

‘대표’라는 공식적인 직책 외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자격에 포함하는 경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모집단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성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도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일부를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보임.

추가적으로, 다섯 건의 개정안은 개정안마다 일부 자구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2항제3호에서 문대림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종전 대안과 같이 제16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제5항)³⁷⁾을 인용하고 있음.

다만, 해당 문언에서 ‘제4항’은 이미 앞선 ‘제16조’에 연결되어 ‘같은 조’임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구의원안·송옥주의원안과 같이 ‘제16조제3항 및 제4항(제5항)’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음.

37) 문대림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제4항의 내용을 제5항에서 규정함

둘째, 제4항의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윤준병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명칭을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와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으로 규정함.

이는 회사·조직의 정식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인데, ① 농협경제지주의 법률상 정식명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이고,³⁸⁾ ② 농업관측본부는 2021년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농업관측센터가 정식명칭이므로,³⁹⁾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8)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후단 생략)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21년에 농업관측본부를 농업관측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 농업관측센터가 정식 명칭임

나. 양곡수급계획 심의 의무화 등

개정안은 양곡수급계획에 대하여 ① 수립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②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 등 계획사항을 확대하며,

③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또는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 어기구 의원안 · 이원택의원안 · 박수현의원안 제3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3조(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 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비축 양곡과 수입 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3. 공공비축 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비축 양곡과 수입 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3. 공공비축 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신 설>				4. 생산자의 소득 보장 을 위해 필 요한 사항
<신 설>	4. 「농업·농 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14조 제2항제2호 에 따른 식 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 한 지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4. 「농업·농 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14조 제2항제2호 에 따른 양 곡의 적정 지급목표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4. 「농업·농 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14조 제2항제2호 에 따른 식 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 한 지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5. 「농업·농 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14조 제2항제2호 에 따른 식 량의 적정한 지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신 설>	5. 양곡의 선제 적 수급조절 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 림축산식품 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 림축산식품 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농 림축산식품 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농 림축산식품 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 림축산식품 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 품 부 장 관 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 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농림축산식 품 부 장 관 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 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 16조의3에 따 른 양곡수급관 리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 쳐 제1항에 따 라 양곡수급계 획을 세운 경 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농림축산식 품 부 장 관 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 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농림축산식 품 부 장 관 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 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u>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u> 하여야 하고 <u>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u>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u> 하고 <u>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u>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u> 하여야 하고 <u>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u>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u> 하여야 한다.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 고
제3조(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u>양곡수급관리위원회</u> 의 <u>심의를 거쳐</u> 매년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제3조(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매년 정부 관리 양곡</u> 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3조(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u>매년 정부 관리 양곡</u> 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윤준병의원안 : 조 번호 수정 - 여기구·박수현의원안 : 종전 대안과 달리, 개정 없음 - 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 윤준병의원안 : 종전 대안과 달리 제5호 신설 - 여기구의원안 : 종전 대안과 달리,

종 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3. 공공비축 양곡과 수 입양곡의 용도별 운 용 및 적 정 재고량 관리		3. 공공비축 양곡과 수 입양곡의 용도별 운 용 및 적 정 재고량 관리	3. 공공비축 양곡의 운 용에 관한 사항	3. 공공비축 양곡과 수 입양곡의 용도별 운 용 및 적 정 재고량 관리	3. 공공비축 양곡의 운 용에 관한 사항	① 제3호 개정 없음, ② 기준가 격에 관한 사항을 제4 호에 추가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달리, ① 제3호 개정 없음, ② 생산자 의 소득보 장에 필요 한 사항을 제 4 호 에 추가
<신 설>					4 생산자의 소득 보장 을 위해 필 요한 사항	
4 「농업· 농촌 및 식 품산업 기 본법」 제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목표 중 양곡에 관 한 사항		4 「농업· 농촌 및 식 품산업 기 본법」 제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목표 중 양곡에 관 한 사항	4 「농업· 농촌 및 식 품산업 기 본법」 제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양곡의 적 정 자급목 표 및 기 준가격에 관한 사항	4 「농업· 농촌 및 식 품산업 기 본법」 제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목표 중 양곡에 관 한 사항	5 「농업· 농촌 및 식 품산업 기 본법」 제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의 적 정한 자급 목표 중 양 곡에 관한 사항	
<신 설>		5 양곡의 선 제적 수급 조절과 재 배면적 관 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생 략)	5. (생 략)	5. (생 략)	6. (생 략)	
③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1 항에 따라	⇒	③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1항 에 따라 양	③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16 조의 3 에	③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1항 에 따라 양	③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1항 에 따라 양	- 윤준병· 이원택· 박수현 의원안 : 개정 없음

종 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 고
양곡수급계 획을 세운 경우 국무 회의의 심 의를 거친 후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확정 한다.		곡수급계획 을 세운 경 우 국무회 의의 심의 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 아 확정한 다.	<u>다른 양곡 수급 관리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제1항</u> 에 따라 양곡 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친 후 대통 령의 승인 을 받아 확 정한다.	곡수급계획 을 세운 경 우 국무회 의의 심의 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 아 확정한 다.	곡수급계획 을 세운 경 우 국무회 의의 심의 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 아 확정한 다.	- 어기구 의원안 : 양곡수급관 리위원회하 의심의를 제1 항에서 명시 하고, 의결 추가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3항 에 따라 확 정된 양곡 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하여 야 하고</u>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u>제출하 여야 한다.</u>	⇒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3항 에 따라 확 정된 양곡 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하여야 하고</u> ,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u>제출하여야 한다.</u>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3항 에 따라 확 정된 양곡 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하고</u> ,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u>보고하 여야 한다.</u>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3항 에 따라 확 정된 양곡 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하여야 하고</u>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u>제출하여야 한다.</u>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제3항 에 따라 확 정된 양곡 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하여 야 한다.</u>	- 윤준병·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어기구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달리, 제출을 보 고로 변경 - 박수현 의원안 : 개정 없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또는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은 수용함.

다만, 양곡수급계획의 대상을 “정부관리양곡”에서 “양곡”으로 개정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 유통 분야를 포함한 전체 양곡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제2항 각 호의 경우, ① 제3호는 국산과 수입산의 구분 없이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고, ② 제4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중복되며,⁴⁰⁾ ③ 제5호는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재배면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4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립 현황

현행법 제3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2025년 수급계획은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78호, 2024. 10. 23. 폐지제정)에 반영되어 있는데, 쌀·콩·밀에 대한 공급량, 수요량, 양곡연도말 재고량을 포함함.

【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

(단위: 천톤)

연번	구분	공급량	수요량	양곡연도말 재고량
1	쌀	2,071	989	1,082
		전년이월 1,212, '24년산 비축미 매입 450, 수입쌀(TRQ) 409	군관수용 32, 일반판매용 20, 가공용 480, 공공용 155, 원조용 110, 사료용 192	
2	콩	272	209	63
		전년이월 61, '24년산 매입 60, 수입 151		
3	밀	80	20	60
		전년이월 50, '25년산 매입 30		

자료: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2)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에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가 계획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안 제3조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별 비교 】

연번	현행/개정안	계획사항					계획 심의	
		기존사항 (정부양곡)	수입양곡 운 용	생 산 자 소득보장	양 곡 자급목표	선 제 적 수급조절	양곡수급관리 (안정)위원회	국무회의
1	현행법	○					-	심의
2	윤준병의원안	○	○		○	○	심의	심의
3	여기구의원안	○			○		심의·의결	심의
4	이원택의원안	○	○		○		심의	심의
5	박수현의원안	○		○	○		-	심의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31.

첫째, 윤준병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획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곡으로는 대표적으로 매년 5%의 양허관세 하에 수입하는 WTO TRQ 쌀 40만 8,700톤이 있는데, 이는 수입 후 정부관리양곡으로서 관리된 후 판매됨.

2024년에는 ① 2023년 TRQ 쌀 2,735톤, ② 2024년 TRQ 쌀 33만 7,819톤의 총 34만 554톤의 쌀이 밥쌀용, 가공용, 주정용 및 사료용 등 다양한 용도로 판매되었음.

【 2024년 TRQ 쌀 판매 현황 】

(단위: 원/kg, 톤)

연번	수입연도	미곡종류	용도	판매가격		판매물량
				가격종류	가격	
1	2023	장립종	밥쌀용	공매가격	2,174	2,735
2	2024	장립종	밥쌀용	공매가격	2,330	798
3		장립종	가공용	특별공급가격	521	14,377
4		중립종	가공용	특별공급가격	600	36,357
5		단립종	가공용	특별공급가격	582	212,882
6		장·중·단립종	주정용	특별공급가격	404	54,700
7		장·중·단립종	사료용	특별공급가격	349	18,705
합계						340,5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재고관리 등의 차원에서 가공용 TRQ 쌀을 특별공급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 수입쌀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⁴¹⁾

이에 개정안은 수급계획에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입양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수입양곡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양곡의 관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제관계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1) 농민신문, “수입 쌀, 원가 절반에 가공업체 공급…“국산 값 하락 부추길라”“, 2025. 4. 14., 2025. 6. 6.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411500764>

둘째, 네 건의 개정안 모두 양곡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을 계획사항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5년마다 식량의 자급목표를 정하도록 함.⁴²⁾

이에 따라 현재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로서 55.5%, 주요 양곡의 경우 쌀 98.0%, 보리 34.6%, 밀 8.0%, 콩 43.5%, 옥수수 8.2%, 서류 109.5% 등이 설정되어 있음.

【 기본계획 중 2027년 식량자급률(전체·양곡) 목표치 현황 】

(단위: %)

품목	자급률 실적			'27년 목표치
	'19년	'20년	'21년	
식량자급률(식용곡물)	49.3	49.3	44.4	55.5
쌀	92.1	92.9	84.6	98.0
보리	47.7	38.2	33.3	34.6
밀	0.7	0.8	1.1	8.0
콩	26.7	30.4	23.7	43.5
옥수수	3.5	3.6	4.2	8.2
서류	104.3	104.5	104.0	10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3, p. 15.

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절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양곡에 관한 식량자급률 목표에 관한 사항을 수급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수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달리 매년 수립되어야 하므로, 수립주기에 차이가 발생함.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하여 수급계획에 포함되는 자급목표는 일종의 1년 단위 목표로서 기능할 수 있어 보임.

셋째, 윤준병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안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과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을 수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윤준병의원안은 해당 사항을 안 제16조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에서도 포함하고 있어, 동일한 사항이 양쪽에서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보임.

【 윤준병의원안: 양곡수급계획 및 양곡수급안정대책 비교 】

연번	구분	양곡수급계획	양곡수급안정대책
1	근거조항	안 제3조	안 제16조
2	수립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수립절차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
4	수립주기	매년	미곡: 매년(수확기→10/15) 미곡 외 양곡: 자율수립

연번	구분	양곡수급계획	양곡수급안정대책
5	포함사항	1.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4.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 5.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 및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양곡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양곡 시장격리 또는 판매 계획 3. 양곡의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4. 재배면적 관리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19.

안 제3조에 따른 수급계획과 안 제16조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

다만, 동일한 사항을 수급계획과 수급안정대책 양쪽에서 정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미곡수급안정대책의 경우에는 수급계획과 마찬가지로 매년 수립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급안정대책에서만 포함하도록 하는 등 어느 한 쪽에서만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별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부가 상이함.

현행법에 따른 수급계획의 수립 절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 또한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박수현의원안의 경우 이를 신설하지 않음.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양곡 수급계획을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더라도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과는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어기구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치도록 하는데, 이는 어기구의원안이 동 위원회에 심의기능은 물론 의결기능까지 부여하기 때문이므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가격 등 심의 의무화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매입·판매가격 등의 결정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여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5조 및 제9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곡의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곡의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곡의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 고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양곡 매입 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윤준병의원안 : 조 번호 수정 - 여기구의원안 : 의결 추가 - 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② (생략)	=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 개정 없음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 고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 (생 략)	=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 (생 략)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 (생 략)	제9조(정부관리 양곡의 판매) ① (생 략)	- 개정 없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 리양곡의 판 매가격과 판 매시기는 제1 6조의3에 따 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정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 리양곡의 판 매가격과 판 매시기는 제 16조의2에 따른 양곡수 급 관 리 위 원 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 산 식 품 부 장 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 리양곡의 판 매가격과 판 매시기는 제1 6조의3에 따 른 양곡수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의·의 결을 거쳐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 리양곡의 판 매가격과 판 매시기는 제1 6조의3에 따 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정 한다.	- 윤준병 의원안 : 조 번호 수정 - 여기구 의원안 : 의결 추가 - 이원택 의원안 : 기존 대안 과 동일
③ (생 략)	=	③ (생 략)	③ (생 략)	③ (생 략)	- 개정 없음
④ (생 략)	=	④ (생 략)	④ (생 략)	④ (생 략)	- 개정 없음
⑤ (생 략)	=	⑤ (생 략)	⑤ (생 략)	⑤ (생 략)	- 개정 없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타 입법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참고할 수 있음.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추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수용이 곤란함.

나. 검토의견

1)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 및 판매가격

현행법은 정부관리양곡의 ①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②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및 ②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두 건의 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통하여 매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함.

2024년도 매입가격의 경우, ① 쌀은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등급과 친환경농산물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② 콩과 밀은 등급별로 정해진 고시 가격을 적용함.

【 2024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입가격 】

1. 쌀

연번	구분	매입가격
1	포대벼 (40kg)	○ 1등급 기준 매입가격: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 8,258원] × (40kg ÷ 80kg) × 도정수율 72%
2	산물벼 (40kg)	○ 1등급 기준 매입가격: 포대벼(40kg) 매입가격 - 포장비용(811원/40kg)
3	비고	○ 1등급 대비, 특등 103.3%, 2등 95.56%, 3등 85.06% 적용 ○ 친환경벼는 포대벼로만 매입하되, 등급별 5%p 추가 지급 (특등 108.3%, 1등 105.0%, 2등 100.56%, 3등 90.06%)

2. 콩

(단위: 원/kg)

연번	구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1	일반콩	대립종	4,800	4,560	4,330	3,870	3,180
		중립종	4,680	4,450	4,220	3,780	3,090
		소립종	4,120	3,850	3,650	3,270	2,680
2	콩나물콩	중립종	-	4,480	-	-	-
		소립종	5,000	4,660	-	-	-

3. 밀

(단위: 원/kg)

구분	유기	무농약	제빵용 1등급	제면용 1등급
매입가격	1,100	1,037.5	1,000	975

자료: 「2024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5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기관용·공공용(학교급식용) 등으로 판매하는 ① 2023년산 및 2024년산 국산쌀과 ② 가공용 수입쌀에 대하여 2025년 판매가격을 고시함.

【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

(단위: 원)

연번	구분	연산 또는 종류	포장단위	판매가격
1	국산쌀	2024년산	40kg	98,280
			20kg	49,740(종이포대) / 49,560(PP포대)
			10kg	25,160
		2023년산	40kg	88,450
			20kg	44,760(종이포대) / 44,600(PP포대)
			10kg	22,640
2	수입쌀 (가공용)	단립종	40kg	61,040
		중립종	40kg	67,280
		장립종	40kg	42,020

자료: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일부 재가공)

2) 검토의견

현재 정부관리 대상 양곡인 쌀·콩·밀은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량 중 ① 쌀 15.0%, ② 콩 32.1% 및 ③ 밀 47.8%가 정부관리양곡으로 매입되는 상황임.

【 2024년 정부관리 대상 양곡 생산량 및 정부 매입량 】

(단위: 톤)

연번	구분	쌀	콩	밀
1	생산량(A)	3,585천	154,954	37,376
2	정부매입량(B)	536천	49,770	17,882
3	B/A	15.0	32.1	47.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15.

이에 따라 국내 양곡 생산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은 양곡의 수급 및 시장가격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정함에 있어 생산자 등 정부 외부와의 협의 절차 등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등 정부 내부적 절차만을 규정함.

또한, 현행법은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만 규정할 뿐, 별도의 외부 협의 등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

그런데, 최근 TRQ 쌀 등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쌀 시장가격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⁴³⁾ 판매가격 등의 결정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 매입량, 판매가격 및 판매시기를 정함에 있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서 참여하므로,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 등을 정함에 있어 생산자 등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정 심의위원회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다른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기구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 이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의결기능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역시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43) 한국농어민신문, “정부양곡 ‘헐값 판매’...”양특회계 적자 키우고 쌀 시장 교란“, 2025. 5. 20. 2025. 6. 3. 확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862>

라. 공공비축양곡 물량의 심의 의무화 및 확대 등

개정안은 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 결정 시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②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며, ③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10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u>한다</u> .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u>하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u> .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u>판매가격은</u>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u>판매물량은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농림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u>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u>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u>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농림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신 설>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 윤준병·여기구의원안 : 개정 없음 - 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

중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보호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하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보호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보호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보호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하며, 공공비축양곡의 비축 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과 동일
② (생략)	=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 개정 없음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은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 윤준병의원안 : 조 번호 수정 - 여기구의원안 : 의결 추가 - 이원택의원안 : 중전 대안과 동일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 예산법」 제3조제3호에	=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 예산법」 제3조제3호에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밀, 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 예산법」 제3조제3호에	- 윤준병·이원택의원안 : 중전 대안과 동일 - 여기구의원안 : 제4항 미신설

중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u>다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u>		<u>다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u>		<u>다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u>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윤준병·이원택의원안 : 중전 대안과 동일 - 여기구의원안 : 제4항 유지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공공비축양곡의 매입물량은 FAO 권고,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매입물량과 판매물량은 수요처의 수요 및 정부관리 양곡의 재고 수준 등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함.

한편, 개정안 중 밀·콩의 양특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콩 비축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안기금에서 양특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양특회계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나. 검토의견

1) 공공비축양곡 매입·판매물량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의무화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공공비축양곡 매입·판매물량을 정함에 있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재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정부관리양곡 중 시장격리곡의 물량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로 개칭하면서, 시장격리곡의 매입·판매물량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함.

개정안은 안 제10조제2항을 통하여 또 다른 정부관리양곡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물량에 대하여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인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에 따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TRQ 쌀 40만 8,700톤 외의 정부관리양곡에 대하여 매입·판매물량을 심의하게 되는바, 정부관리양곡 물량에 대한 일원화된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보임.

2) 공공비축양곡 매입비용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윤준병의원안 및 이원택의원안 제10조제4항은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재원을 양특회계에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미곡의 공공비축은 양특회계의 “정부양곡매입비(2131-360)” 사업으로 이루어지나, 밀·콩은 농안기금의 “비축지원(3031-323)” 사업으로 공공비축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산물 비축사업은 크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근거를 둠. 「양곡관리법」은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밀·콩)을, 「농안법」은 쌀(미곡)과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을 각각 비축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함.

이에 따라, 밀·콩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특회계로 비축할 수도, 「농안법」에 따라 농안기금으로 비축할 수도 있는 상황임.

【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상 비축제도 비교 】

연번	구분	「양곡관리법」상 공공비축	「농안법」상 수매비축
1	대상	공공비축양곡(미곡, 밀, 콩)	미곡, 보리를 제외한 농산물
2	목적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농산물의 수급조절 과 가격안정
3	재원	명시적 규정 없음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수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작성, 2025. 5. 16.

그런데, 「양곡관리법」상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로서 자급과 관련되는 반면, 「농안법」상 비축사업의 목적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이라는 차이가 있음.⁴⁴⁾⁴⁵⁾

밀·콩은 양곡으로서 국민식량의 자급률 측면에서 비축되는 측면이 강조됨에도, 현재 「농안법」 상 농안기금으로 비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부족 문제로 수매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 예산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예산 운용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⁶⁾

이에 개정안은 밀·콩 등을 공공비축양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현행과 같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원을 양특회계로 변경함에 따라, 농안기금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나타난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밀산업 육성법」 제16조에서는 밀의 비축에 대하여 「농안법」 상의 비축제도를 인용하는데,⁴⁷⁾ 개정안에 따라 밀의 비축이

44) 「양곡관리법」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4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46) 농민신문, “콩 생산 증가 감당하려면...“비축예산, 양특회계로 편입해야”“, 2025. 5. 12., 2025. 5. 13.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509500776>

47) 「밀산업 육성법」

제16조(비축사업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공급,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

농안기금이 아닌 양특회계 사업이 되므로, 「양곡관리법」상의 비축제도를 인용하도록 별도의 「밀산업 육성법」 개정이 필요할 것임.

3) 국제기준보다 확대된 공공비축양곡 물량 비축

이원택의원안은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양곡비축에 관한 국제기준은 유엔세계식량기구(UNFAO)의 기준이 있음.

【 양곡비축 관련 국제기준 】

○ 유엔세계식량기구(UNFAO)는 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을 비축할 것을 권고함

2.2 Assessment of the approach adopted in the past

29. The 17-18 percent minimum safe stock-to-utilisation ratio for cereals currently used by FAO was derived by summing an estimate for working stocks of approximately 12.5 percent and estimates for reserve stocks ranging from 5 to 5.5 percent, the range of estimates in the latter case representing different statistical procedures used in its calculation.

* 공공비축 물량 산정 기준 관련 FAO, Approaches to World Food Security(1983)에서 최초 언급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 인용 중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23.

FAO는 연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① 쌀 39만 2천톤, ② 밀 1만 9천톤, ③ 콩 3만 3천톤 가량을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으로 매입하였음.

을 비축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공공비축양곡 매입 현황 】

(단위: 톤)

연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쌀	322천 (332천)	341천 (799천)	440천 (774천)	392천 (602천)	440천 (536천)
2	밀	853	8,401	16,561	18,892	17,882
3	콩	557	2,249	18,697	32,524	49,770

주1: 쌀의 경우 생산량 및 매입량 수준이 큼에 따라 천톤 단위로 집계되고 있음

주2: 괄호 안은 시장격리곡, APTERR 매입곡 등을 포함한 전체 국내산 쌀 정부매입량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p. 81~82.

해당 기준의 만족 여부를 살펴보려면 양곡소비량에 관한 통계가 필요하는데, 연간 양곡소비량 공식 통계는 통계청이 조사하는 ①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과 ② 사업체부문 쌀 연간소비량 뿐임.

즉, 전체 인구에 관한 통계가 없어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다만, 단순 비교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를 곱한 수치를 활용할 수는 있어 보임.

2023년 기준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① 쌀 56.4kg, ② 밀 38.3kg 및 ③ 콩 6.9kg인데, 우리나라의 2023년 인구가 51,712,619명⁴⁸⁾이므로 단순추정 시 ① 쌀 291만 7천톤, ② 밀 198만 1천톤 및 ③ 콩 35만 7천톤이 가구부문 연간 소비량에 해당함.

4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 2023년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기반 단순추정 】

연번	구분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통계치	⇒	연간 양곡소비량 (단순추정치)
1	쌀	56.4kg	⇒	2,916,592톤
2	밀	38.3kg	⇒	1,980,593톤
3	콩	6.9kg	⇒	356,817톤

주: 연간 양곡소비량은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통계치에 인구를 단순 곱하여 나타낸 추정수치임
(2023년 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1,712,619명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 36. 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8.

단순추정치와 비교한다면,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공공 비축량은 가구부문 소비량 대비 ① 쌀 13.4%, ② 밀 0.9% 및 ③ 콩 14.0% 수준임.

개정안은 국제기준(17~18%)보다 비축물량을 확대하자는 것이므로, 쌀·밀·콩 모두 비축물량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쌀의 경우, 시장격리곡과 APTERR 매입곡⁴⁹⁾을 포함한 전체 정부 매입량은 2023년 기준 60만 2천톤으로서, 가구부문 소비량 대비 20.6%이므로 시장격리곡 물량을 공공비축미로서 매입한다면 국제기준 하에서 별도의 추가 매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밀·콩은 쌀과 달리 자급률이 높지 않아 비축이 어려울 수 있고, 국제기준에 비하여 비축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되므로, 국제기준보다 비축물량을 확대하도록 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9) ASEAN+3 비상 쌀 비축제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미곡을 비축함(2023·2024년 모두 1만톤)

9.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의 구체화 등

가. 인용 법률 현행화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의2에서 인용하는 법률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제명(「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② 인용하는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3제1항 및 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2).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 <u>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u> 」 제8조에 따라 <u>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u> 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11조에 따른 <u>면적직접지불금</u> 지급대상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급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 <u>재배면적 조정대상자</u> ”라 한다)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 <u>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15조에 따른 <u>기본직접지불금</u> 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⑦ (생략)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의3(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급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재배면적 조정대상자”라 한다)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윤준병의원안 : ① 조 번호 및 조 제목 변경 ②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15조 대신 제11조 인용 - 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신 설>	⇒	② ~ ⑦ (생략)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인용 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함. 다만, 면적직접직불금과 소농직접직불금⁵⁰⁾을 구분하여 재배면적 조정 대상자를 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원택의원안과 같이 대상자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수용함.

2) 검토의견

(1) 공익직불제 및 미곡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 개요

현재 농업인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직불금 제도가 운영 중임.

현행 직불금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법률 개정(2020년 5월 1일 시행)을 통하여 마련된 제도로, 직불금을 기본형공익직불금과 선택형공익직불금(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등)의 두 가지로 분류함.

이 중 기본형공익직불금의 경우 농업인 등이 경작면적,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에 따라 ① 소규모농가(소농)직불금, ② 면적직불금의 두가지 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게 됨.

50) 이하에서 “직접지불금”은 모두 “직불금”으로 약칭하도록 함

【 현행 공익직불제 개요 】

개편 전		개편 후		개편 후 직불금 내용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기본 직불 제	소농 직불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2025년 기준)
쌀소득보전직불제 : 고정, 변동			면적 직불금 (역진적 단가)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밭농업 직불제 : 고정, 논이모작		선택 직불 제	경관보전 직불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라 추가 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 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 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친환경축산 직불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 비 차이 보전
	전략작물 직불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 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2024. 8. 4. (일부 재가공)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상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 】

연번	준수사항	세부 연번	세부 준수사항	일반농지	휴경농지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1-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
		1-②	농작물을 재배할 것, 또는 휴경시 연간 1회 이상 경운·잡목제거·피복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휴경지를 관리할 것	○	○
		1-③	이웃한 농지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관리할 것	○	○
		1-④	논농업 이용 농지등의 주변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
2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2-①	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	
		2-②	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 준수	○	

연번	준수사항	세부연번	세부 준수사항	일반농지	휴경농지
3	관련 교육 이수	3-①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들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공익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들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이수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①	농업경영정보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등록을 할 것	○	○
		4-②	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	○
		4-③	대상 농지등에 관한 영농기록을 기준에 맞게 작성·보관할 것	○	
		4-④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	
		4-⑤	출하제한·농산물 폐기·용도전환·출하 연기 등의 처리 조치를 준수할 것	○	
		4-⑥	비료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상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	○
		4-⑦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상 배출 등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	○	○
		4-⑧	농업용도 하천수 사용·관리 시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 일시사용신고, 준수사항 등을 준수할 것	○	○
		4-⑨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하여 허가·신고, 지하수보전구역 내 행위제한, 원상복구, 수질검사 등을 준수할 것	○	○
		4-⑩	퇴비·액비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퇴비액비화기준 및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액비 사용, 액비살포지 외 장소 살포 금지 및 살포기준 등을 준수할 것	○	○
		4-⑪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	○
		4-⑫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시 「식물방역법」에 따라 신고할 것	○	○

자료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8.

한편,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시한 농산물에 대하여,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경우 미곡에 대하여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직불금을 신청·등록한 자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⁵¹⁾⁵²⁾

5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양곡관리법」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

【 「양곡관리법」 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상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 】

연번	구분	「양곡관리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1	전제조건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2	대상자	① 미곡을 재배하고 ②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	기본직불금 신청·등록 농업인
3	대상작물	미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배작물
4	필수절차	(법률)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대통령령)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자료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8.

이와 같은 준수사항 또는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본직불금 등록자의 경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에 따라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8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⁵³⁾

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주)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2019년에 전부개정되기 전의 제명에 해당함

5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배면적 조정의무 규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기본직불금을 신청·등록한 개별농가에게 미곡 등의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농가에게 패널티를 적용한 바는 없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년~’29년)”을 발표하며 ① 8만ha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수립하여 시·도별로 배분하고, ② 감축을 이행한 농가를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지원을 우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中 벼 재배면적 감축 과제 】

과제 1 벼 재배면적 감축

- ❶ (면적 조정)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 첫 시행(’25)
 - (목표) 8만ha를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으로 지자체별 배분
 - (대상) 벼 재배면적 전체(’24년 기준 698천ha)
 - (방식) 농가별 타작물, 친환경 전환 등으로 면적 감축 이행
 -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지원 우대
 - * 초과 감축한 농가는 기본직불금 인센티브 부여 검토(직불법 개정)

<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 일정(안) >

- ① (감축계획 수립) 각 시도는 조정면적을 기초로 자체 감축계획 수립(’24.12월)
- ② (사전통지) 농가별 조정면적(안)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25.1월)
 - * 농업경영체 정보 현행화 및 농관원 검증 병행 추진
- ③ (조정 통지) 농가별 재배면적 조정 면적 통지서 발송(’25.2월)
 - * 농가별 타작물 전환 등 이행 계획서 제출
- ④ (이행점검) 시·도별 자체계획에 따라 감축 실적 관리(’25.4~10월)
 - *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 2024.

(2) 미곡 재배면적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기준 69만 7,713ha에서 358만 4,604톤의 미곡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논벼에 해당함.

최근 10년간 미곡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10년간 미곡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

(단위: ha, 톤)

연번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합계	논벼	밭벼	합계	논벼	밭벼
1	2015년	799,344	797,957	1,387	4,326,915	4,323,078	3,837
2	2016년	778,734	777,872	862	4,196,691	4,194,618	2,073
3	2017년	754,713	754,339	374	3,972,468	3,971,609	860
4	2018년	737,673	737,408	265	3,868,045	3,867,415	630
5	2019년	729,814	729,585	229	3,744,450	3,743,868	582
6	2020년	726,432	726,180	253	3,506,578	3,505,984	595
7	2021년	732,477	732,070	407	3,881,601	3,880,312	1,289
8	2022년	727,054	726,654	400	3,763,700	3,762,610	1,090
9	2023년	708,012	707,872	140	3,702,239	3,701,913	326
10	2024년	697,713	697,684	29	3,584,604	3,584,543	6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p. 65.

(3) 검토의견

현행법 제16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를 대상으로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19년 12월 31일 전부개정(2020년 5월 1일 시행)을 통하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그 제명이 변경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여 인용 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농업소득보전직불금⁵⁴⁾의 지급대상자를 인용하는데, 위의 전부개정 과정에서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제도 역시 공익직불제도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인용 대상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원택 의원안은 종전 대안과 동일한 ‘기본직불금’을 인용하지만, 윤준병의원안은 종전 대안과 달리 ‘면적직불금’을 인용하여 차이가 있음.

현재 기본직불금은 세부적으로 대상자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두 가지 직불금 중 하나를 받도록 하므로, 그 차이는 대상자의 기준을 기본직불금 전체로 정할지, 기본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을 제외한 면적직불금으로 한정할지 여부로 보임.

54) 이하에서 ‘직접지불’은 모두 ‘직불’로 약칭하도록 함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를 규정하는 또 다른 규정인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3조⁵⁵⁾의 경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를 이원택의원안 및 종전 대안과 마찬가지로 ‘기본직불금 등록 농업인’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윤준병의원안을 수용하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1조를 인용하는 경우,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윤준병의원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급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재배면적 조정대상자”라 한다)로 등록하는 자”라는 문언으로 규정함.

이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 중 지급대상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급대상자를 재배면적 조정대상자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구 검토가 필요함.

첫째, 면적직불금 자체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1조에 근거하지만, 면적직불금을 포함한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근거함.

5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상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대상재배작물 선정, 부과 절차 및 방법, 통보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윤준병의원안의 문언만으로는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가 「농업
농촌공익직불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하는 자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윤준병의원안은 “지급대상자”의 뒤에서 “재배면적 조정대상
자”를 약칭하고 있는데,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단순히 지급대상
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함.

제도의 취지가 직불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
여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지급대상자”가 아니라 “등록하는 자” 뒤
에서 재배면적 조정대상자를 약칭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를 종합하면, 윤준병의원안의 해당 문언 대신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배면적 조정
대상자”라 한다)” 등과 같이 할 수 있어 보임.

나. 미국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의 구체화

개정안은 미국 재배면적 조정 제도에 대하여, 재배면적 조정에 대한 지원 및 시정조치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국 재배면적 관리) (본문 생략)	제16조의3(미국의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① (생략)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게 미국의 재배면적을 감축 또는 조정하게 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의 미국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국의 재배면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국 재배면적 조정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역별 미국 생산량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감축 또는 조정 면적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배정된 재배면적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조정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시·도지사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 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실적이 부진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조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정 요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정계획 및 조정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2(가격인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본문 생략)	⇒	제16조의3(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① (생 략)
<신 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게 미곡의 재배면적을 감축 또는 조정하게 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재배면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조정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 게 지역별 미곡 생산량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감축 또는 조정 면적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배정된 재배면적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조정실 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시·도지사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 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정실적이 부진한 시·도지사 에게 그 사유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조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게 시정 요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정계획 및 조정실 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평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미곡 재배면적 조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수용함.

다만, 제2항에서 수급조절 의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재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제3항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상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조치와 중복되어 수용이 곤란함.

2)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4년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면서, 쌀 재배면적을 8만ha 감축하고, 이에 동참하는 농가에게 공비축미 배정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정책의 효과성,⁵⁶⁾⁵⁷⁾ 정책대상인 농가의 수용가능성 및 자율성⁵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의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바 있음.

56) 농민신문, ““벼 재배면적 조정, ‘대체작목 안정재배 보장·정책 지속성’ 갖춰야 제도 빛 본다””, 2025. 3. 28., 2025. 6. 8.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326500734>

57) 농민신문, ““벼 재배면적 조정, 정책 효과 물음표…쌀 자급률 역풍 불러””, 2025. 3. 7., 2025. 6. 8.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305500792>

58) 농민신문, ““벼 면적 줄여야 경영안정자금 지급?”…농가 ‘반발’”, 2025. 3. 26., 2025. 6. 8. 확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324500726>

【 2025년 3월 6일 제423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주요발언 】

연번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 관련 주요 발언
1	○송옥주 위원 또 한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릴 텐데 32페이지에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직불금에서 감액을 하지는 않고 유예된 상태 이긴 하지만 <u>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재배면적 조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의 애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u> 농어촌공사에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재배면적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 27쪽)
2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차관님께도 얘기하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요. 이것을 <u>개별 농가 단위로 일정한 비율만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u>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u>다른 농사를 짓도록 농가를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u> 그를 위해서는 기반 작업들을 농림부가 해 주어야 되고 동시에 농사를 지어 다른 작물을 재배를 했다고 하면 그것에 따르는 수익이 쌀농사를 지었을 때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재배 감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회의록 34쪽)
3	○전종덕 위원 임호선 위원님께서 쌀 재배면적 관련해서 어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더 잘 알고요. 지금 계속 주장하지만 이렇게 <u>강압적으로 식량자급률에 대한 대책 없는 재배면적 감축 안 된다</u> , 저는 철회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44쪽)
4	○문금주 위원 전체적으로 8만ha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도 잘못됐고 순서도 잘못돼 있고 제대로 된 <u>효과 분석 안 하고 단순하게 가장 쉬운 방법,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보다는 가장 쉬운, 단순하게 재배면적 감축하면 생산량이 줄 것 아니냐, 쌀값 올라갈 것 아니냐. 너무나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접근한 것 아니냐, 농림부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u> (회의록 48쪽)
5	○이원택 위원 사실. 그래서 <u>페널티를 주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u>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직불금을, 예를 든다면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직불금을 좀 감액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u>직불금 취지는 사실 이렇게 페널티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u> 공익형 직불금의 취지는 농민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회의록 55쪽)

자료: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8.

이에 개정안은 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② 재배면적 조정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특히 안 제16조의3제2항에서 재배면적 조정 전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재배면적 조정과정에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현재 제도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를 폐지하려는 취지에서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3)”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6)”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추가적으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자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가 「양곡관리법」은 물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 체계간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현재 재배면적 조정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감액지급 등의 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⁵⁹⁾

안 제16조의3제3항에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① 감액지급 등의 제재 대신 시정명령을 하려는 것인지, ② 제재와 함께 시정명령도 하려는 것인지를 「농업농촌공익직불법」과 연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6조의3제2항 후단의 취지는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원의 정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의 문언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 이후의 소득과 지원액을 합친 금액’이 아니라, 단순히 ‘지원액’이 조정 이전 예상소득보다 높아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임.

따라서, 후단을 “이 경우 지원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의 소득이 재배면적 조정 이전의 미곡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16조의3제2항에서는 “감축 또는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취지는 현재 재배면적 조정제도가 8만ha 감축을 목표로

5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대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하고 있어, 감축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감축은 조정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고, 현행법 제1항에서도 조정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므로, 조정과는 별도로 감축을 명시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16조의3제7항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의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어 보임.

10.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벼 및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②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문대림의원안·여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4 신설, 송옥주의원안 제16조의6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제16조의6(논타작물 재배 지원)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공급 과잉 문제를 해 소하고 식 량자급률을 제 고 하 기 위 하 여 「농업·농 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1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 목 표 와 연 계 하 여 벼 및 논에 서 재배되 는 벼 이외 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주 요 작물(이하 “논타작 물”이라 한 다)의 재배 면적에 대 하여 연도 별 관리목 표를 정하 고 이를 이 행 하 여 야	공급 과잉 문제를 해 소하고 식 량자급률을 제 고 하 기 위 하 여 「농업·농 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1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 목 표 와 연 계 하 여 벼 및 논에 서 재배되 는 벼 이외 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주 요 작물(이하 “논타작 물”이라 한 다)의 재배 면적을 연 도별로 관 리하고, 논 타 작 물 의 재배를 지 원하기 위	· 의 결 을 거쳐 「농 업·농 촌 및 식품산 업 기본 법」 제1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 목 표 와 연 계 하 여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지원을 위한 계획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를 거쳐 「농업·농 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1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 목 표 와 연 계 하 여 논에서 재 배하는 벼 이외의 작 물(이하 “논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 배 지 원 을 위한 계획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공급 과잉 문제를 해 소하고 식 량자급률을 제 고 하 기 위 하 여 「농업·농 촌 및 식품 산업 기본 법」 제14 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식량 및 주 요 식품의 적정한 자 급 목 표 와 연 계 하 여 벼 및 논에 서 재배되 는 벼 이외 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는 주 요 작물(이하 “논타작 물”이라 한 다)의 재배 면적을 연 도별로 관 리하고, 논 타 작 물 의 재배를 지 원하기 위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u>하며,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u>	<u>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u>	<u>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u>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 타 작 물 재 배 지 원 시행계획과 목표 달성 여부 및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 위 원 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 배 하 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 타 작 물 재 배 지 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 위 원 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 배 하 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 작 물 을 재 배 하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 작 물 을 재 배 하 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 타 작 물 재 배 지 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 위 원 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 배 하 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④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미국의 수 급 안 정 및 타작물 의 자급률 을 제고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면적에 서 벼를 재 배하는 농 업 인 등 에 대하여 타 작물의 재 배나 휴경 등의 의무 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 령 령 으 로 정한다.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논타 작물의 자 급률을 제 고하기 위 하여 대통 령 령 으 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면 적 에 서 벼를 재배 하는 농업 인 등에 대 하여 논타 작물의 재 배나 휴경 등의 의무 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의무 부여의 요 건 · 절 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 고
제16조의4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 작물 재 배 지원 등)	⇒	제16조의4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 작물 재 배 지원 등)	제16조의4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 작물 재 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미 곡의 수 급안정을 위 하여 미곡 재 배 면 적 감축 목 표 및 계 획을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쳐 수 립하여야 한다.	제16조의4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 물 재배 지원 등)	제16조의6 (논타작 물 재배 지원)	제16조의4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 작물 재 배 지원 등)	- 윤준병 · 이원택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 문대림 의원안 : 미곡 재배 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 의무 신설 - 어기구 의원안 : 논타작물 대신 타작물 로 용어 변경 - 송옥주 의원안 : 조 번호 및 조 제목 변경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구조 적 공급 과잉 문제 를 해소하 고 식량자 급률을 제 고하기 위 하여 「농 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 법」 제4 조제2항제 2호에 따 른 식량	⇒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구조 적 공급 과잉 문제 를 해소하 고 식량자 급률을 제 고하기 위 하여 「농 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 법」 제4 조제2항제 2호에 따 른 식량	②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구조 적 공급 과잉 문제 를 해소하 고 식량자 급률을 제 고하기 위 하여 「농 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 법」 제4 조제2항제 2호에 따 른 식량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위 원회의 심 의·의결 을 거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 정한 지급 목표와 연 계하여 비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위 원회의 심 의를 거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 정한 지급 목표와 연 계하여 논 에서 재배	①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구조 적 공급 과잉 문제 를 해소하 고 식량자 급률을 제 고하기 위 하여 「농 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 법」 제4 조제2항제 2호에 따 른 식량	- 윤준병 의원안 : 재배면적의 연도별 관 리목표 설 정 및 이행 의무 신설 - 문대림 의원안 : 항 번호 수정 - 어기구 의원안 : 목적 삭제, 의결 추가, 벼에 대한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 고
<u>및 주요</u> <u>식품의 적</u> <u>정한 지급</u> <u>목표와 연</u> <u>계하여 베풀</u> <u>및 논에서</u> <u>재배되는</u> <u>벼 이외의</u> <u>작물 중</u> <u>농림축산</u> <u>식품부장</u> <u>관이 정하</u> <u>는 주요</u> <u>작물(이하</u> <u>“논타작</u> <u>물”이라</u> <u>한다)의</u> <u>재배면적</u> <u>을 연도별</u> <u>로 관리하</u> <u>고 논타</u> <u>작물의 재</u> <u>배를 지원</u> <u>하기 위한</u> <u>시행계획</u> <u>을 위원회</u> <u>의 심의를</u> <u>거쳐 수립</u> <u>· 시행하</u> <u>여야 한다.</u>		<u>및 주요</u> <u>식품의 적</u> <u>정한 지급</u> <u>목표와 연</u> <u>계하여 베풀</u> <u>및 논에서</u> <u>재배되는</u> <u>벼 이외의</u> <u>작물 중</u> <u>농림축산</u> <u>식품부장</u> <u>관이 정하</u> <u>는 주요</u> <u>작물(이하</u> <u>“논타작</u> <u>물”이라</u> <u>한다)의</u> <u>재배면적</u> <u>에 대해</u> <u>연도</u> <u>별 관리</u> <u>목 표 를</u> <u>정 하 고</u> <u>이를 이</u> <u>행하여야</u> <u>하며, 논</u> <u>타작물의</u> <u>재배를 지</u> <u>원하기 위</u> <u>한 시행계</u> <u>획을 위원</u> <u>회의 심의</u> <u>를 거쳐</u> <u>수립·시</u> <u>행하여야</u> <u>한다.</u>	<u>및 주요</u> <u>식품의 적</u> <u>정한 지급</u> <u>목표와 연</u> <u>계하여 베풀</u> <u>및 논에서</u> <u>재배되는</u> <u>벼 이외의</u> <u>작물 중</u> <u>농림축산</u> <u>식품부장</u> <u>관이 정하</u> <u>는 주요</u> <u>작물(이하</u> <u>“논타작</u> <u>물”이라</u> <u>한다)의</u> <u>재배면적</u> <u>을 연도별</u> <u>로 관리하</u> <u>고 논타</u> <u>작물의 재</u> <u>배를 지원</u> <u>하기 위한</u> <u>시행계획</u> <u>을 위원회</u> <u>의 심의를</u> <u>거쳐 수립</u> <u>· 시행하</u> <u>여야 한다.</u>	<u>이외의 작</u> <u>물(이하</u> <u>“타작물”</u> <u>이라 한</u> <u>다)의 재</u> <u>배지원을</u> <u>위한 계획</u> <u>을 수립·</u> <u>시행하여</u> <u>야 한다.</u>	<u>하는 벼</u> <u>이외의 작</u> <u>물(이하</u> <u>“논타작</u> <u>물”이라</u> <u>한다)의</u> <u>재배지원</u> <u>을 위한</u> <u>계획을 수</u> <u>립·시행</u> <u>하여야 한</u> <u>다.</u>	<u>및 주요</u> <u>식품의 적</u> <u>정한 지급</u> <u>목표와 연</u> <u>계하여 베풀</u> <u>및 논에서</u> <u>재배되는</u> <u>벼 이외의</u> <u>작물 중</u> <u>농림축산</u> <u>식품부장</u> <u>관이 정하</u> <u>는 주요</u> <u>작물(이하</u> <u>“논타작</u> <u>물”이라</u> <u>한다)의</u> <u>재배면적</u> <u>을 연도별</u> <u>로 관리하</u> <u>고 논타</u> <u>작물의 재</u> <u>배를 지원</u> <u>하기 위한</u> <u>시행계획</u> <u>을 위원회</u> <u>의 심의를</u> <u>거쳐 수립</u> <u>· 시행하</u> <u>여야 한다.</u>	재 배 면 적 관 리 삭 제 - 송옥주 의원안 : 목적 삭제, 벼에 대한 재 배 면 적 관 리 삭 제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논타작물 의 재배 지 원 을	≡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논타작물 의 재배 지 원 을	③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논타작물 의 재배 지 원 을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논타작물 의 재배 지 원 을	- 윤준병·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 고
위해 생 산 단 지 조성, 시 설 장 비 지원 판 로 지원 등의 시 책을 추 진할 수 있다.		위해 생 산 단 지 조성, 시 설 장 비 지원 판 로 지원 등의 시 책을 추 진할 수 있다.	위해 생 산 단 지 조성, 시 설 장 비 지원 판 로 지원 등의 시 책을 추 진할 수 있다.			위해 생 산 단 지 조성, 시 설 장 비 지원 판 로 지원 등의 시 책을 추 진할 수 있다.	- 문대림 의원안 : 항 번호 수정 - 어기구 · 송옥주 의원안 : 제3항에서만 지원규정
③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 타 작 물 재배지원 계 획 의 추진실적 을 평가 하여 그 결 과 를 다음 연 도 계 획 에 반영 하 여 야 한다. 이 경우 논 타 작 물 재배지원 계 획 과 그 추진 실 적 을 매년 국 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 타 작 물 재배지원 시행계획 의 추진 실 적 을 평가하여 그 결 과 를 다음 연도 목 표 설정 및 시행 계 획 에 반영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 과 목표 달성 여 부 및 그 추진실적 을 매년 국회 소 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④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 타 작 물 재배지원 계 획 의 추진실적 을 평가 하여 그 결 과 를 다음 연 도 계 획 에 반영 하 여 야 한다. 이 경우 논 타 작 물 재배지원 계 획 과 그 추진 실 적 을 매년 국 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 작 물 재 배 지 원 계 획 의 추진실적 을 평가 하여 그 결 과 를 다음 연 도 계 획 에 반영 하 여 야 한다.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 타 작 물 재배지원 계 획 의 추진실적 을 평가 하여 그 결 과 를 다음 연 도 계 획 에 반영 하 여 야 한다.	③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 타 작 물 재배지원 계 획 의 추진실적 을 평가 하여 그 결 과 를 다음 연 도 계 획 에 반영 하 여 야 한다. 이 경우 논 타 작 물 재배지원 계 획 과 그 추진 실 적 을 매년 국 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윤준병 의원안 : 자구 정리 및 제1항의 목표 설정 연계 - 문대림 · 이원택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 어기구 의원안 : 용어(타작물) 변경 및 단서 삭제 - 송옥주 의원안 : 단서 삭제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 고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은 제3항 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은 제2항 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은 제3항 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미 곡의 수급 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 에 타작물 을 재배하 는 농업인 등에 대하 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논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 에 타작물 을 재배하 는 농업인 등에 대하 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은 제2항 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윤준병 · 이원택 의원안 : 중전 대안 과 동일 - 문대림 의원안 : 항 번호 수정 - 어기구 의원안 : 목적 추가 - 송옥주 의원안 : 목적 추가
<신 설>	⇒			④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미곡 의 수급안 정 및 타작 물의 자급 률을 제고 하기 위하 여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면 적에서 벼 를 재배하 는 농업인 등에 대하 여 타작물 의 재배나 휴경 등의 의무를 부 여할 수 있 다	④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논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면적에 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에 대하여 논타작물 의 재배나 휴경 등의 의무를 부 여할 수 있다		- 어기구 · 송옥주 의원안 : 논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의무 부여 근거 마련
<신 설>	⇒			⑤ 제3항 에 따른	⑤ 제3항 에 따른		- 어기구 · 송옥주 의원안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 고
				지 원 의 요건 및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의무 부여 의 요건· 절차 등 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위임 근거 마련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시책의 추진, 재배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사항은 수용함.

다만,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를 의결 기구로 전제하는 사항으로서 수용이 곤란하고, 논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와의 중복 우려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2) 행정안전부

개정안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양곡의 수급 관리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로서 국가사무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⁶⁰⁾ 지원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검토의견

1)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에 대하여 과거 세 차례의 지원사업을 운영한 바 있음.

【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역사 】

연번	구분	쌀 생산조정제	논소득기반다양화	논타작물재배지원
1	목적	-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 도모 - '04년 WTO 쌀 재협상 대비 입지 강화	- 쌀 수급안정 - 식량자급률 향상	- 쌀 수급안정 - 식량자급률 향상
2	지원단가	- 300만원/ha	- 300만원/ha	- '18~'19: 평균 340만원/ha - '20: 평균 326만원/ha
3	대상작물	-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의 재배 중단 (휴경 포함)	- 타작물 재배 (휴경 미포함)	- 타작물 재배 ('18: 휴경 미포함 '19~'20: 휴경 포함)
4	사업기간	- '03~'05년 (3년간 한시 운영)	- '11~'13년 (3년간 한시 운영)	- '18~'20년 (3년간 한시 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60)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사업예산은 확정예산 기준으로 2018년 1368억 2,900만원, 2019년 1504억 7,900만원, 2020년 549억 9,200만원이었음.

【 논타작물 재배지원(2110-310) 사업 예산('18~'20) 】

(단위: 백만원, %)

연번	회계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1	2018	136,829	△80,80	136,829	67,880 [66,079]	49.6 [48.3]	-	68,949
2	2019	150,479	△59,700	90,779	83,682 [81,650]	55.6 [54.3]	-	7,097
3	2020	54,992	-	54,992	54,989 [52,398]	100.0 [95.3]	-	3

주: 집행률 = 집행액 / 예산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021, p. 920.

해당 제도는 별도 작물의 제한 없이 벼 대체를 위한 하계 논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헥타르(ha) 당 지원단가는 2018년과 2019년에는 평균 340만원, 2020년에는 평균 326만원임.

한편,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사업으로서 논에서 전락작물인 콩·가루쌀·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락작물직불제” 사업이 운영됨.

전락작물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선택형공익직불제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불제’로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함.⁶¹⁾

【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비교 】

연번	구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전략작물직불제
1	목적	- 벼 재배면적 축소를 통한 쌀 공급 과잉 해소가 주목적	- 중요 작물의 생산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 벼 재배면적 축소
2	대상작물	- 작물 제한 없음 * 벼 대체를 위하여 하계 논 재배가 가능한 작물의 조건 충족만 필요	- 밀, 콩, 가루쌀, 동계조사료
3	대상농지	- 과거 벼를 재배한 농지로 제한 * 기존 타작물(콩 등) 재배 농지 제외	- 논으로 한정
4	지원단가	- '20년 기준 ① 조사료: 430만원/ha ② 두류: 255만원/ha ③ 일반작물: 270만원/ha ④ 휴경: 210만원/ha	- ① 이모작(밀·조사료-콩·가루쌀) : 350만원/ha - ② 콩·가루쌀 단일재배 200만원/ha - ③ 밀·동계조사료: 50만원/ha
5	예산	- ('18) 1,368억원→('19) 1,505억원 →('20) 550억원	- ('25) 2,440억원
6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국고 100%
7	시행기간	- 3년('18~'20) * 사업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실시	- 계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두 제도는 논에서 쌀이 아닌 밀·콩 등의 타작물을 재배하는 자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결과는 동일하나, 제도의 목적이 각각 벼 재배면적 축소과 밀·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로서 다른 측면이 있어 보임.

6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2) 벼(쌀) 및 주요 논타작물 재배면적 현황

벼(쌀)의 경우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등을 통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매년 측정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69만 7,713ha에서 358만 4,604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벼(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

(단위: ha, 톤)

연번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합계	논벼	밭벼	합계	논벼	밭벼
1	2020년	726,432	726,180	253	3,506,578	3,505,984	595
2	2021년	732,477	732,070	407	3,881,601	3,880,312	1,289
3	2022년	727,054	726,654	400	3,763,700	3,762,610	1,090
4	2023년	708,012	707,872	140	3,702,239	3,701,913	326
5	2024년	697,713	697,684	29	3,584,604	3,584,543	6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p. 65.

주요 논타작물로는 ① 하계조사료, ② 논콩, ③ 가루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별도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실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배면적을 파악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① 하계조사료는 6,977ha, ② 논콩은 2만 2,438ha, ③ 가루쌀은 8,357ha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주요 논타작물 재배면적 현황 】

(단위: ha)

연번	작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하계조사료	5,361	자료없음	자료없음	5,306	6,977
2	논콩	10,078	10,660	12,590	18,314	22,438
3	가루쌀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048	8,3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3)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및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에 대한 관리목표를 세우고, 재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과거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세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들 모두는 한시적 사업으로서 각각 3년 동안만 운영되었음.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8만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종전의 사업과 같은 타작물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속적으로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선제적 수급조절로서 쌀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점, 정책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농가에게 논타작물로 전환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은 지원제도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마다 다르게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어기구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논타작물’이 아닌 ‘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품종에 따라서는 논이 아닌 밭에서도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점, 개정안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기르도록 하여 쌀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타작물’로 표현할 수는 있음.

【 2024년 쌀 생산량 】

[단위: 톤, %]

구분	전체	논벼	밭벼
쌀 생산량	3,584,604 (100.0000)	3,584,543 (99.9983)	61 (0.00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 65.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2024년 기준 99.9983%가 논벼인 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는 내용이 ‘타작물 재배’ 보다는 ‘논타작물 재배’에서 보다 잘 드러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개정안과 같이 ‘논타작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별로 재배면적 관리에 관한 사항에 차이가 있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음.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일정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윤준병의원안은 벼 및 논타작물 재배면적의 연도별 관리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문대림의원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벼(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

다음으로 일정 면적 이상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타작물 재배나 휴경 등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어기구의원안과 송옥주의원안이 해당함.

마지막으로 단순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벼 및 논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원택의원안이 해당하는데, 이는 종전 대안과 동일한 방식임.

【 개정안별 재배면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연번	개정안	재배면적 관리에 관한 사항	비고
1	① 윤준병의원안	벼 및 논타작물 재배면적의 연도별 관리목표 설정 및 이행	-
	② 문대림의원안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수립 벼 및 논타작물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	양곡수급관리 위원회 심의 필요 -
2	① 어기구의원안	타작물 재배·휴경 등 의무 부여	-
	② 송옥주의원안	타작물 재배·휴경 등 의무 부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준수
3	이원택의원안	벼 및 논타작물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	종전 대안과 동일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9.

다섯 개의 개정안 모두 재배면적 관리라는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접근방법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의 실현가능성·정책대상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 필요해 보임.

특히, 결과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벼 및 논타작물의 연도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윤준병의원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생산자에게 타작물 재배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수용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 제16조의2 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3조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① 윤준병의원안·문대림의원안·이원택의원안은 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② 어기구의원안과 송옥주의원안은 논타작물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 개정안별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재정적 지원 】

구분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시책 추진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	없음
재정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는 등을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9.

따라서, 전자와 같이 생산단지 조성·시설장비 지원·판로 지원 등 시책의 내용을 제시한 후 해당 시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재정적 지원을 한정할 것인지, 후자와 같이 별도의 시책 내용 제시 없이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것임.

넷째, 윤준병의원안·문대림의원안·이원택의원안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개정안은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국회의 정부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 차원에서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전문성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어 보임.

다섯째, 어기구의원안·송옥주의원안은 재정적 지원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타작물 재배 등 의무 부과 절차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재정적 지원에 관한 요건 및 절차는 두 의원안이 앞서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지원사항을 한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이나,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다른 개정안의 경우라도 지원의 세부적인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어 보임.

참고로, 타작물 재배 등 의무 부과 절차 및 요건은 앞서 재배면적 관리를 위하여 목표 수립·의무 부과·단순 관리 중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의 자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2항 또는 문대림의원안 제3항에서 “지원을 위해”는 줄임말이므로 “지원을 위하여”로 풀어 쓸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제1항에서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데, 제1항 이하에서 윤준병의원안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 아닌 “계획”으로 지칭함.

계획의 정식 명칭이 “시행계획”이므로,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계획”이 아닌 “시행계획”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1.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송옥주의원안 제16조의5 신설 및 문대림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6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16조의5(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	제16조의5(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u>게 해당연</u> <u>도에 생산</u> <u>된 미곡을</u> <u>매 입 하 고</u> <u>판 매 하 게</u> <u>하는 사업</u> 2. 제1호에 <u>따라 미곡</u> <u>을 매입하</u> <u>는 농업협</u> <u>동조합등에</u> <u>게 판매 손</u> <u>실을 보전</u> <u>하는 사업</u> 3. 농업협동 <u>조 합 등 과</u> <u>미곡 생산</u> <u>자 간의</u> <u>수 급 조 절</u> <u>용 계약재</u> <u>배 사업</u>	<u>게 당해연</u> <u>도에 생산</u> <u>된 미곡을</u> <u>매 입 하 고</u> <u>판 매 하 게</u> <u>하는 사업</u> 2. 제1호에 <u>따라 미곡</u> <u>을 매입하</u> <u>는 농업협</u> <u>동조합등에</u> <u>게 판매 손</u> <u>실을 보전</u> <u>하는 사업</u> 3. 농업협동 <u>조 합 등 과</u> <u>미곡 생산</u> <u>자간의 수</u> <u>급 조 절 용</u> <u>계 약 재 배</u> <u>사업</u>	<u>게 당해연</u> <u>도에 생산</u> <u>된 미곡을</u> <u>매 입 하 고</u> <u>판 매 하 게</u> <u>하는 사업</u> 2. 제1호에 <u>따라 미곡</u> <u>을 매입하</u> <u>는 농업협</u> <u>동조합 등</u> <u>에게 판매</u> <u>손실을 보</u> <u>전하는 사</u> <u>업</u> 3. 농업협동 <u>조합 등과</u> <u>미곡 생산</u> <u>자간의 수</u> <u>급 조 절 용</u> <u>계 약 재 배</u> <u>사업</u>	<u>게 당해연</u> <u>도에 생산</u> <u>된 미곡을</u> <u>매 입 하 고</u> <u>판 매 하 게</u> <u>하는 사업</u> 2. 제1호에 <u>따라 미곡</u> <u>을 매입하</u> <u>는 농업협</u> <u>동조합등에</u> <u>게 판매 손</u> <u>실을 보전</u> <u>하는 사업</u> 3. 농업협동 <u>조 합 등 과</u> <u>미곡 생산</u> <u>자 간의</u> <u>수 급 조 절</u> <u>용 계약재</u> <u>배 사업</u>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 고
제16조의6 (미곡의 가격안정 을 위한 선 제 적 수급조절) 농림축산 식품부장	⇒	제16조의5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지 원)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은 제16조제	제16조의6 (미곡의 가격안정 을 위한 선 제 적 수 급 조 절) 농림 축산식품	제16조의5 (미곡의 가격안정 을 위한 선 제 적 수급조절) 농림축산 식품부장	제16조의6 (미곡의 가격안정 을 위한 선 제 적 수급조절) 농림축산 식품부장	- 윤준병 의원안 : 선제적 수 급 조 절 을 위한 연도 별 목표 달 성과 연계 - 문대림· 이원택

종 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 고
관은 당 해 연 도 미 곡 의 예상 생 산 량 을 추정하여 미곡 공 급 량 을 선제적으 로 조절 하기 위 하여 필요 하 다 고 인정한 경 우에는 다 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제3호 에 따른 선 제 적 수급조절 을 위한 연 도 별 목 표 를 달성하기 위 하 여 필요하다 고 인정 하는 경 우 에 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지 원할 수 있다.	부장관은 당해연도 미 곡 의 예상 생 산 량 을 추정하여 미곡 공 급 량 을 선제적으 로 조절 하기 위 하여 필요 하다고 인 정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관은 당 해 연 도 미 곡 의 예상 생 산 량 을 추정하여 미곡 공 급 량 을 선제적으 로 조절 하기 위 하여 필요 하다고 인 정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관은 당 해 연 도 미 곡 의 예상 생 산 량 을 추정하여 미곡 공 급 량 을 선제적으 로 조절 하기 위 하여 필요 하다고 인 정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 원할 수 있다.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송옥주 의원안 : 조 번호 수정
1. 농업협 동 조합 등 에 게 당 해 연 도에 생 산된 미 곡을 매 입 하고 판 매 하 게 하는 사업	=	1. 농업협 동 조 합 등 에 게 해 당 연 도에 생 산된 미 곡을 매 입 하 고 판 매 하 게 하는 사업	1. 농업협 동 조 합 등 에 게 당 해 연 도에 생 산된 미 곡을 매 입 하 고 판 매 하 게 하는 사업	1. 농업협 동 조 합 등 에 게 당 해 연 도에 생 산된 미 곡을 매 입 하 고 판 매 하 게 하는 사업	1. 농업협 동 조 합 등 에 게 당 해 연 도에 생 산된 미 곡을 매 입 하 고 판 매 하 게 하는 사업	- 윤준병 · 문대림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송옥주 의원안 : 자구 수정
2. 제1호 에 따라	≡	2. 제1호 에 따라	2. 제1호 에 따라	2. 제1호 에 따라	2. 제1호 에 따라	- 윤준병 · 문대림 ·

중 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비고
미 곡 을 매 입 하 는 농업 협 동 조 합 등 에 게 판매 손 실 을 보 전 하 는 사업		미 곡 을 매 입 하 는 농업 협 동 조 합 등 에 게 판매 손 실 을 보 전 하 는 사업	미 곡 을 매 입 하 는 농업 협 동 조 합 등 에 게 판매 손 실 을 보 전 하 는 사업	미 곡 을 매 입 하 는 농업 협 동 조 합 등 에 게 판매 손 실 을 보 전 하 는 사업	미 곡 을 매 입 하 는 농업 협 동 조 합 등 에 게 판매 손 실 을 보 전 하 는 사업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송옥주 의원안 : 자구 수정
3. 농업협 동 조합 등과 미 곡 생산 자 간의 수 급 조 절 용 계 약 재 배 사업	≡	3. 농업협 동 조합 등과 미 곡 생산 자 간 의 수 급 조 절 용 계 약 재 배 사업	3. 농업협 동 조합 등과 미 곡 생산 자 간의 수 급 조 절 용 계 약 재 배 사업	3. 농업협 동 조합 등과 미 곡 생산 자 간의 수 급 조 절 용 계 약 재 배 사업	3. 농업협 동 조합 등과 미 곡 생산 자 간의 수 급 조 절 용 계 약 재 배 사업	- 윤준병 · 송옥주 의원안 : 자구 수정 - 문대림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개정안은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윤준병의원안이 아닌 문대림의원안 · 송옥주의의원안 · 이원택의원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미곡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① 생산된 미곡을 정부가 매입하여 시장격리하거나, ② 계약재배를 통하여 사전 예측가능한 생산량을 산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수단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등⁶²⁾을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미곡의 선제적 수급조절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윤준병의원안의 경우 다른 개정안과 달리 안 제16조에서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와 연계하도록 하므로, 안 제16조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의 자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2) 「양곡관리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첫째, 일부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하여 법제처가 “당해”는 법령문 외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이므로, 이를 “해당”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는 의견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³⁾

둘째,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각 호 외의 부분의 “인정한” 경우는 “인정하는” 경우로, 제3호의 “생산자간의”는 “생산자 간의”로 바꾸어 쓸 필요가 있음.

셋째, 송옥주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지원대상을 “농업협동조합등”이 아닌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는데, 시장격리곡 매입에 관한 규정인 현행법 제16조제3항에서 이미 약칭된 “농업협동조합등”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63)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 증보판, 2021, p. 72.

12.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등

가.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개정안은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6 신설, 여기구의원안·박수현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송옥주의원안 제16조의3 신설 및 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6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신 설>	제16조의6(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	제16조의3(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중 최저가격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공정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중 최저가격과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고 해당 연 도 총생산량 (공공비축양 곡 및 수입 양곡을 포함 한다)이 같 은 연도 총 소비량을 초 과하는 경우 가격안정 제 도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곡가 격안정제도를 실시함에 있 어 미곡의 경 우 양곡가격 안정 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 된 농지로 한 정하여 실시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 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 된 농지로 한 정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 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 된 농지로 한 정하여 실시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 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 된 농지로 한 정하여 실시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 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 된 농지로 한 정하여 실시 한다.
	③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다음 각 호에 대 한 사항에 대하여 제1 6 조 의 2 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 원회의 심 의를 거쳐	②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양곡 가격안정 제 도가 필요 한 양곡의 품목을 제1 6 조 의 3 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 원회의 심	②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양곡 가격안정 제 도가 필요 한 양곡의 대상품목을 제16조의4 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 위 원 회 의	②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양곡 가격안정 제 도가 필요 한 양곡의 대상품목을 제16조의3 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 위 원 회 의	② 농림축 산식품부장 관은 양곡 가격안정 제 도가 필요 한 양곡의 대상품목을 제16조의3 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 위 원 회 의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u>확 정 하 고 이 를 고 시 한다.</u> 1. <u>양곡가격 안정 제도</u>의 <u>운영이 필요한 양 곡의 대상 품목</u> 2. <u>확정·고 시된 양곡 가격안정 제도 대상 품목의 기 준가격</u> 3. <u>양곡가격 안정제도의 차액(기준 가격과 시 장 가 격 의 차이를 말 한다)의 지 급비율</u>	<u>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 정 하 고 이 를 고 시 한다.</u> ③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기준가격 을 제16조의 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 를 고시한다.</u> ④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양곡가격 안정 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 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u>	<u>심의를 거 쳐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u> ③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확정· 고시된 양곡 가격안정 제 도 대상 품 목의 기준가 격을 제16조 의4에 따른 양곡수급관 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 를 고시한다.</u> ④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양곡가격 안정 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 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u>	<u>심의를 거 쳐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u> ③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확정· 고시된 양곡 가격안정 제 도 대상 품 목의 공정가 격(기준가격) 을 제16조의 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 를 고시한다.</u> ④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양곡가격 안정 제도의 차액[공정가 격(기준가격) 과 시장가격 의 차이를 말 한다] 의</u>	<u>심의를 거 쳐 확정하 고 이 를 고 시한다.</u> ③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확정· 고시된 양곡 가격안정 제 도 대상품목 의 공정가격 (기준가격) 을 제16조의 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 를 고시한다.</u> ④ <u>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은 양곡가격 안정 제도의 차액[공정가 격(기준가격) 과 시장가격 의 차이를 말 한다] 의</u>

현 행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급비율을 제 16 조 의 3 에 따른 양곡수 급 관리 위 원 회 의 심 의 의 결 을 거 처 매 년 확 정 하 고 이 를 고 시 한다.	급비율을 제 16 조 의 4 에 따른 양곡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 정 하 고 이 를 고 시 한다.	지 급 비 율 을 제 16 조 의 3 에 따른 양곡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 정 하 고 이 를 고 시 한다.	지 급 비 율 을 제 16 조 의 3 에 따른 양곡수 급 관 리 위 원 회 의 심 의 를 거 처 확 정 하 고 이 를 고 시 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 고
제15조의2 (양곡가 격안정제 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양 곡의 가 격불안정 에 따른 농 가 의 경영위험 을 완화 하고 양 곡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 자 를 보호하며, 식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3 항에 따	⇒	제16조의6 (양곡가 격안정제 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양 곡의 가 격불안정 에 따른 농 가 의 경영위험 을 완화 하고 양 곡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 자 를 보호하며, 식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양 곡의 시	제15조의2 (양곡가 격안정제 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양 곡의 가 격불안정 에 따른 농 가 의 경영위험 을 완화 하고 양 곡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 자 를 보호하며, 식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양 곡의 가	제16조의3 (양곡가 격안정제 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양 곡의 가 격불안정 에 따른 농가 경 영위험을 완화하고 수 급 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양 곡의 시 장 가 격 이 기준	제15조의2 (양곡가 격안정제 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양 곡의 가 격불안정 에 따른 농 가 의 경영위험 을 완화 하고 양 곡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 자 를 보호하며, 식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제3 항에 따	제15조의2 (양곡가 격안정제 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은 양 곡의 가 격불안정 에 따른 농 가 의 경영위험 을 완화 하고 양 곡 수급 을 안정 시켜 소 비 자 를 보호하며, 식량안보 를 강화 하기 위 하여 양 곡의 시	- 윤준병 의원안 : 종전 대안 대비 ① 기준가격 명칭 변경 (공정가격 → 기준가격) ② 의무규정 에서 원칙적 재량, 예외적 의무 규정으 로 변경 ③ 기타 조 번호 변경 등 자구수정 - 여기구 의원안 : 종전 대안 대비 ① 기준가격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라 확정 · 고시 된 양곡 의 시장 가격이 공정가 격(기준 가격)[평 년 가격 (직전 5 년중 최 저가격과 최고가격 을 제외 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을 기준 으로 하 되 생산 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 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 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 정·고시 된 기준 가격[평 년 가격 (직전 5 년중 최 저가격과 최고가격 을 제외 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을 기준 으로 하 되 생산 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 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 의2에 따 른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격이 기 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을 지급 하는 제 도(이하 “양곡가 격안정제 도”라 한 다)을 실 시할 수 있다. ※ 여기구 의원안은 기준가격의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별도로 신 설함	가격[평 년 가격 (직전 5 년중 최 저가격과 최고가격 을 제외 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을 기준 으로 하 되 생산 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 한 가격 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 관이 제1 6조의4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고시 한 가격 을 말한 다. 이하 같대 미 만으로	라 확정 · 고시된 양곡의 시장가격 이 공정 가격(기 준가격) [평년가 격(직전 5년중 최 저가격과 최고가격 을 제외 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 을 기준 으로 하 되 생산 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 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 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장 가격 이 제3 항에 따 라 확정 · 고시된 공정가격 (기준가 격)[평년 가격(직 전 5년중 최저가격 과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 을 말한 다)을 기 준으로 하되 생 산 비용 및 수급 상황 등 을 고려 하고 예 산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바 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 른 양곡 수급관리	명칭 변경 (공정가격 →기준가격) 및 별도 정의 신설(안 제2 조) ② 의무규정 에서 재량규 정으로 변경 ③ 의결 추가 및 기타 자구 수정 - 송옥주 의원안 : 종전 대안 대비 ① 기준가격 명칭 변경 (공정가격 →기준가격) ② 기타 자구 수정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 박수현 의원안 : 자구 수정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관리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고시 한 가격 을 말한 다. 이하 같대 미 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을 지급 하는 제 도(이하 “양곡가 격안정제 도”라 한 다)를 실 시하여 야 한다.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다. 이 하 같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 급 하는 제도(이 하 “양곡 가격안정 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미 곡의 경 우 제16 조에 따 른 수급 안정대책 을 수립 ·시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 도 총생 산량(공 공비축양 곡 및 수 입양곡을 포함한 대)이 같		하락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 급 하는 제도(이 하 “양곡 가격안정 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 야 한다.	회의 심 의를 거 쳐 고시 한 가격 을 말한 다. 이하 같대 미 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을 지급 하는 제 도(이하 “양곡가 격안정제 도”라 한 다)를 실 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 의 를 거쳐 고 시한 가 격을 말 한다. 이 하 같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 산자에게 그 차액 을 지급 하는 제 도(이하 “양곡가 격안정제 도”라 한 다)를 실 시하여야 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은 연도 총소비량 을 초과 하는 경 우 가격 안정제도 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미 곡의 경우 양곡가격 안정제도 의 대상 농지는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연도 에 미곡 재배에 이 용된 농지 로 한정하 여 실시한 다.	⇒	② 제항 에 따른 양곡가격 안정제도 를 실시함 에 있어 미곡의 경 우 양곡가 격안정제 도의 대상 농지는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연도 에 미곡 재배에 이 용된 농지 로 한정하 여 실시한 다.	다만 미곡 의 경우 양곡가격 안정제도 의 대상 농지는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연도 에 미곡 재배에 이 용된 농지 로 한정하 다.	다만 미곡 의 경우 양곡가격 안정제도 의 대상 농지는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연도 에 미곡 재배에 이 용된 농지 로 한정하 여 실시한 다.	다만 미곡 의 경우 양곡가격 안정제도 의 대상 농지는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연도 에 미곡 재배에 이 용된 농지 로 한정하 여 실시한 다.	다만 미곡 의 경우 양곡가격 안정제도 의 대상 농지는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연도 에 미곡 재배에 이 용된 농지 로 한정하 여 실시한 다.	- 윤준병 의원안 : 종전 제1항 단서를 제2 항으로 분 리 - 어기구 의원안 : 자구 정리 - 송옥주 · 이원택 · 박수현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양곡가격 안정제도 가 필요 한 양곡 의 대상 품 목 을	⇒	③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 한 사항 에 대해 제16 조의2에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양곡가격 안정제도 가 필요 한 양곡 의 품목 을 제16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양곡가격 안정제도 가 필요 한 양곡 의 대상 품 목 을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양곡가격 안정제도 가 필요 한 양곡 의 대상 품 목 을	②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양곡가격 안정제도 가 필요 한 양곡 의 대상 품 목 을	- 윤준병 의원안 : 종전 대안의 제2항 부 터 제4항까지를 한 개의 항 으로 통합 - 어기구 의원안

종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확정 하고 이 를 고시 한다.		다른 양 곡수급관 리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1. 양곡가 격안정 제도의 운영이 필요한 양곡의 대상 품 목	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 리위원회 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 년 확정 하고 이 를 고시 한다.	제16조의 4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확정 하고 이 를 고시 한다.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확정 하고 이 를 고시 한다.	제16조의 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를 거 쳐 확정 하고 이 를 고시 한다.	: 의결 추가 및 기준가 격 확정 주 기(매년) 명 시 - 송옥주· 박수현 의원안 : 자구수정 - 이원택 의원안 : 종전 대안 과 동일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2항에 따 라 확정· 고시된 양 곡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공정가격 (기준가 격)을 제 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하 고 이를 고시한다.	⇒	2. 확정 · 고시 된 양 곡가격 안정제 도 대 상 품 목 의 기준가 격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기 준가격을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의결 을 거쳐 매년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2항에 따 라 확정· 고시된 양 곡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기준가격 을 제16 조의4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하 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2항에 따 라 확정· 고시된 양 곡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공정가격 (기준가격) 을 제16조 의3에 따 른 양곡수 급관리위 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 한다.	③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은 제 2항에 따 라 확정· 고시된 양 곡가격안 정제도 대 상 품목의 공정가격 (기준가격) 을 제16조 의3에 따 른 양곡수 급관리위 원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 한다.	
④ 농림 축산식품	⇒	3. 양곡가 격안정	④ 농림축 산식품부	④ 농림축 산식품부	④ 농림 축산식품	④ 농림 축산식품	

중전 대안	⇒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비고
부장관은 양곡가격 안정제도 의 차액 [공정가격 (기준가 격)과 시 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대의 지급비율 을 제16 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 리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제도의 차액 (기준 가격과 시장가 격의 차이를 말한다) 의 지 급비율	장관은 양 곡가격안 정제도의 차액(기준 가 격 과 시장가격 의 차이를 말 한다. 이하 같 대)의 지 급비율을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 의·의결 을 거쳐 매년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	장관은 양 곡가격안 정제도의 차액(기준 가 격 과 시장가격 의 차이를 말 한다. 이하 같 대)의 지 급비율을 제16조의 4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 한다.	부장관은 양곡가격 안정제도 의 차액 [공정가격 (기준가 격)과 시 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대의 지급비율 을 제16 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 리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부장관은 양곡가격 안정제도 의 차액 [공정가격 (기준가 격)과 시 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대의 지급비율 을 제16 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 리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개정안은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제도로, 해당 제도가 쌀 과잉 생산, 대농과 소농간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의 쌀 편중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용이 곤란함.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고, 대상 품목의 가격 및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WTO의 감축대상보조(AMS)로 분류되어 가격 폭락시 온전한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나. 검토의견

1) 종전 변동직불금 제도 개요

기본형 공익직불금⁶⁴⁾과 선택형 공익직불금⁶⁵⁾으로 구성된 현행 공익직불금 제도의 근거 법률인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2019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된 것임.

2019년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전부개정 이전에는 ① 2014년까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②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직불금 제도를 규정하였음.

종전의 이들 법률에서는 현재와 달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된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이중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임.

【 종전 변동직접지불금 개요 】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농업인: 0.1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120만원 이상(상한: 30ha)

*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4,500만원 이상(상한: 50ha, 들녘: 400)

64)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65)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축산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 지급단가

○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차액 지급

○ 산식: (목표가격 - 80kg당 수확기 쌀값) × 85/100 - 80kg당 고정직불금

* (고정직불 단가) 100만원/ha,

1ha당 쌀 생산량인 67가마(80kg)를 기준으로 환산시 14,925원/80kg(17년산까지 63가마 기준)

□ 목표가격

○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5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 (목표가격) ① '05~'12년산: 170,083원/80kg

② '13~'17년산: 188,000원/80kg

③ '18~'19년산: 214,000원/80kg

* 목표가격 산정방식 (舊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9조)

$$\text{변경 목표 가격} = \frac{\text{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times \text{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20.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산정하는데, ①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80kg당 170,083원, ②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80kg당 188,000원, ③ 2018년산부터 2019년산까지는 80kg당 214,000원이었음.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개 연산에 대하여 지급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였음.

【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 실적 】

연번	연 산	80kg당 목표가격(원)	80kg당 수확기쌀값(원)	지급액(억원)		
				고정 직불금	변동직불금	합계
1	'19년산	214,000	189,994	8,058	2,336	10,394
2	'18년산		193,448	8,187	1,114	9,301
3	'17년산	188,000	154,603	8,315	5,393	13,708
4	'16년산		129,711	8,383	14,898	23,281
5	'15년산		150,659	8,427	7,262	15,689
6	'14년산		166,198	7,560	1,941	9,501
7	'13년산		174,707	6,866	-	6,866
8	'12년산	170,083	173,779	6,101	-	6,101
9	'11년산		166,308	6,174	-	6,174
10	'10년산		138,231	6,223	7,501	13,724
11	'09년산		142,360	6,328	5,945	12,273
12	'08년산		162,312	7,118	-	7,118
13	'07년산		150,810	7,120	2,791	9,911
14	'06년산		147,715	7,184	4,370	11,554
15	'05년산		140,028	6,022	9,007	15,029

주1: '08년산, '11년산, '13년산의 경우 수확기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지만, 차액이 크지 않아 고정직불금 외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임

주2: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수확기 시장가격(10월~익년 1월)이 도출되어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변동직불금이 차년도에 지급됨(예: '16년산 → '17년초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pp. 24.~25.

한편, 2019년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현행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변동직불금 제도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쌀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제도 역시 폐지되었음.

현행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제도에 따른 직불금 지급액은 2023년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018억원, 선택형 공익직불금 1,305억원으로서 총 2조 4,323억원에 해당함.

【 현행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 실적 】

연번	연도	대상면적(천ha)			지급대상(천건)			지급액(억원)		
		기본형	선택형	계	기본형	선택형	계	기본형	선택형	계
1	2023년	1,109	169	1,278	1,285	119	1,404	23,018	1,305	24,323
2	2022년	1,058	131	1,189	1,129	96	1,225	21,943	741	22,684
3	2021년	1,083	143	1,226	1,122	94	1,216	22,268	819	23,087
4	2020년	1,128	140	1,268	1,121	98	1,219	22,769	795	23,56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p. 25.

2) 해외 사례: 미국의 ML, PLC 및 ARC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014년 연방 농업법 (Farm Bill) 개정에 따라 종전의 직불제를 폐지하고,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PLC)와 수입손실보상제도(Agriculture Risk Coverage; ARC)를 도입함.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의 품목별 소득 및 가격보전제도는 ① 기존부터 운영하던 유통지원용자제도(ML)와 ② PLC 및 ③ ARC로 구성되는데, 특히 이들 제도의 대상품목은 대체로 저장성이 높고 품질이 균일한 등의 특성을 보이는 곡류 등을 위주로 함.

【 미국의 품목별 소득 및 가격보전제도의 대상품목 】

- ☐ PLC/ARC 대상 품목은 저장성이 높고, 품질이 대체로 균일하며 대외 교역이 원활한 곡류 등 위주로 선정
 - 1933 Farm Bill에서 도입된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밀, 옥수수, 면화, 담배, 쌀, 돼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 1934년 보리, 수수, 호밀, 땅콩, 소 등이 추가
 - 대두 및 유지작물의 재배 확대에 따라 대상에 추가되고 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된 소, 돼지 등 축산물은 제외
- ☐ 채소, 과일, 우유 등은 저장성이 낮아 1933 Farm Bill 당시부터 가격지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
 - 채소 및 과실류 유통명령제 등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과 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과 학교급식 등을 통한 간접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6. 17.

미국의 품목별 소득 및 가격보전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ML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최저가격 지지정책의 일종으로, 시장가격과 융자단가 중 높은 쪽을 실제 수취가격으로 하여 최저가격을 지지함.

【 미국 사례 ①: 유통지원 융자제도(ML) 】

- ☐ (개념) 농산물 수확 또는 털깎기(양모)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통지원 수단으로, 시장가격과 융자단가 중에 높은 쪽이 실제 수취가격이 되어 최저가격을 지지
 - 대상품목의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을때 자금 수령이 가능하며, 유리한 시장조건 형성시까지 판매 연기·보관 가능
- ☐ (대상품목) 밀, 옥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등급양모, 비등급양모 등 20개 품목(2018년 기준)
- ☐ (대출) 상품이 일반적으로 수확(또는 양털을 깎을 때)된 시점부터 다음해의 특정 날자까지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6. 17. (일부 재가공)

둘째, PLC는 정책대상 품목의 유효가격(시장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면적의 85% 범위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임.

【 미국 사례 ②: 가격손실보상제도(PLC) 】

- ☐ (개념) 정책대상 품목을 미리 정해두고, 이들 품목의 유효가격(시장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그 차액을 보전(면적의 85%)
 - 유효가격은 전국 평균 시장가격(MYA, market year average price)가격과 융자단가(loan rate) 중 높은 것을 활용
- ☐ (대상품목) 밀, 옥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참깨 등 22개 품목(ARC와 동일)
- ☐ (산식) 품목별 PLC 지불금액 = 지불단가 × (기준면적 × 85%) × 기준단수
 - 지불단가(PLC rate) = 정부기준가격 - 유효가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6. 17. (일부 재가공)

셋째, ARC는 농가가 지역단위(ARC-CO) 또는 농가단위(ARC-IC)를 선택하면, 해당 단위의 수입이 기준수입의 86%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농가에게 면적의 85%(지역단위) 또는 65%(농가단위)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임.

【 미국 사례 ③: 수입손실보상제도(ARC) 】

- ☐ (개념) 지역이나 농가의 단위면적당 실제수입이 기준수입의 86% 이하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보전(지역단위: 면적의 85% / 농가단위: 면적의 65%)
 - (지역단위 수입손실보상, ARC-CO) 대상품목의 실제 지역단위 작물수입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수입의 86% 이하로 하락한 경우 시행
 - (농장단위 수입손실보상, ARC-IC) 농장에서 재배되는 대상품목의 실제 개별 수입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수입의 86% 이하로 하락한 경우 시행
- ☐ (대상품목) 밀, 옥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참깨 등 22개 품목(PLC와 동일)
- ☐ (산식) 지불금액 = ((기준수입 × 86%) - 실제수입) × 지불면적(85% 또는 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2025. 6. 17. (일부 재가공)

참고로, 미국에서는 농가에게 PLC와 ARC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므로, 농가는 ① PLC, ② ARC-CO, ③ ARC-IC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게 됨.

3) WTO 감축대상보조(AMS) 개요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란, 생산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임.

WTO 회원국은 WTO의 농업협정 및 회원국 간 약속에 따라 AMS를 한도 내로 지급하고, 차후 협상에 따라서는 감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도가 1조 4,900억원 규모에 해당함.

AMS는 크게 ① 시장가격지지, ② 비면제 직접지불, ③ 기타 AMS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보조정책은 가격 또는 생산량과 연계되어 인위적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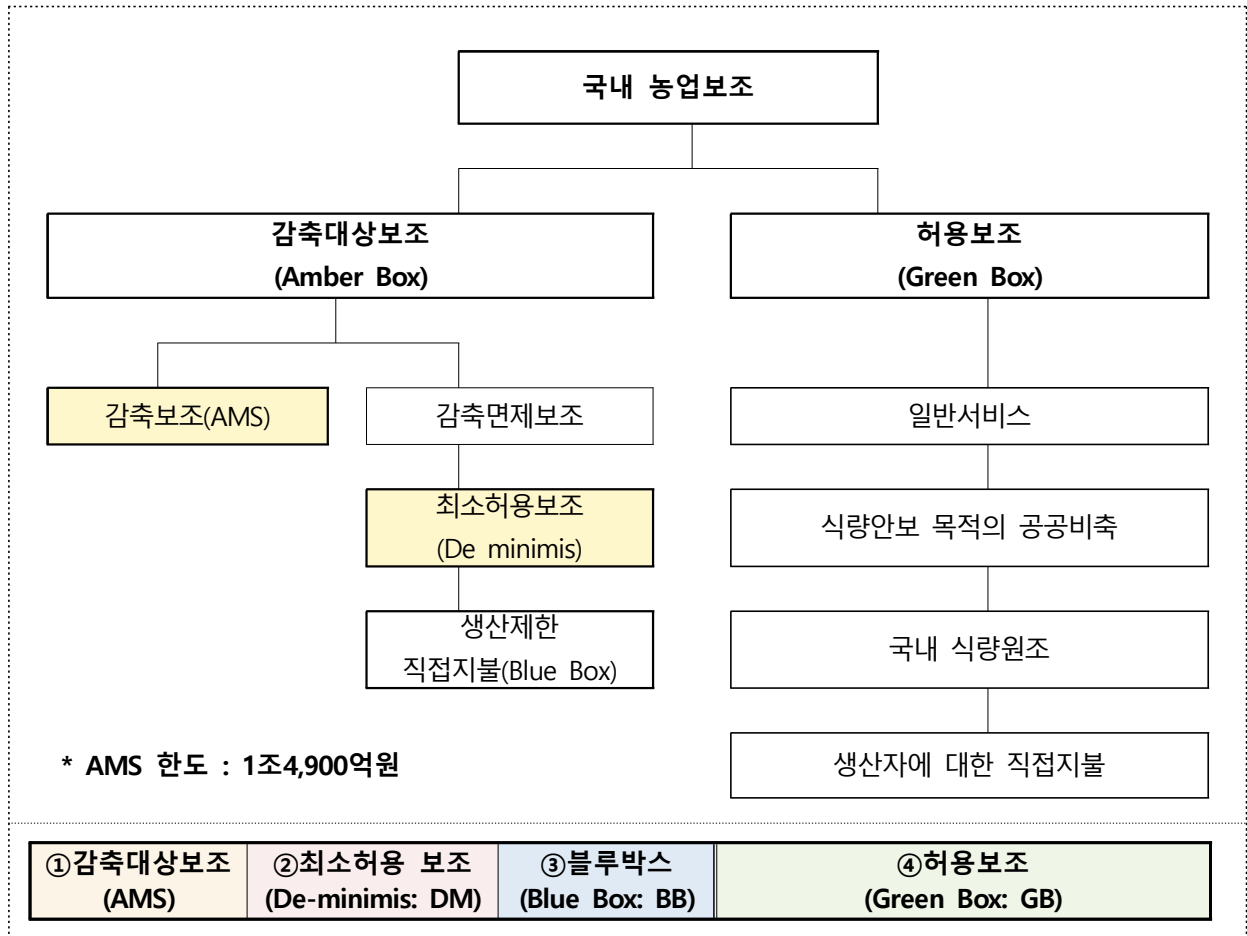
【 AMS의 유형 】

- ☐ (시장가격지지) 정부수매, 최저가격제도 등으로, 어떠한 정책이 시장가격 지지인가는 당해 국가의 제도 운영방법과 그 효과에 의해 판단됨
- ☐ (비면제 직접지불) 가격 또는 생산량과 연계된 지불로, 목표 가격을 정해 놓고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때 그 차액을 보전
- ☐ (기타 감축대상 보조) 시장가격지지와 비면제 직접지불을 제외한 감축대상보조로, 농업생산·가공·유통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을 도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23.

다만, 보조금 규모가 작아 시장교란 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드 미니미스, De-minimis)나 생산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직접지불(블루박스, Blue Box)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감축대상보조에 해당하지 않음.

【 WTO 농업보조금 분류체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23.

한편, 시장가격 지지가 아닌 식량안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비축이나, 생산량이나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생산자에게 이루어지는 직접지불은 AMS에 해당하지 않는 허용보조로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 활용 측면에서 자유로움.

4) 검토의견

최근 산지 쌀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확기 평균 쌀값의 등락이 불안정하게 반복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산지 쌀 가격 동향 】

[단위: 원/80kg(가마)]

연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연 평균	195,624	220,602	190,308	186,036	188,954
2	수확기 평균 (10~12월)	216,484	214,138	187,268	202,797	184,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109.

쌀 가격의 불안정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시기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살펴보면 농가소득 자체는 감소 후 회복되었으나, 농업소득이 쌀 가격과 동일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최근 5년간 쌀 생산농가 소득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농가소득	35,275	36,532	31,567	37,967	36,613
2	농업소득	10,933	12,338	7,103	8,856	5,927

주: 농가소득 = 경상소득+비경상소득 =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가경제조사

이에 개정안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쌀 가격 안정을 통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구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양곡의 시장가격이 해당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그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려는 것임.

그런데 이는 2019년까지 운영되었던, 국회의 동의를 받은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시장가격이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종전의 변동직불금 제도와 유사한 구조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필요성, 직불금 제도의 변화과정,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양곡가격안정제도에 따른 재정소요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① 기준가격과 ② 차액 지급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종전의 유사 제도인 변동직불제의 경우, 2005년산부터 2019년산까지 지급한 직불금이 ① 변동직불금(미지급 연산 제외)만을 기준으로는 평균 5,687억원(최고 1조 4,898억원, 최저 1,114억원), ②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을 합산한 금액으로는 평균 1조 1,375억원(최고 2조 3,281억원, 최저 6,101억원)이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마다 일부 다르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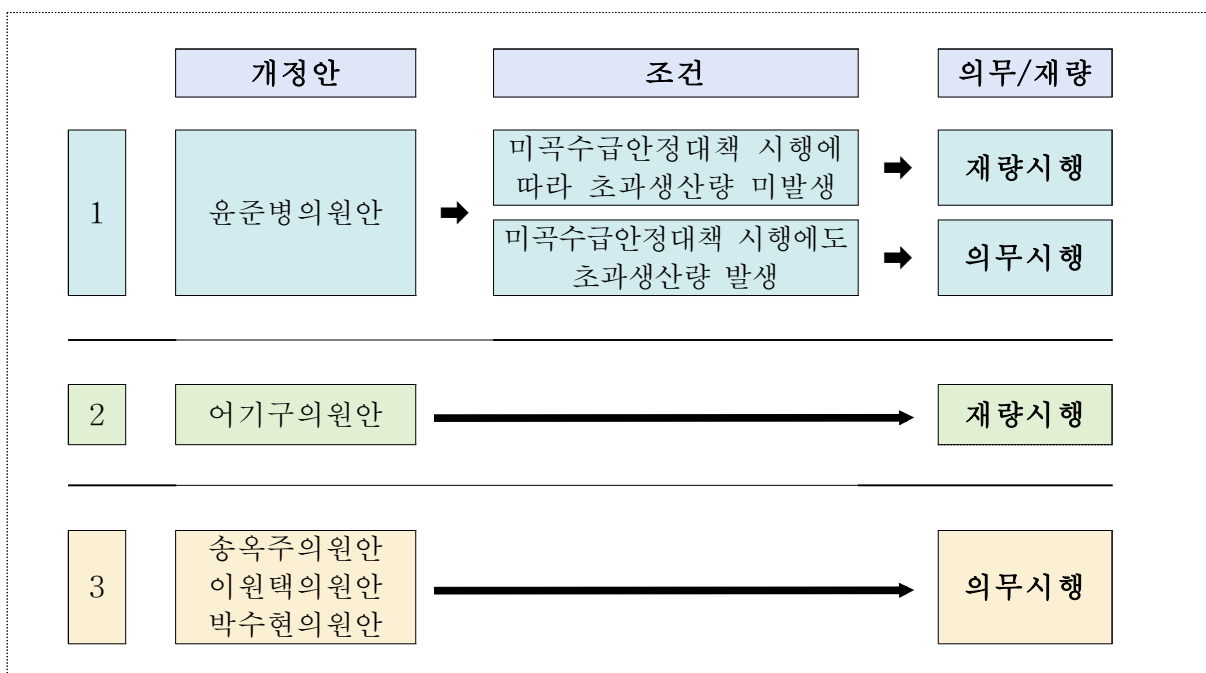
첫째, 여섯 건의 개정안 중 문대림의원안만이 유일하게 양곡가격안정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이는 문대림의원이 별도로 대표발의한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09457)”에서, 다른 개정안과 달리 농산물적정가격보장제도(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에 명시적으로 양곡을 포함하기 때문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은 양곡에 대한 가격안정제도를 ① 양곡에 대한 「양곡관리법」에서 다룰지, ② 전체 농수산물에 대한 「농안법」에서 다룰지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마다 제도의 의무적 시행 여부가 상이한데, ① 윤준병의원안은 원칙적 재량, 예외적 의무, ② 어기구의원안은 재량, ③ 송옥주·이원택·박수현의원안은 의무적 실시를 규정함.

【 개정안별 양곡가격안정제도 의무/재량 시행 여부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4.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매년 시행하여야 하는지, 경우에 따라 정책적 판단 하에 시행할지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시행 형태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어 보임.

셋째, 윤준병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기준가격·지급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각각의 항이 아닌 하나의 항에서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함.

세 가지 사항 모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하고 고시하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므로,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하나의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입법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의 자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이원택의원안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시장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가격이 아닌 기준가격의 확정·고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다른 개정안과 같이 “시장가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의 제1항에서 기준가격을 정의함에 있어 “직전 5년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직전 5년 중”으로 띄어쓸 필요가 있음.

셋째, 어기구의원안·이원택의원안·박수현의원안은 제1항에서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규정하는데, 같은 조 제4항

에서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확정 사항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차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임.

따라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윤준병의원안·송옥주의 원안과 같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윤준병의원안 제3항 또는 다른 개정안의 제2항에서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 품목”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데, 이미 제1항의 규정상 제도의 대상 품목은 양곡일 수밖에 없으므로,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으로 줄일 수 있어 보임.

나. 기준가격 정의 신설

여기구의원안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행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정의를 안 제2조제3호의2로 신설하려는 것임.(여기구의원안 제2조).

현 행	여기구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가루·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가루·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생략) (→ 여기구의원안 제2조제3호는 검토의견 3. “밀·콩의 공공비축양곡 대상 법률상향규정” 참고) 3의2. “기준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신 설>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종전 대안	⇨	여기구의원안	비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	3의2. “기준가격”이란 양곡의 수확기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 기준가격 정의 신설
4. ~ 7. (생략)	=	4. ~ 7. (생략)	

여기구의원안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행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정의를,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 규정 내에 마련하는 다른 의원안과 달리, 「양곡관리법」의 정의규정인 제2조에 신설하려는 것임.

여기구의원안은 다른 개정안과 달리 기준가격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명시하거나, 양곡수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양곡가격안정제도 외의 규정에서도 사용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다수의 규정에서 매번 ‘기준가격’이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조항에 따른 기준가격임을 지칭하기보다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다만, 다른 개정안의 경우 어기구의원안과 달리 ‘기준가격’이라는 용어를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제2조에서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낮음.

하나의 조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면, 별도로 정의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해당 조에서 정의하는 것이 가시성과 이해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음.

따라서, 어기구의원안과 같이 기준가격을 제2조에서 별도로 정의할지 여부는, ‘기준가격’을 인용하여 규정하는 어기구의원안의 다른 개정사항의 수용 여부와 함께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개정안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7 및 문대림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5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16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조문 이원택의원안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 조문 이원택의원안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제16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윤준병의원안 : 조 번호 수정
① (생략)	=	① (생략)	① (생략)	① (생략)	- 문대림·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② (생략)	=	②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	③ (생략)	③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	④ (생략)	④ (생략)	④ (생략)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정확한 예측·관측 바탕으로 체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1) 미곡 수급 관련 통계·관측자료 및 시스템 현황

미곡 수급에 관련한 통계로는 재배면적, 생산량,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산지쌀값, 벼 생육 정보, 수출입량 등이 있는데, 이는 ① 통계청, ② 농촌진흥청, ③ aT 등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되고 있음.

【 미곡 수급 관련 통계 현황 】

연번	기관	통계
1	통계청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비, 생산액, 생산단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산지쌀값 등
2	농촌진흥청	생산단수, 벼 생육 정보 등
3	aT	수출입량, 소비자쌀값 등
4	그 외	1일 1인당 밥 섭취량(질병관리청), 기상정보(기상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5. 23.

또한, 현재 「농안법」 제5조⁶⁶⁾에 따라 전담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업관측을 진행하는데, 쌀 역시 관측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단기관측(쌀의 경우 4월, 6월, 10월, 11월, 12월) 등이 이루어짐.

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KREI 쌀 관측보(2025년 6월호)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쌀 관측보” 2025년 6월호, 2025.

한편, 미국 수급 관련 시스템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정부양곡관리비(2131-366)”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진행하는 상황임.

이는 사전적 쌀 수급정책 추진을 위하여 KREI를 통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②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쌀 수급예측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며, ③ 기타 수확기 쌀 매입현황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 사업명(세부사업-내역사업): 정부양곡관리비-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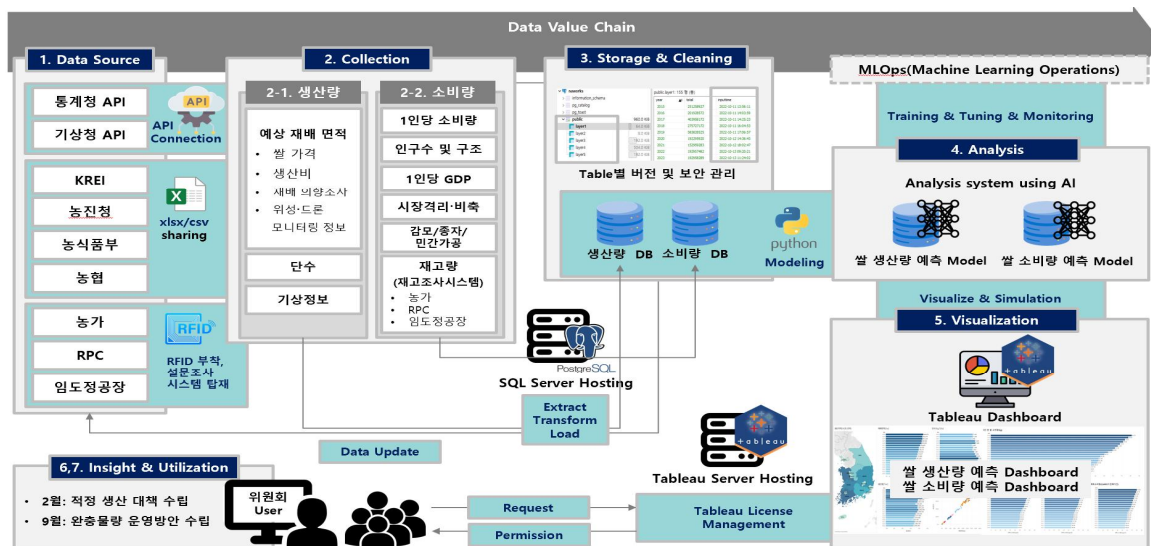
□ 사업비

- 1,000백만원(일반연구비 700, 자산취득비 300*), 직접수행
 -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HW/상용SW 별도 분리발주 예정

□ 사업내용

- (DB구축) 통계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기관·단체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가능토록 동일한 형식으로 변환 후 데이터 통합
- (분석·예측)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쌀 수급예측을 위한 모델 개발
 - 주어진 데이터 패턴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 구축
 - 다양한 예측 모델 중 적합 모델을 선택하여 초기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훈련·교차검증·성능평가·모델개선 등 추진
- (시각화) 쌀 수급예측 결과를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 시각화
- (행정지원) 수확기 쌀·벼 매입현황, 민간재고 현황, 순기별 쌀값 등을 시스템 내에서 확인·출력 가능하도록 지원

□ 구축 설계도(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2.

2) 검토의견

최근 산지 쌀 가격 변동에 따라 정책적인 미곡 수급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급관리 정책의 기반이 되는 관련 통계 및 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기능에 대한 중요성 역시 증가하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산지 쌀 가격 동향 】

[단위: 원/80kg(가마)]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 평균	195,624	220,602	190,308	186,036	188,954
수확기 평균 (10~12월)	216,484	214,138	187,268	202,797	184,700

주: 서류 생체중 기준이며, 사료용을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109.

개정안은 종전의 대안과 동일하게, 미곡 수급 관련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①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 쌀 수급정책 추진을 위하여 쌀 생산을 관측하고 수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쌀 수급예측 시스템”의 구축사업을 KREI와 함께 진행하는데, 개정안의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은 해당 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통하여 개발 중인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 규정도 현재 통계청 등 농림축산식품부 외의 기관에서 미곡 수급 관련 통계를 다수 작성·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14. 양곡유통업 육성 근거 마련

개정안은 현행법 제22조의 미곡유통업 육성에 관한 규정을 ① 양곡유통업의 육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② 육성 및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22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u> <u>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u> 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u>양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u> 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u>양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u> 육성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u> <u>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u>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u>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을 건조·보관·가공</u>	②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u> <u>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양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양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을 건조·보관·가공</u>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미곡</u> 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양곡</u> 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양곡</u> 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및 <u>지방자치단체</u> 의 장은 <u>양곡</u> 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u>양곡</u> 매입 및 매입한 <u>양곡</u> 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u>양곡</u> 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u>양곡유통업</u> 을 육성하여야 한다.	≡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및 <u>지방자치단체</u> 의 장은 <u>양곡</u> 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u>양곡</u> 매입 및 매입한 <u>양곡</u> 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u>양곡</u> 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u>양곡유통업</u> 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22조(양곡유통업의 육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및 <u>지방자치단체</u> 의 장은 <u>양곡</u> 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 <u>양곡</u> 매입 및 매입한 <u>양곡</u> 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u>양곡</u> 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u>양곡유통업</u> 을 육성하여야 한다.	- 윤준병의원안 : 자구 수정 - 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② <u>국가</u> 및 <u>지방자치단체</u> 는 <u>농업협동조합</u> 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u>양곡</u> 의 유통기능을 능	=	② <u>국가</u> 및 <u>지방자치단체</u> 는 <u>농업협동조합</u> 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u>양곡</u> 의 유통기능을 능	② <u>국가</u> 및 <u>지방자치단체</u> 는 <u>농업협동조합</u> 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u>양곡</u> 의 유통기능을 능	- 종전 대안과 동일

종 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u>양곡종합처리장</u> 등 양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양곡의</u>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u>양곡종합처리장</u> 등 양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양곡의</u>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u>양곡종합처리장</u> 등 양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양곡의</u>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없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유통업의 육성 대상을 미곡에서 양곡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양곡 유통시설 및 양곡 매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1) 양곡유통 관련 시설 지원 현황

양곡유통에 관한 시설로는 ① 미곡 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Center, 이하 “RPC”라 한다), ② 콩 종합처리장(Soybean Processing Complex/Center, 이하 “SPC”라 한다), ③ 밀 건조저장시설(Wheat Drying Storage Center, 이하 “밀 DSC”라 한다) 등이 있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고품질쌀유통활성화(2131-430)” 사업의 “가공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내역사업을 통하여 RPC, ② “전략작물산업화(2131-351)” 사업의 “사업다각화” 내역사업을 통하여 SPC와 밀 DSC에 대한 지원사업을 각각 진행함.

【 양곡유통 관련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8,605	18,605	18,605 [18,517]	-	-	22,085
가공시설 현대화	6,360	6,360	6,360 [6,360]	-	-	6,360
벼 건조저장 시설 지원	11,840	11,840	11,840 [11,752]	-	-	15,320
전략작물 산업화	45,264	45,264	43,645 [41,865]	-	1,610	53,308
사업다각화	7,134	7,134	7,134 [6,699]	-	-	6,18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 816, 835.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 922, 934.

【 양곡유통 관련 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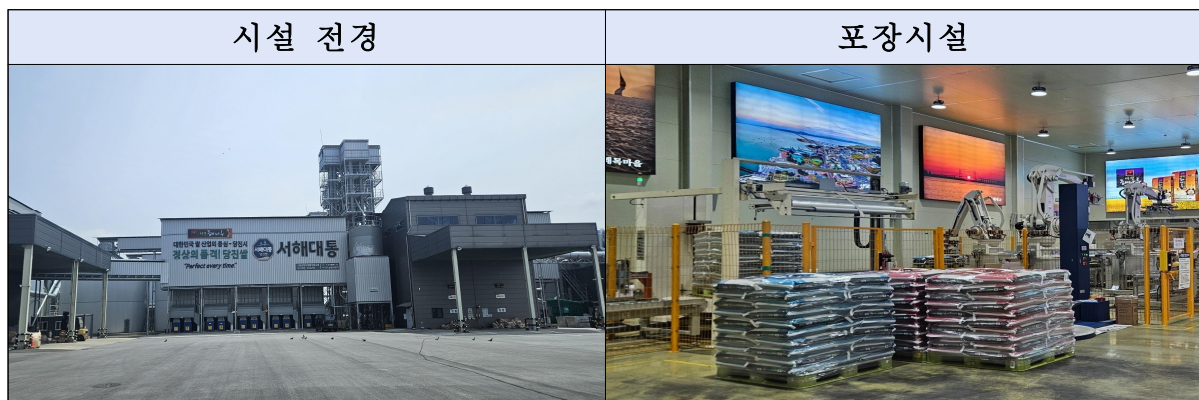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1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가공시설 현대화	- RPC 가공시설 현대화 를 통해 쌀의 품질향상 등 쌀의 산지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우리 쌀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 * 지원자격: 최근 3년간 원료곡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정부지원 RPC, 농협은 통합RPC만 지원
2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을 통해 RPC의 수확기 농가 벼 일시매입능력을 제고 하여 쌀의 가격안정을 도모 * 지원자격: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사업자
3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다각화	-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로 논 이용의 다양화, 농산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호기에 수반되는 교육·컨설팅, 기반절비, 시설·장비 등 전 분야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결산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 916, 929.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 121.

첫째,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에서는 RPC에 대하여 지원하는데, RPC는 벼(조곡)를 수집·건조·저장했다가 도정한 다음, 생산된 쌀(정곡)을 시장에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산지에서 쌀의 유통 관리를 담당함.⁶⁷⁾

【 RPC 시설 예시: 당진시 제2RPC 】



자료: 담당 입법조사관 직접 촬영(충청남도 당진시 제2RPC), 2025. 5. 21.

67) 김완배·김성훈, 「농식품유통론」 제2판, 박영사, 2020, p. 236.

현행법 제22조에서 미곡유통업 육성과 RPC 설치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현재 RPC의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지원함.

2024년 기준 시·도별 정부지원 RPC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시·도에서 총 178개소의 RPC(농협 RPC 122개소, 민간 RPC 56개소)가 정부지원 RPC로서 운영 중임.

【 시·도별 정부지원 RPC 운영 현황(2024년 기준) 】

연번	시·도	소유 주체별		
		계	농협	민간
1	부산광역시	1	1	-
2	대구광역시	1	-	1
3	인천광역시	2	1	1
4	광주광역시	1	1	-
5	울산광역시	2	2	-
6	세종특별자치시	1	1	-
7	경기도	26	19	7
8	강원특별자치도	9	8	1
9	충청북도	8	6	2
10	충청남도	25	17	8
11	전북특별자치도	31	19	12
12	전라남도	30	21	9
13	경상북도	24	13	11
14	경상남도	17	13	4
계		178	122	56

주: 17개 시·도 중 3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지원 RPC가 부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 121. (일부 수정사항 반영)

둘째, “전략작물산업화(2131-351)” 사업의 사업다각화 내역사업에서는 현재 SPC와 밀 DSC를 지원하는데, 이는 각각 콩의 유통 관리와 밀의 건조 및 저장을 담당하는 시설임.

【 SPC 및 밀 DSC 시설 예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해당 사업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과 달리 명시적으로 SPC와 밀 DSC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고, 「농업식품기본법」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규정⁶⁸⁾ 등 일반적인 규정에 근거함.

현재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 또는 사업진행 중인 시설로는 SPC 26개소와 밀 DSC 13개소가 있으며, 2025년에는 SPC 3개소와 밀 DSC 3개소에 대하여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6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 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SPC 및 밀 DSC 지원 현황 】

SPC				밀 DSC			
연번	지원연도	소재지	비고	연번	지원연도	소재지	비고
1	2012	충북 괴산	-	1	2021	전북 부안	-
2	2015	경기 파주	-	2		광주 광산	-
3		전남 함평	-	3	2022	전북 김제	-
4		경북 문경	-	4		전남 해남	-
5	2016	충북 청주	-	5	2023	충남 논산	-
6		경남 사천	-	6		전북 정읍	-
7	2019	전북 부안	-	7		전북 정읍	-
8	2020	전북 김제	-	8	2024	전남 해남	공사중
9		전북 김제	-	9		전남 해남	-
10		전북 김제	-	10		충남 부여	공사중
11	2021	전북 부안	-	11	2025	전북 김제	공사중
12		전남 장성	-	12		경남 사천	설계중
13	2022	전북 김제	-	13		경남 합천	입찰중
14		경북 상주	-				
15		경북 상주	-				
16		경북 안동	-				
17	2023	충남 논산	-				
18		전남 강진	-				
19		경북 안동	-				
20	2024	충남 보령	-				
21		전남 화순	-				
22		경북 예천	공사중				
23		전북 김제	공사중				
24	2025	전북 정읍	공사중				
25		전북 군산	공사중				
26		경북 문경	공사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2025. 6. 5.

3)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는 “양곡”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서, 미곡을 양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

【 현행법령에 따른 양곡의 범위 】

연번	법률상 범위	시행령상 범위
1	미곡(쌀)	-
2	맥류(보리)	-
3	곡류·서류	3-① 곡류: 두류(豆類)·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율무쌀·가장·가장쌀
		3-② 서류: 감자·고구마
		3-③ 미곡·맥류 및 “3-①”에 해당하는 곡류의 교잡(交雜)곡물
4	“1·2·3”을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① 미곡·맥류 및 “3”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5-② “5-①”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5-③ “5-①”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5-②”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5-④ 전분류를 변성시킨 것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8.

개정안은 현재 “미곡”유통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 제22조를 “양곡”유통업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양곡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재 쌀, 콩, 밀 등 양곡의 유통 관련 시설에 대하여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쌀의 경우 현행법 제22조에 근거하여 RPC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콩·밀의 경우 일반적인 책무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SPC와 밀 DSC 등에 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곡”유통업에 대한 지원 규정인 현행법 제 22조를 “양곡”유통업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개정한다면, 콩·밀 등 다른 양곡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22조의2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22조의2(양곡의 수 요개발 및 소비촉 진) ① (생 략)	=	제22조의2(양곡의 수 요개발 및 소비촉 진) ① (생 략)	제22조의2(양곡의 수 요개발 및 소비촉 진) ① (생 략)	- 종전 대안 과 동일
② (생 략)	=	② (생 략)	② (생 략)	- 종전 대안 과 동일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WTO 내국민 대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수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검토의견

1) 양곡 수급 현황

특정 연도에서 양곡의 공급은 ① 생산, ② 수입, ③ 전년이월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양곡의 수요는 크게 ① 식량, ② 가공, ③ 사료, ④ 그 외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

우리나라의 양곡 수요와 공급은 최근 10년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왔는데, 특히 양곡 수요에서는 식량 수요량에 비하여 가공용 수요량이 우세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음.

【 최근 10년간('14~'23) 양곡 수급 현황 】

(단위: 천톤)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공급량	23,289	23,554	24,321	23,791	24,266	24,091	24,491	25,173	25,965	25,731
이월	1,853	2,456	2,726	3,166	3,098	2,878	2,368	2,585	2,467	3,272
생산	5,524	5,472	5,506	5,291	5,137	5,059	4,915	4,720	5,053	5,019
수입	15,912	15,626	16,090	15,333	16,031	16,153	17,207	17,867	18,445	17,440
수요량	20,833	20,817	21,154	20,693	21,388	21,723	21,977	22,706	22,693	22,715
식량	5,155	5,119	5,018	5,049	4,971	4,844	4,827	4,735	4,764	4,721
가공	4,525	4,641	4,829	4,859	4,969	5,010	4,717	5,130	5,131	5,149
사료	10,450	10,587	10,968	10,485	11,113	11,402	11,947	11,961	12,413	12,424
그 외	704	472	338	295	337	468	486	880	386	421
차년이월	2,456	2,726	3,167	3,099	2,878	2,368	2,514	2,467	3,272	3,0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p. 34~35. (일부 재가공)

【 2023년 양곡 수급 현황 】

(단위: 천톤)

구분	합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공급량	25,731	5,334	353	5,069	12,134	1,508	938	395
이월	3,272	1,302	59	744	1,042	110	-	15
생산	5,019	3,764	66	52	91	130	873	44
수입	17,440	268	228	4,273	11,001	1,268	66	337
수요량	22,715	3,924	295	4,519	11,260	1,400	938	379
식량	4,721	2,896	28	1,113	86	98	490	10
가공	5,149	817	223	1,443	1,906	256	221	282
사료	12,424	66	35	1,923	9,241	1,036	87	36
그 외	421	144	10	39	26	11	139	51
연말재고	3,016	1,410	58	551	874	108	-	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 36.

세부적인 양곡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주요 양곡 중 쌀·서류는 국내생산, 보리쌀·밀·옥수수·콩은 수입을 통해 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양곡 수요 측면에서는 식량용으로는 쌀·밀, 가공용으로는 옥수수·밀·쌀, 사료용으로는 옥수수가 주된 수요 작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 과정에서 식량자급률은 2014년 53.2%에서 2023년 49.0%로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상당수가 수입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는 사료용을 포함하여 식량자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2014년 26.5%에서 2023년 22.2%로 하락세를 보임.

【 최근 10년간('14~'23) 식량자급률 현황 】

(단위: %)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식량 자급률	사료용 제외	53.2	53.5	54.1	51.9	50.3	49.3	49.3	44.1	49.4	49.0
	사료용 포함	26.5	26.3	26.0	25.6	24.1	23.3	22.4	20.8	22.3	2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양정자료”, 2024. 12. pp. 34~35.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종전의 대안과 동일하게,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과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 】

구분		지원사항
안 제22조의2	제1항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항	국산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다음의 지원사항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자료: 동 의안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7.

첫째, 제1항의 지원사항의 경우 교육·홍보와 급식 확대 등을 통하여 양곡 소비를 촉진하고, 기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10년간 양곡 수급현황에서 양곡의 초과공급이 나타나는 점, 가공용 수요가 식량용 수요보다 많아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규정 마련을 통한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둘째, 제2항의 지원사항의 경우 국산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과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가공용 양곡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국산양곡을 사용하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면, 국산양곡에 대한 수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WTO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각 호에서 지원사항으로 국산 “원료”에 대한 자금을 규정하는데, 이는 기업에서 국산양곡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곡 구매비용 등의 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은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는 있으나,⁶⁹⁾ “원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바가 없으므로, 원료가 곧바로 양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산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할 뿐, 해당 기업이 국산양곡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명시적인 서술이 없음.

69) 「양곡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사용과 원료의 사전적 정의가 각각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씌”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⁷⁰⁾임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국산양곡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 대신 “국산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각 호의 지원사항에서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을 “원료로 사용하는 국산양곡의 구매자금”으로,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국산양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으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5. 5. 7. 확인

16. 자료제출 등 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개정안은 ①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②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③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등 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 제36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관계 조문 이원택의원안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2. 제9조의4제2항을 위	2. 제9조의4제2항을 위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u>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 관계 조문 이원택의원안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3. <u>제1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 관계 조문 윤준병의원안 제16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	3. <u>제1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 관계 조문 이원택의원안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여 미곡의 생산·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여 미곡의 생산·수요·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현행 제1호와 같음)	4. (현행 제1호와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현행 제2호와 같음)	5. (현행 제2호와 같음)
3.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현행 제3호와 같음)	6. (현행 제3호와 같음)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7. (현행 제4호와 같음)	7. (현행 제4호와 같음)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현행 제5호와 같음)	8. (현행 제5호와 같음)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9. (현행 제6호와 같음)	9. (현행 제6호와 같음)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비고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본문 개정 없음
1. 2. (생략)	=	1. 2. (생략)	1. 2. (생략)	- 종전 대안과 동일
3. 제1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윤준병의원안 : 조 번호 수정 - 이원택의원안 : 종전 대안과 동일
4. ~ 9. (생략)	=	4. ~ 9. (생략)	4. ~ 9. (생략)	- 종전 대안과 동일
② (생략)	=	② (생략)	② (생략)	- 개정 없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신설조항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①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②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③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청·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개정안의 자료제출 등 의무 규정 여부 】

연번	자료제출 의무	개 정 안					
		윤준병 의원안	문대림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1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의무	○ (제9조의3)	X	X	X	○ (제9조의3)	X
2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자료제출·정보제공 의무	○ (제9조의4)	X	X	○ (제9조의3)	○ (제9조의4)	X
3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관련 자료제출 의무	○ (제16조의7)	○ (제16조의5)	X	X	○ (제16조의5)	X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

그 중에서 윤준병의원안과 이원택의원안은 이러한 요청·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윤준병의원안 · 이원택의원안의 과태료 조항 신설 내용 】

연번	행정상의 의무(신설)			과태료(신설)	
	목적	대상	의무	요건	금액
1	실태점검 실시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요구에 따르지 않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정부관리양곡 관리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 등	필요한 자료 제출·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의무		
3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의무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5. 2.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실태점검과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해 보임.

또한, ① 일반적으로 자료제출 등의 거부 또는 거짓 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⁷¹⁾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규정을 둘 수 있어 보임.

과태료의 수준 역시, 현행법이 과태료의 수준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만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와 동일하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적합할 것으로 보임.

7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p. 809~810.

다만, 개정안은 요청·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데, ‘거짓으로 제출·제공한 자’ 또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이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등으로 수정하여, 거짓으로 제출·제공한 자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17. 부칙: 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되, 이원택의원안은 일부 규정에 대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부칙 제1조 및 문대림의원안 · 어기구의원안 · 송옥주의원안 · 이원택의원안 · 박수현의원안 부칙).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비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1년</u> 이 경과한 날부터 <u>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u>시행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u>시행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u>시행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u>시행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u>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u>시행한다.</u>	- 윤준병 · 문대림 · 박수현의원안 : 1년 - 어기구 · 송옥주의원안 : 6개월 - 이원택의원안 : 1년으로 설정이 정하되, 부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및 박수현의원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행일을 종전의 대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거나, 종전의 대안과 달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① 양곡가격안정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②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며, ③ 각종 제도들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한편, 이원택의원안은 시장격리곡 매입금액 정산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여부와 연관되는 안 제16조제6항, 제8항 및 제9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이는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6)”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일 또한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이원택의원안 제16조제9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용자·보조 규모 등의 사후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데, 안 제16조제6항 및 제8항과는 달리 ‘매년 5월 31일’이라는 기한이 존재함.

정부로서는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을 준비할 기간이 요구될 것인데, 개정안이 5월 31일 직전에 공포되는 경우 준비기간 부족으로 정부에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

윤준병의원안은 개정되는 사항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 부칙 제2조).

윤준병의원안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 관계 조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종전 대안	⇒	윤준병의원안	비고
<신 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 윤준병의원안 : 다른 법률의 개정 신설

개정안에 따라 「양곡관리법」 제22조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양곡종합처리장’으로 변경되므로, 해당 조항을 수용한다면 이를 인용하는 다른 법률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바,⁷²⁾ 개정사항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을 부칙을 통하여 함께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7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908.

문 의 처
02)6788-5416